

정책연구 2005-15

농가부채 증가원인 분석 및 경감방안

2005. 12.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5-15

농가부채 증가원인 분석 및 경감방안

2005. 12.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주요 내용	2
II. 제주도 농가의 수입·지출·부채구조의 시계열 분석	3
1. 농가수입 구조분석	3
가. 농가원수의 변화	3
나.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변화	4
다. 농업조수입의 구성변화	6
라. 비영농종사자의 농외소득의 구성변화	8
2. 농가 가계비의 지출구조 분석	10
3. 농가부채의 구조분석	11
가. 제주도 농가 부채와 지역내총생산의 변동추이	11
나. 농가부채 상환능력 및 부실채권의 변화추이	15
다. 농가부채와 주요변수간의 상관분석	17
III.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분석	20
1. 조사의 개요	20
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20
나. 조사의 기본설계	20
다. 자료처리	20
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마. 분석 원칙	21
2. 농가부채 실태 및 발생원인, 정책과제	22

가. 농가부채 규모 및 주 차입처	22
나. 농가부채의 외부적 발생원인	27
다. 농가부채의 내부적 발생원인	29
라. 농가부채특별법 효과	31
마.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32
바. 농가부채 상환 가능성	34
사. 농가부채 상환곤란 이유	35
아. 농가부채 상환 예상 기간	37
자. 부채상환을 위한 매년 차입액	38
차. 자산처분 부채상환 의향	40
카. 자산처분 부채상환 이유	41
타. 향후 농가부채 증감 전망	42
파. 농가부채 해결 주요 정책	43
하. 농업문제 해결 과제	44
3. 농가의 소득 및 자산 실태	46
가. 농가소득	46
나. 농업소득 비율	48
다. 자산 현황	49
라. 영농 규모	53
4. 농가부채의 심층분석	55
가. 지역별·연령별·영농형태별 부채의 장기상환능력 분석	55
나. 소득규모별 부채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분석	56
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규모·장기상환능력의 입체분석	62
라. 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규모·장기상환능력의 범주분석	67
IV.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과 외국의 사례분석	73
1. 정부의 농가부채대책 추진 현황	73

가. 1980년대 부채대책	73
나. 국민의 정부 부채대책(1998~2000)	74
다. 2001년 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	75
라. 2004 농가부채 경감대책 내용	77
마. 제주도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내용	79
2. 미국의 농가파산법	80
가. 파산법의 연혁	80
나. 농업인 채무자가 활용가능한 파산방식	83
다. 농가파산법(제12장)의 파산율을 낮춘 요인분석	93
3. 일본	101
가. 부채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101
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부채대책 사례	102
다. 농가분류에 대한 인식	103
4. 전라북도 장수군의 농가부채 희생대책	104
가. 목적	104
나. 시책 추진방향	104
다. 근거규정	104
라. 연도별 지원자금 조성계획	104
마. 농업경영심의위원회 운영	105
바. 지원 체계도	106
사. 전문컨설평가 실사단 구성·운영	107
V. 결론 및 정책 제언	109
1. 농가부채의 심각성과 농민의 향후 전망 및 인식	109
가. 농가부채의 규모의 심각성과 장기상환능력의 열위	109
나. 농가부채에 대한 향후전망과 농민의 의식	110
2. 부채대책의 기본방향	111

3.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의 검토	113
가. 개인회생제도	113
나. 개인워크아웃 [個人, individual workout]	114
다. 기존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의 비교	115
4. 농업경영체 경영회생 프로그램	117
가. 경영회생 프로그램의 체계도	117
나. 경영회생 프로그램 관련 제도의 개선·도입방향	118
< 참고 문헌 >	124
<부록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127
<부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4
<부록 3>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153
<부록 4> 설문지	163

〈표 목차〉

〈표 II-1〉 가구원, 영농종사자, 비영농종사자수의 구성비의 변화	3
〈표 II-2〉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의 변화	4
〈표 II-3〉 농가구원 1인당 주요 농가소득의 변화	5
〈표 II-4〉 농가소득의 구성비율의 변화	6
〈표 II-5〉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율의 추이	7
〈표 II-6〉 농업조수입의 품목별 전국평균(=100.0)과의 비율의 변화	8
〈표 II-7〉 비영농종사자 1인당 농외소득	9
〈표 II-8〉 농가의 가계비와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10
〈표 II-9〉 제주도 농가부채 규모와 요소별 비율의 변화	12
〈표 II-10〉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총농가부채 규모 추정(2004년 경상가격기준) 13	
〈표 II-11〉 지역내 총생산과 총농가부채의 비교(2004년 경상가격 기준)	13
〈표 II-12〉 제주도 농협의 대농가 상호금융 및 정책대출 변화 추이	14
〈표 II-13〉 제주도 농가호당 상호금융 및 정책대출 변화 추이	15
〈표 II-14〉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의 변화	16
〈표 II-15〉 제주지역 특수채권(부실채권) 변화추이	17
〈표 II-16〉 농가의 주요소득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18
〈표 III-1〉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III-2〉 농가 부채 규모	23
〈표 III-3〉 농가 부채 규모 재분석	24
〈표 III-4〉 각종 발작물별 부채액 분석	26
〈표 III-5〉 농가부채 주 차입처	27
〈표 III-6〉 부채의 외부적 발생원인	28
〈표 III-7〉 부채발생의 내부적 원인	30
〈표 III-8〉 농가부채특별법 이후 변화	31
〈표 III-9〉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33

<표 III-10> 향후 소득으로 부채 상환 가능성	34
<표 III-11> 부채 상환 곤란 이유(1순위)	36
<표 III-12> 부채 상환 곤란 이유(종합)	37
<표 III-13> 농가부채 상환 기간 예상	38
<표 III-14> 부채상환을 위한 매년 차입액	39
<표 III-15> 부채상환을 위한 매년 차입액 재분석	40
<표 III-16>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 처분 의향	40
<표 III-17> 농가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 처분 이유	41
<표 III-18> 농가부채 증감 전망	42
<표 III-19> 농가부채 해결 정책(1순위)	43
<표 III-20> 농가부채 해결 정책(종합)	44
<표 III-21> 농업문제 중 시급한 해결과제	45
<표 III-22> 농가 소득	46
<표 III-23> 농가 소득 재분석	47
<표 III-24> 농업소득 비율	48
<표 III-25> 농가의 자산 현황	49
<표 III-26> 농가의 토지자산 현황	50
<표 III-27> 농가 자산 현황	50
<표 III-28> 농가전체자산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51
<표 III-29> 농가 토지의 평당가액(토지자산/자가토지평수)	51
<표 III-30> 부채유무에 따른 농가의 총자산 규모	52
<표 III-31> 농가 영농 규모 현황	54
<표 III-32> 지역별·연령별·영농형태별 부채의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	57
<표 III-33> 소득규모별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58
<표 III-34> 소득규모별 부채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59
<표 III-35> 부채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전체소득)	63
<표 III-36>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저소득: 1,000만원 미만)	64
<표 III-37>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중저소득: 1,000~2,000만원 미만) ..	65
<표 III-38>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중상소득: 2,000~3,000만원 미만) ..	66

<표 III-39>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고소득: 3,000만원 이상)	66
<표 III-40> 부채규모에 따른 소득수준별 부실농가(부채비율 40%이상) 비율 ...	67
<표 III-41> 소득규모별 부채규모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	69
<표 IV-1> 1980년대의 농어가경제 부담경감대책	73
<표 IV-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의 내용	76
<표 IV-3> 2002년 말 현재 대출잔액	76
<표 IV-4> 2004년 부채대책(2004년말 기준)	80
<표 IV-5> 미국파산법 제11장, 제12장, 제13장의 비교	88
<표 IV-6> 경영상황에 따른 농가분류	103
<표 V-1> 신용불량자를 위한 다른 구제대책과의 비교	115

〈그림 목차〉

〈그림 III-1〉 농가부채 주 차입처	27
〈그림 III-2〉 농가부채의 외부적 발생원인	28
〈그림 III-3〉 농가부채 발생 내부적 원인	30
〈그림 III-4〉 농가부채특별법 이후 변화	32
〈그림 III-5〉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33
〈그림 III-6〉 농가부채 상환 가능성	35
〈그림 III-7〉 농가부채 상환 곤란 이유 1순위	36
〈그림 III-8〉 농가부채 증감 전망	43
〈그림 III-9〉 농업소득 비율	49
〈그림 III-10〉 전체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60
〈그림 III-11〉 저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60
〈그림 III-12〉 중저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61
〈그림 III-13〉 중상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61
〈그림 III-14〉 고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62
〈그림 III-15〉 소득규모별 부채규모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에 따른 구분 개념도	68
〈그림 III-16〉 전체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69
〈그림 III-17〉 저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70
〈그림 III-18〉 중저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71
〈그림 III-19〉 중상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71
〈그림 III-20〉 고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72
〈그림 IV-1〉 농가순소득과 농가순현금소득의 추이	94
〈그림 IV-2〉 농가순현금소득 대비 농가부채비율 추이	94
〈그림 IV-3〉 에이커(약1,226평)당 평균농지가격 추이	94
〈그림 IV-4〉 연방정부의 직접지불금 추이	94
〈그림 V- 1〉 경영회생 프로그램의 체계도	118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제주도 농가부채는 1997년까지는 1300만원 수준으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IMF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1년 3,084만원, 2002년 3,253만원으로 증대하였고, 2004년 현재 4,523만원 수준으로 전국의 2,689만원의 1.68배, 가장 적은 지역인 충남의 2,157만원의 2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총농가부채 규모는 1조 5천억 ~ 1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주도 GRDP의 25% 수준이며, 농림어업부문 GRDP의 1.7배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문제의 발생원인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기술혁신에 따라 공급과잉시대로 전환되면서 농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농가의 부실화가 확산되는 것에 기인된다. 이러한 농가부실화는 농지방매 → 농가자산가치 하락 → 농촌금융시장 붕괴 → 건전 농가 부실화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초래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은 금융위기에 처한 농가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농가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근시안적이고 선거용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근본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자율 경감이나 원금상환연기에 중점을 두어 부채문제를 담시 덮어둘 뿐 근본적인 부채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가부채의 증가원인 분석과 경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부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현장조사 및 통계자료를 통해 부채문제의 현상파악과 심층분석을 시도하고 둘째, 그동안의 정부의 부채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과 일본의 금융위기시의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미국의 파산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셋째, 이것을 바탕으로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3. 주요 내용

- 통계자료를 이용한 제주도 농가의 소득, 지출 및 부채 구조 파악
- 농가설문조사와 제주도 금융기관의 내부자료를 통한 부채 구조 파악 및 발생원인 파악
- 설문조사된 농가부채자료의 심층분석
 - 소득수준별 부채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 분석
 -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규모·장기상환능력의 입체분석
 -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규모·장기상환능력의 범주분석
 - 농가부채의 증가 요인분석
-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파악
- 미국의 농가파산법(파산법 제 12조)의 구조 및 특징 분석
-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경감방안 모색

II. 제주도 농가의 수입·지출·부채구조의 시계열 분석

1. 농가수입 구조분석

가. 농가원수의 변화

제주의 농가구원수는 2004년 현재 3.18명으로 전국의 2.85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제주의 영농종사자수는 2.28명으로 전국의 2.24명과 비슷한 편이나, 비영농종사자수는 0.9명으로 전국의 0.61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런 결과는 제주지역은 전지역이 한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농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II-1> 가구원, 영농종사자, 비영농종사자수의 구성비의 변화

단위 : 명, %

연도	가구원수(명)		영농종사자수(명)		비영농종사자수(명)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1993	3.78	4.07	2.16	2.09	1.62	1.98
1994	3.68	4.06	2.11	2.13	1.57	1.93
1995	3.56	3.93	2.08	2.12	1.48	1.81
1996	3.46	3.83	2.06	2.07	1.4	1.76
1997	3.39	3.73	2.05	2.07	1.34	1.66
1998	3.29	3.82	2.1	2.01	1.19	1.81
1999	3.23	3.82	2.15	2.08	1.08	1.74
2000	3.12	3.63	2.16	2.08	0.97	1.55
2001	3.05	3.5	2.17	2.07	0.88	1.43
2002	2.97	3.4	2.17	2.01	0.8	1.39
2003	2.96	3.45	2.24	2.27	0.73	1.18
2004	2.85	3.18	2.24	2.28	0.61	0.9
평균	3.28	3.70	2.14	2.11	1.14	1.60
93-2004 증감률	-2.53	-2.22	0.33	0.79	-8.50	-6.9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나.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의 변화

제주의 농가소득은 1996년 3,100만원으로 전국에 비해 700만원정도 많았지만, 그 이후 대폭 하락해 1999-2003년 동안은 2,200~2,500만원 수준으로 거의 전국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2004년에는 6년만에 찾아온 채소와 감귤가격의 호조로 3,35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1998년 평균 농가소득은 2,780만원인데 반해, 감귤가격이 폭락한 1999~2002년까지의 평균은 2,430만원으로 거의 300만원 이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간동안 농업소득이 1,65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대폭 하락했지만,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II-2>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의 변화

단위 : 백만원(2000년기준가격), %

연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21.9	27.3	10.9	17.9	6.5	7.0	4.5	2.4
1994	24.3	26.5	12.4	16.5	7.4	7.7	4.6	2.4
1995	23.9	29.8	11.5	19.5	7.6	8.2	4.8	2.2
1996	24.3	31.1	11.3	19.1	7.8	8.3	5.2	3.7
1997	25.2	24.0	10.9	12.8	9.3	8.9	4.9	2.3
1998	22.0	27.9	9.6	13.3	7.5	10.7	4.9	3.9
1999	22.5	22.5	10.7	10.4	7.1	8.2	4.8	3.9
2000	23.1	24.7	10.9	11.9	7.4	8.7	4.7	4.1
2001	22.7	23.6	10.7	9.8	7.4	10.3	4.6	3.4
2002	22.1	26.5	10.2	12.0	7.4	11.1	4.6	3.4
2003	22.4	25.8	8.8	7.2	7.8	13.8	5.8	4.8
2004	24.9	33.5	10.4	11.5	8.2	14.6	6.4	7.4
평균	23.3	26.9	10.7	13.5	18.8	25.3	5.0	3.6
93-98평균	23.6	27.8	11.1	16.5	7.7	8.5	4.8	2.8
93-2004 증감률	1.18	1.87	-0.47	-3.97	2.89	0.68	3.25	11.01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농가소득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으나, 1인당 농가소득의 1993-98년 평균은 710

II. 제주도 농가의 수입·지출·부채구조의 시계열 분석

만원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40만원이 높았으나, 1999-2002년 평균은 680만원으로 전국평균 730만원에 비해 5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제주도 1인당 농가소득의 평균은 750만원으로 전국의 720만원에 비해 30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농가구원 1인당 주요 농가소득의 변화

단위 : 백만원(2000년기준가격), %

연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5.8	6.7	2.9	4.4	1.7	1.7	1.2	0.6
1994	6.6	6.5	3.4	4.1	2.0	1.9	1.2	0.6
1995	6.7	7.6	3.2	5.0	2.1	2.1	1.4	0.5
1996	7.0	8.1	3.3	5.0	2.3	2.2	1.5	1.0
1997	7.4	6.4	3.2	3.4	2.7	2.4	1.5	0.6
1998	6.7	7.3	2.9	3.5	2.3	2.8	1.5	1.0
1999	7.0	5.9	3.3	2.7	2.2	2.1	1.5	1.0
2000	7.4	6.8	3.5	3.3	2.4	2.4	1.5	1.1
2001	7.5	6.7	3.5	2.8	2.4	3.0	1.5	1.0
2002	7.4	7.8	3.4	3.5	2.5	3.3	1.5	1.0
2003	7.6	8.7	3.0	2.4	2.6	4.7	1.9	1.6
2004	8.7	11.8	3.6	4.0	2.9	5.1	2.2	2.6
평균	7.2	7.5	3.3	3.7	2.3	2.8	1.5	1.1
93-98평균	6.7	7.1	3.1	4.2	2.2	2.2	1.4	0.7
99-02평균	7.3	6.8	3.4	3.1	2.4	2.7	1.5	1.0
93-2004 증감률	3.81	5.22	2.12	-0.80	4.76	10.37	5.93	14.66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기간동안 59.2%에서 34.3%로 하락한 반면에 전국평균은 47%에서 42% 대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그렇지만 절대

적인 농가소득의 감소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점유율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농가소득의 구성비율의 변화

연도	농업소득비		농외소득비		이전소득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49.8	65.6	29.8	25.7	20.4	8.6
1994	50.8	62.0	30.4	29.1	18.7	8.9
1995	48.0	65.2	31.8	27.6	20.2	7.2
1996	46.5	61.4	32.1	26.8	21.3	11.8
1997	43.4	53.4	36.9	37.0	19.6	9.7
1998	43.7	47.7	34.0	38.4	22.3	13.9
1999	47.3	46.4	31.5	36.3	21.2	17.3
2000	47.2	48.0	32.2	35.3	20.6	16.7
2001	47.1	41.7	32.7	43.8	20.1	14.5
2002	46.1	45.4	33.3	41.9	20.7	12.7
2003	39.3	27.8	35.0	53.5	25.7	18.7
2004	41.6	34.3	32.9	43.5	25.5	22.2
평균	45.9	49.9	32.7	36.6	21.4	13.5
93-98평균	47.0	59.2	32.5	30.8	20.4	10.0
93-2004 증감률	-1.63	-5.73	0.91	4.89	2.04	8.9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다. 농업조수입의 구성변화

농업조수입은 감귤가격하락으로 인해 1996년 2,98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300만원대에 머무르다가 2004년 감귤유통명령제 등 제반여건의 호조로 감귤가격이 상승해 2,790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하락하였다. 반면에 농업경영비는 1,200만원대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즉 40% 이상 상승하였다. 따라서 농업소득율 ((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농업조수입)은 96년까지는 60% 이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3년 27.8%, 2004년 34.3%로 30% 수준대로 하락하였다. 1993~1998년 기간동안의 농업소득율은 제주도가 59%, 전

II. 제주도 농가의 수입·지출·부채구조의 시계열 분석

국의 47%로 차이가 있었으나, 1999년 이후로 제주도의 소득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전체분석기간 동안의 제주도의 평균소득율은 49%수준으로 10%포인트 감소했으나, 전국은 47%에서 45%로 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3~2004년까지의 농업조수입은 연평균 0.68% 상승에 그친 반면에 지출적 요인인 농업경영비는 6.79% 증가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표 II-5>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율의 추이

단위 : 백만원(2000년기준가격), %

연도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율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16.7	25.9	5.8	8.0	49.8	65.6
1994	18.4	25.8	6.0	9.4	50.8	62.0
1995	17.6	29.2	6.1	9.8	48.0	65.2
1996	18.0	29.8	6.7	10.7	46.5	61.4
1997	18.5	25.7	7.6	12.9	43.4	53.4
1998	17.9	25.4	8.3	12.1	43.7	47.7
1999	18.8	22.3	8.2	11.9	47.3	46.4
2000	19.5	23.7	8.6	11.8	47.2	48.0
2001	19.2	21.8	8.5	11.9	47.1	41.7
2002	18.0	23.9	7.8	11.9	46.1	45.4
2003	19.7	22.2	10.9	15.0	39.3	27.8
2004	22.9	27.9	12.5	16.4	41.6	34.3
평균	18.8	25.3	8.1	11.8	45.9	49.9
93-98평균	17.8	27.0	6.7	10.5	47.0	59.2
93-2004 증감률	2.89	0.68	7.21	6.79	-1.63	-5.7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제주도 농업조수입의 품목별 전국(=100)과의 비율변화 추이를 보면, 제주도 농가소득의 변화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농작물 조수입 중에서 채소류조수입이 전국평균 보다 낮은 1998~2001년까지, 특히 1999년과 2000년은 80% 수준을 보여

더욱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과수조수입은 1996년까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을 보이다가 1997년 이후 9배, 1998년 8배, 1999년~2001년 6배, 2002년 이후에는 5배 수준으로 1996년의 절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채소류와 과수 조수입이 예년에 비해 동시에 떨어졌던 1999~2001년 기간동안은 농가소득이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6> 농업조수입의 품목별 전국평균(=100.0)과의 비율의 변화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 조 수 입	155.0	140.6	166.4	165.4	138.7	142.0	118.7	121.3	113.3	132.5	112.5	122.15
농작물수입	188.7	178.3	219.2	200.1	167.4	153.4	128.8	133.8	121.5	136.1	139.3	150.51
(미곡)	0.9	0.0	0.0	0.0	0.0	0.2	0.2	0.1	1.4	1.2	0.46	1.04
(백류)	284.8	505.9	350.3	276.8	265.2	106.2	192.1	217.7	166.0	218.7	199.1	119.72
(잡곡)	257.6	185.5	53.1	114.7	196.9	93.5	27.6	27.3	37.4	78.3	66.4	109.96
(두류)	221.9	243.3	248.0	288.9	218.9	430.8	148.8	234.8	241.4	208.0	153.3	119.17
(서류)	728.3	646.1	432.2	528.4	412.2	343.5	252.8	378.1	478.1	596.5	627.4	355.85
(채소)	76.0	126.5	142.8	145.8	125.8	99.2	87.7	89.5	104.5	117.9	141.9	151.86
(특용작물)	6.0	16.3	13.7	28.6	52.1	31.9	5.6	56.8	28.5	7.9	9.1	13.43
(과수)	1302.4	992.0	1223.7	1137.3	939.5	744.0	604.0	602.4	529.2	516.1	535.1	548.5
농작물외수입	23.3	9.9	7.7	6.7	7.8	60.9	48.7	38.9	52.8	108.4	17.8	4.33
(축산)	23.5	10.0	7.8	6.7	7.8	60.9	48.0	39.0	52.7	108.4	15.1	2.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라. 비영농종사자의 농외소득의 구성변화

제주의 비영농종사자의 1인당 농외소득은 2002년까지는 전국평균과 작거나 거의 유사했으나,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서 2004년에는 전국평균은 15백만원, 제주도는 18백만원으로 오히려 3백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해

II. 제주도 농가의 수입·지출·부채구조의 시계열 분석

보면, 제주도농가의 겸업소득은 전국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이외소득(근로소득 등) 등에서 약 3백여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외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도의 농업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등과 맞물려 통계조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농가경제통계 표본수가 170여개에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II-7> 비영농종사자 1인당 농외소득

단위 : 백만원(2000년 기준가격), %

연도	농외소득		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4.0	3.6	0.9	0.6	3.2	2.9
1994	4.7	4.0	1.0	0.8	3.7	3.2
1995	5.1	4.5	1.1	0.8	4.0	3.7
1996	5.6	4.7	1.1	0.9	4.4	3.8
1997	6.9	5.3	1.5	0.8	5.5	4.5
1998	6.3	5.9	1.1	1.1	5.2	4.9
1999	6.6	4.7	1.4	1.5	5.2	3.2
2000	7.7	5.6	1.5	1.6	6.2	4.1
2001	8.5	7.2	1.6	2.0	6.9	5.2
2002	9.2	8.0	1.6	1.9	7.5	6.1
2003	12.9	14.0	3.1	3.2	9.8	10.8
2004	15.6	18.8	3.8	4.1	11.8	14.7
평균	7.4	8.0	1.6	1.8	5.8	6.2
93-98평균	5.4	4.7	1.1	0.8	4.3	3.8
93-2004 증감률	11.58	18.92	12.93	21.35	11.16	18.3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2. 농가 가계비의 지출구조 분석

제주도 농가의 고정비적인 지출요인인 가계비는 농가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패턴은 큰 변화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에 비해 최근(2003-2004년)에는 5백여만원, 분석기간 평균으로는 2백5십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제주도농가의 1인당 가계비는 2002년까지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3년이후 농가소득의 상승에 따라 지출액은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8> 농가의 가계비와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단위 : 백만원(2000년기준가격), %

연도	전체 가계비		1인당 가계비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15.8	16.9	4.2	4.1	69.1	106.4
1994	15.9	17.6	4.3	4.3	77.4	93.3
1995	16.2	18.1	4.6	4.6	70.8	107.3
1996	17.7	19.4	5.1	5.1	63.6	98.5
1997	18.3	20.1	5.4	5.4	59.9	63.7
1998	17.7	19.3	5.4	5.1	54.5	68.9
1999	17.3	20.0	5.4	5.2	61.7	52.1
2000	18.0	20.9	5.8	5.8	60.5	56.8
2001	17.6	19.3	5.8	5.5	61.0	50.8
2002	16.1	19.0	5.4	5.6	63.1	63.0
2003	15.2	20.2	5.1	6.8	58.2	35.5
2004	15.8	20.9	5.5	7.3	65.5	54.9
평균	16.8	19.3	5.2	5.4	63.8	70.9
93-98평균	16.9	18.6	4.8	4.8	65.9	89.7
93-2004 증감률	0.01	1.99	2.61	5.34	-0.47	-5.8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제주도의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1996년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100%를 상회했지만, 그 이후 농업소득의 감소로 1999년 이후 평균적으로 50%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즉 예전에는 농업소득은 가계비를 충당했고, 농외소득이나 이전수입은 재산증식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모든 농가소득이 가계비로 지출되어 재산증식은 커녕 부채상환 여유자금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입 및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가부채의 구조분석

가. 제주도 농가 부채와 지역내총생산의 변동추이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에 따른 제주도의 호당 농가부채는 1997년까지는 1,3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1998년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2,57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3,890만원으로 전국 2,300만원에 비해 약 6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농가부채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생산성 부채는 감소(75%→72%)한 반면에 가계성 부채는 증가(20%→23%)했고, 차입금상환 및 이자는 5%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부채 구성요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산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업자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겸업소득의 증대를 위한 겸업자금의 비중과 재산적 지출용도(가계성 부채는 아니지만 또한 생산성 부채도 아닌 재산적 증식을 위한 지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호당 부채(2004년 경상가격기준)는 4,523만원으로 전국평균의 2,689만원에 비해 68.2%가 많고, 가장 적은 지역인 충청남도 2,157만원의 2.1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당 농가부채에 농가호수를 곱해 지역별 부채총액을 추정했는데, 제주도의 총농가부채는 1조 6,449억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주요 비교대상인 광역자치단체의 부채총액의 합인 5.1%로 농가수의 점유비 3.1%보다 높아, 1호당 농가부채가 타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9> 제주도 농가부채 규모와 요소별 비율의 변화

단위 : 백만원(2000년기준가격), %

연도	전국	제주도				
	농가부채 (백만원)	농가부채 (백만원)	농가부채 구성 요소 비율			기타
			생산성부채	가계성부채	차입금상환 및이자	
1993	8.8	9.0 (6.9)	75.2	20.2	4.6	-
1994	9.4	9.7 (8.1)	75.1	19.7	5.2	-
1995	10.0	9.4 (8.6)	78.6	16.3	5.2	-
1996	12.2	12.1 (11.6)	72.4	16.1	11.5	-
1997	13.9	13.9 (13.0)	74.9	16.5	8.6	-
1998	18.3	20.1 (18.7)	78.8	15.9	5.3	-
1999	18.7	26.0 (25.7)	73.7	20.6	5.7	-
2000	20.2	29.3 (29.3)	70.5	23.6	5.9	-
2001	19.4	29.3 (30.8)	71.7	22.4	5.9	-
2002	18.0	29.4 (32.5)	71.9	24.3	3.8	-
2003	22.2	36.7 (44.0)	71.5	28.5	-	2.5
2004	23.1	38.9 (45.2)	70.0	30.0	-	5.7
평균	16.2	22.0	73.7	21.2	6.2	
93-98평균	12.1	12.4	75.8	17.5	6.7	
99-02평균	19.1	28.5	72.0	22.7	5.3	
93-2004 증감률	9.13	5.02	-0.24	1.33	-	

*()안은 경상가격 기준 농가부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이렇게 추정된 지역별 총농가부채를 지역내총생산(GRDP)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지역내총생산액 7조 495억원의 23.3%로 여타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라남도의 14.9%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이상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의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생산은 9,382억원으로 제주도총부채의 1.75배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비율은 강원도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타지역도 그 비율이 전부 100%를 상회하고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부채문제는 특정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0>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총농가부채 규모 추정(2004년 경상가격기준)

지역	농가 부채 규모			제주도 점유 비율(%)		
	호당 농가부채(A) (천원)	농가수(B) (호)	부채총액(A*B) (억원)	호당 농가부채	농가수	부채총액
경기도	28,718	142,391	40,892	106.8	12.1	12.7
강원도	30,049	75,154	22,583	111.7	6.4	7.0
충청북도	25,527	83,890	21,414	94.9	7.1	6.7
충청남도	21,567	160,784	34,676	80.2	13.6	10.8
전라북도	23,829	117,762	28,061	88.6	10.0	8.7
전라남도	28,367	199,053	56,466	105.5	16.9	17.5
경상북도	24,477	212,705	52,064	91.0	18.1	16.2
경상남도	32,772	150,261	49,244	121.9	12.8	15.3
제주도	45,231	36,366	16,449	168.2	3.1	5.1
합계	26,892	1,178,366	321,848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homepage.

<표 II-11> 지역내 총생산과 총농가부채의 비교(2004년 경상가격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부채총액 (A)	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 (B)	지역내총생산 (C)	비율(A/B)	비율(A/C)
경기도	40,892	28,818	1,569,312	141.9	2.6
강원도	22,583	12,857	216,272	175.7	10.4
충청북도	21,414	14,270	243,100	150.1	8.8
충청남도	34,676	32,593	427,423	106.4	8.1
전라북도	28,061	26,473	241,616	106.0	11.6
전라남도	56,466	39,848	379,410	141.7	14.9
경상북도	52,064	35,571	566,098	146.4	9.2
경상남도	49,244	29,325	523,671	167.9	9.4
제주도	16,449	9,382	70,495	175.3	23.3
합계	321,848	229,136	4,237,396	140.5	7.6

자료 : 통계청 homepage.

한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의 對 농가의 상호금융 및 정책대출 금액을 중심으로 농가부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자. 물론 이 금액은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을 용자해 간 농민(즉, 부채있는 농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전체농가(부채유무 관계없음)의 평균 농가부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새마을금고, 신협, 기타금융기관 및 사채의 차입분은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있는 농가의 평균부채보다는 다소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농협의 對 농가 총대출액을 보면, 2000년 1조 4,325억원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해 2004년말 1조 8,077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총대출액을 2004년 기준으로 세분해 보면, 중장기정책성 자금인 정책자금 대출액은 4,69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25.5%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1조 3,387억원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이들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중장기정책자금 대출액은 절대자금규모측면에서 4천억 중반에서 5천억대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상호금융의 규모는 9천억 수준에서 점차 증대해 1조 3천억원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상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책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위해 다시 상호금융을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농민들의 진술한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2> 제주도 농협의 대농가 상호금융 및 정책대출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대출금액			점유비율	
	정책대출	상호금융	계	정책대출	상호금융
2000년	4,838	9,487	14,325	0.338	0.662
2001년	5,104	10,610	15,714	0.325	0.675
2002년	4,859	11,297	16,156	0.301	0.699
2003년	5,299	12,031	17,330	0.306	0.694
2004년	4,690	13,387	18,077	0.259	0.741
2005년 6월	4,538	13,262	17,800	0.255	0.745
연평균증가율 (00-04)	-0.8	9.0	6.0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내부자료.

<표 II-13> 제주도 농가호당 상호금융 및 정책대출 변화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정책대출	상호금융	대출금액
2000년	1,237	2,425	3,662
2001년	1,255	2,609	3,864
2002년	1,284	2,985	4,268
2003년	1,398	3,175	4,573
2004년	1,290	3,681	4,971
2005년 6월	1,248	3,647	4,895
연평균증가율('00~'04)	1.0	11.0	7.9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내부자료.

농가 1호당 총대출액(부채있는 농가)은 2000년 3,662만원에서 연평균 7.9%로 증가해 2004년 4,971만원으로 거의 5천만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규모는 본 연구에서 농가대상 설문조사결과의 부채있는 농가의 평균부채액인 5,175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책대출과 상호금융자금으로 구분하면,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정책대출은 1,200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은 2000년 2,425만원에서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04년 현재 3,681만원에 달하고 있다.

나. 농가부채 상환능력 및 부실채권의 변화추이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부채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자산의 비율(부채비율)은 1997년 이전에는 5.0%미만이었던 것이 1999년 이후 13% 수준으로 전국평균 보다 거의 유사하든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유통자산의 비율도 1997년 이전에는 거의 30%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15%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은 부채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소득에서 세금과 가계지

출비를 공제한 농가경제잉여가 1993~1998년 평균은 8백 5십만원이었지만, 감골 가격 의 급락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1999~2004년 평균은 300만 원대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특히 2003년은 마이너스 1백 1십만원으로 적자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의 변화

연 도	장기상환능력 (부채/자산비율)		단기상환능력 (부채/유통자산)		농가경제잉여 (2000년기준, 백만원)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전국평균	제주도
1993	5.1	2.9	65.2	41.0	5.5	10.2
1994	5.6	3.2	50.9	30.4	7.7	8.4
1995	5.8	3.3	46.4	29.0	6.9	10.5
1996	6.9	4.2	55.4	31.9	5.4	10.1
1997	7.1	4.5	49.6	31.4	6.1	3.0
1998	8.8	7.2	73.7	58.9	3.8	6.9
1999	12.0	11.4	69.0	72.3	4.6	1.7
2000	12.6	12.2	69.1	80.6	4.4	2.6
2001	12.2	12.3	63.0	78.5	4.6	2.0
2002	11.7	12.8	53.6	70.2	5.2	6.8
2003	13.0	13.7	78.4	94.8	2.3	-1.1
2004	11.0	12.3	61.1	75.6	3.7	5.9
평균	9.3	8.3	61.3	57.9	5.0	5.6
93-98평균	6.1	3.6	53.5	32.7	6.3	8.5
93-2004 증감률	7.22	13.96	-0.59	5.73	-3.59	-4.87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한편, 제주지역 특수채권(부실채권)의 변화추이를 2001년 1월을 100.0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수는 2001년 1월 100이었던 것이 8월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1년 12월말에 180으로 증가했고, 2002년 12월 230, 2003년 303, 2004년 말 449로 거의 1년 사이에 100%씩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금액은 이보다 더 급격한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1년 1월 100이었던 것이 2001년 12월 265, 2002년 말 343, 2003년 말 428, 2004년 말 592로 1년 사이에 150%씩 증가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IMF금융위기와 전반적인 품질하락으로 감골가

격이 폭락해서 그 여파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1년 이후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표 II-15> 제주지역 특수채권(부실채권) 변화추이

단위 : 2001년 1월=100.0기준

월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1	100	100	180	265	229	340	302	426	447	591
2	100	100	182	277	229	339	301	424	446	590
3	99	99	232	279	229	338	299	422	446	586
4	98	98	232	277	227	335	299	420	445	585
5	98	98	235	283	227	338	298	419	504	635
6	98	97	245	297	249	358	378	503	516	652
7	97	97	252	310	253	365	379	512	514	648
8	136	184	255	315	257	376	381	516	523	664
9	136	189	213	323	262	385	388	532	-	-
10	173	251	213	326	262	391	440	572	-	-
11	181	270	231	343	302	424	447	586	-	-
12	180	265	230	343	303	428	449	592	-	-

자료 : 제주도 A_지역농협 내부자료.

다. 농가부채와 주요변수간의 상관분석

농가의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것은 과수 조수입이 -0.913으로 가장 높고, 농업소득과 농업소득율이 -0.8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은 농업조수입이 0.895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소득 0.866, 농업소득율 0.773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율이 0.96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조수입과 과수조수입이 0.92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문은 첫

째, 과수조수입증대, 다음으로 농업소득 제고, 농업소득을 제고, 그리고 농업경영비의 절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도 요구된다. 즉 1·3차 산업의 연계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로 겸업소득의 향상과 국제자유도시의 진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증가로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 사업이외소득 증가가 기대된다.

<표 II-16> 농가의 주요소득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농가부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조수입	과수조수입	농업소득율	농업경영비
농가부채	1						
농가소득	-0.604	1.000					
농업소득	-0.875	0.866	1.000				
농업조수입	-0.802	0.895	0.926	1.000			
과수조수입	-0.913	0.737	0.923	0.890	1.000		
농업소득율	-0.866	0.773	0.966	0.801	0.874	1.000	
농업경영비	0.682	-0.503	-0.763	-0.462	-0.645	-0.897	1

농가부채의 각종 소득, 지출구조, 상관분석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농가부채는 농가경영 결과 나타난 종합 성적표 중의 하나이다. 절대적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 부채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분석없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농가의 구성원의 성향이 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농가부채가 증대하는 원인은 농가 구성원의 소비성향이 다소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은 전적으로 지출요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입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주요 지출요인인 농업경영비나 고정비적 성격인 가계비의 지출은 큰 변화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규모는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가계지출비는 전국평균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입요인의 핵심인 농업조수입은 1999년 이후 채소류와 감귤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했으나 이의 보완적인 농외소득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았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부채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 농가경제잉여(농가소득-제세금-가계비)가 1999년~2001년까지 거의 2백만원 정도로 1996년 이전의 1천만원에 비하면 거의 8백만원이 감소한 것이고, 전국평균의 5백만원 수준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따라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농업구조개선자금을 대폭 융자해 시설확대를 기했던 제주도의 농가는 상환잉여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가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문은 첫째, 과수조수입증대, 다음으로 농업소득 제고, 농업소득을 제고, 그리고 농업경영비의 절감 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도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감귤산업의 회생, 그리고 채소류 조수입의 적정가격 수취, 신품종 화훼와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도 병행되어 농업소득의 증대야 말로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의 제1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1·3차 산업의 연계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로 겸업소득의 향상과 국제자유도시의 진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 사업이외소득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Ⅲ.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분석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조사의 목적은 제주지역 농가의 부채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농가부채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하고, 이를 통해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농가부채의 실태, 농가부채 발생원인,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농가부채 상환 방안, 농가부채 해결방안 등이다.

나. 조사의 기본설계

1) 표본설계(Sample Design)

- (1) 모 집 단 (Population) : 제주도 일반 농가
- (2) 표본 크기 (Sample size) : 400명
- (3) 표 본 추 출 방 법 : 지역별 농가별 비례할당 및 무작위추출법
- (4) 신뢰수준과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4.9\%$ 포인트

2) 자료수집방법 및 기간, 기관

- (1) 접 근 방 법 : 표본 추출된 해당가구를 방문, 1:1 개별면접 수행
- (2)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 (3) 실 사 기 간 : 2005년 5월 19일 ~ 5월 28일 (10일간)
- (4) 조 사 기 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다. 자료처리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

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1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 처리했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감귤소득 비중별, 재배규모별 의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집단간 평균차이 검정방법인 ANOVA분석을 실시했다.

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구 분	빈 도	백분율
제 주 시	71	17.7	남 자	321	80.2
서귀포시	72	18.0	여 자	79	19.8
북제주군	130	32.5			
남제주군	127	31.8	30 대	37	9.2
			40 대	75	18.7
제 주 시	71	17.7	50 대	99	24.7
서귀포시	72	18.0	60 대	130	32.5
한 경 면	31	7.8	70세이상	59	14.7
한 립 읍	27	6.7			
애 월 읍	23	5.6	국졸이하	114	28.5
조 천 읍	25	6.2	중 졸	81	20.2
구 좌 읍	24	6.1	고 졸	163	40.7
대 정 읍	28	7.1	전문대졸	11	2.8
안 덕 면	26	6.5	대졸이상	31	7.8
남 원 읍	27	6.8			
표 선 면	23	5.7	과 수	234	58.4
성 산 읍	23	5.8	발 작 물	154	38.5
			기 타	12	3.1

마. 분석 원칙

유의도 검사(통계량)는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는 '독립성 검정 방법'인 χ^2 검정을 실시했고, 서열척도로 측정된 경우에는 t-test와 ANOVA를 실시했다. 이때 매우 적은 사례수를 가진 '무응답'을 포함할 경우, 셀(Cell)값이 너무 적어져 유의도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응답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2. 농가부채 실태 및 발생원인, 정책과제

가. 농가부채 규모 및 주 차입처

제주도의 농가 40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농가 평균 부채액은 4,200만원이며, 최대 3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도 3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없는 농가는 75농가(전체 조사농가의 18.8%)를 제외한 부채 있는 농가의 평균부채액은 5,175만원으로 전체부채평균에 비해 약 1천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규모별 재분석을 해보면,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3천~5천 규모가 20%, 5천~1억원 이하가 20%, 1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1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농가부채규모인 2,6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의 고액부채도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있는 경우의 농가부채의 표준편차는 5,594만원으로 나타나, 각 농가의 부채규모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농가 부채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부채규모는 각각 3,036만원, 3,108만원으로 가장 작은 반면에, 다음으로 북군서부는 4,129만원, 남군서부 4,725만원, 북군동부 4,806만원으로 4천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나, 남군동부는 5,688만원으로 시지역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市 지역보다는 郡 지역 농가의 부채규모가 훨씬 더 많았으며, 북군동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차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아 부채규모가 매우 큰 농가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가 있는 농가들의 평균규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은 각각 3,602만원, 3,856만원으로 3천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타지역은 5천만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남군동부지역은 7,130만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 이를 살펴보면, 성상읍은 8,649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원읍 7,608만원, 애월읍과 조천읍은 6천만원 초반대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 농가'의 부채규모가 가장 적은 1,924만원, '30대 이하농가'가 5,367만원, '40대 농가'는 5,262만원으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채있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부채규모를 재산정해 보면, 30대 이하는 7,262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이하 6,255만원, 50대 이하 5,694만원, 60대 이하 4,187만원을 보여주고 있고, 70대 이상도 3,158만원으로 전국평균부채규모인 2,600만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농가 부채 규모

구 분		전체평균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구 분	4,200	5,175	140	30,000	5,594
지역별	제 주 시	3,036	3,602	140	30,000	5,298
	서귀포시	3,108	3,856	200	15,000	3,172
	북군서부	4,129	5,115	450	26,000	5,269
	북군동부	4,806	5,993	200	30,000	7,685
	남군서부	4,725	5,815	500	20,000	4,928
	남군동부	5,688	7,130	300	30,000	6,326
소지역별	제 주 시	3,036	3,602	140	30,000	5,298
	서귀포시	3,108	3,856	200	15,000	3,172
	한 경 면	3,263	4,030	450	10,000	2,930
	한 립 읍	4,345	5,417	500	20,000	5,976
	애 월 읍	5,074	6,265	500	26,000	6,733
	조 천 읍	5,111	6,163	300	30,000	7,984
	구 좌 읍	4,494	5,806	200	25,000	7,559
	대 정 읍	5,514	5,948	500	20,000	5,390
	안 덕 면	3,864	5,620	500	15,000	4,304
	남 원 읍	5,948	7,608	700	20,000	4,882
	표 선 면	4,186	5,086	500	20,000	4,943
	성 산 읍	6,855	8,659	300	30,000	8,503
농업 소득 비중	30% 이하	3,310	4,486	320	20,000	6,102
	50% 이하	2,926	3,997	300	30,000	4,884
	70% 이하	2,710	3,421	200	10,000	3,354
	71% 이상	4,617	5,537	140	30,000	5,734

농가부채 증가원인 분석 및 경감방안

구 분		전체평균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연령별	30대 이하	5,367	7,262	450	30,000	7,432
	40 대	5,262	6,255	300	20,000	5,289
	50 대	5,472	5,694	300	30,000	6,542
	60 대	3,321	4,187	140	20,000	4,067
	70대 이상	1,924	3,158	300	30,000	4,647
시설 감괄 유무	노지감괄	3,946	5,058	140	30,000	5,801
	시설감괄	5,341	6,096	300	20,000	4,559
	기타작물	3,984	4,842	200	30,000	5,806
영농 분야	감괄	4,043	5,052	140	30,000	5,465
	밭작물	4,222	5,002	200	30,000	5,551
	기타	6,897	11,050	3,000	20,000	6,981

<표 III-3> 농가 부채 규모 재분석

구 분	전체 농가			부채 있는 경우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부채 없음	75	18.8	18.8			
1천만원 이하	79	19.8	38.5	79	24.3	24.3
1천~2천만원 이하	41	10.3	48.8	41	12.6	36.9
2천~3천만원 이하	47	11.8	60.5	47	14.5	51.4
3천~4천만원 이하	15	3.8	64.3	15	4.6	56.0
4천~5천만원 이하	50	12.5	76.8	50	15.4	71.4
5천~6천만원 이하	14	3.5	80.3	14	4.3	75.7
6천~7천만원 이하	9	2.3	82.5	9	2.8	78.5
7천~8천만원 이하	9	2.3	84.8	9	2.8	81.2
8천~9천만원 이하	4	1.0	85.8	4	1.2	82.5
9천~1억원 이하	27	6.8	92.5	27	8.3	90.8
1억~1억 5천만 이하	10	2.5	95.0	10	3.1	93.8
1억5천~2억원 이하	14	3.5	98.5	14	4.3	98.2
2억~2억5천만원 이하	1	0.3	98.8	1	0.3	98.5
2억 5천만원 초과	5	1.3	100.0	5	1.5	100.0
계	400	100.0		325	100.0	

‘시설감귤 재배농가’의 부채액은 5,341만원으로 ‘노지감귤’(3,946만원) 재배농가나 ‘기타 밭작물 농가’(3,984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별로 이를 살펴보면, 70%이하인 농가의 농가부채 규모는 3천만원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 조사농가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70%이상의 농업소득비중을 보이는 농가의 부채규모는 4,61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있는 농가의 평균은 5,537만원으로 나타났다.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재배하는 작물별’로 세분하여 부채액을 재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마늘’, ‘양배추’, ‘보리’, ‘감자’, ‘쪽파’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이들 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채액을 분석한 결과, ‘감자 재배농가’의 부채액은 6,572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양배추’와 ‘당근’재배농가가 5천만원대 초반으로 높은 반면에 마늘농가와 쪽파, 보리농가는 3천만원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부채규모는 전국평균에 비해서 절대적인 규모도 크지만, 개별농가별·지역별·연령별·시설영농유무형태별·전겸업형태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가의 부채대책은 지금까지의 부채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농가를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책자금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간 또는 농가간 부채규모의 격차와 성격을 반영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 40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부채의 주 차입처’를 조사한 결과, 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감협’을 통해 부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00농가 중 ‘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를 대상으로 주 차입처를 재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는 농가’들의 97.2%가 ‘농·감협을 통해 차입’했다는 것이다.

일반농가’들의 부채 주 차입처가 주로 ‘농·감협’인 점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업비중별로 보면, 농업소득 비율이 ‘50% 이하 농가’들에서 ‘부채가 없는 경우’(26%대)가 약간 더 많았으며, ‘71% 이상 농가’의 81.2%가 ‘농·감협’을 통해 부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감귤 농가’보다 ‘밭작물 농가’들이 좀 더 많이 ‘농·감협을 통해 부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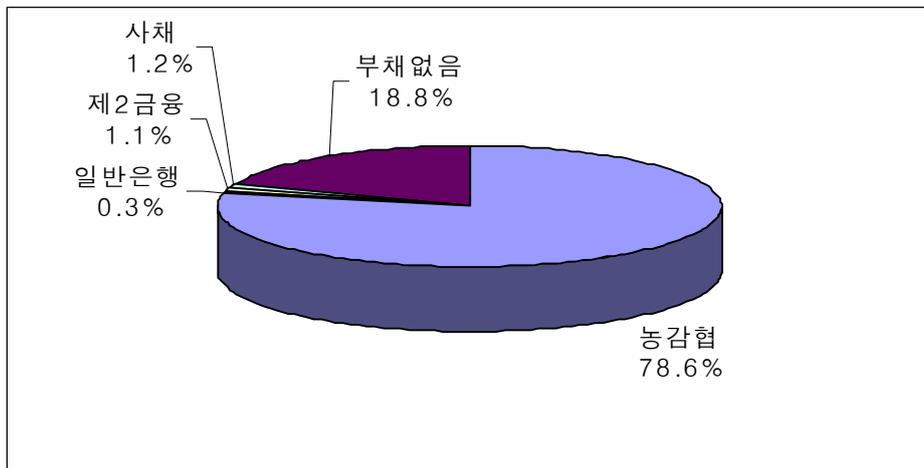
<표 Ⅲ-4> 각종 발작물별 부채액 분석

종 류	사례수	전체 평균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마늘	83	3,525	4,386	200	20,000	4,554
양배추	28	5,178	6,087	500	20,000	5,831
당근	23	5,347	5,976	200	30,000	8,077
쪽파	11	3,343	3,740	300	5,000	1,435
보리	28	2,759	3,434	300	14,000	3,314
감자	23	6,572	7,447	300	25,000	6,914
오가피	1	3,000	3,000	3,000	3,000	0
더덕	3	5,000	7,500	5,000	10,000	3,843
드릅	2	5,610	10,000	10,000	10,000	0
양파	2	4,630	8,000	8,000	8,000	0
콩깨	5	3,678	4,320	400	10,000	4,189
무우	5	2,608	3,698	500	10,000	3,696
옥수수	1	2,000	2,000	2,000	2,000	0
신선초	1	10,000	10,000	10,000	10,000	0
브로콜리	4	4,434	4,434	2,000	9,000	3,404
연맥	1	800	800	800	800	0
미나리	1	1,500	1,500	1,500	1,500	0
양하	1	3,000	3,000	3,000	3,000	0
딸기	3	782	782	500	1,000	311

<표 Ⅲ-5> 농가부채 주 차입처

구 분	사례수	농·감협	일반은행	제2 금융권	사채	부채 없음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78.6	0.3	1.1	1.2	18.8		
⊗ 지역별 ⊗								
제주시	(71)	78.0	1.8	1.8	2.6	15.7		
서귀포시	(72)	79.7		0.9		19.4		
북군서부	(81)	78.7			2.0	19.3		
북군동부	(49)	80.2				19.8		
남군서부	(54)	76.8		2.2	2.2	18.8		
남군동부	(73)	78.1		1.6		20.2		
⊗ 농업비중별 ⊗								
30% 이하	(36)	68.3	3.6	1.9		26.2	x ² 17.98	P 0.035
31 - 50%	(44)	70.5			2.7	26.8		
51 - 70%	(24)	76.4			2.8	20.8		
70% 이상	(296)	81.2		1.2	.9	16.6		
⊗ 영농분야별 ⊗								
과수작물	(234)	78.0		1.3	.7	20.0	x ² 16.65	P 0.010
밭작물	(154)	81.6	.8		2.0	15.6		
기타	(12)	52.8		9.6		37.6		

<그림 Ⅲ-1> 농가부채 주 차입처



나. 농가부채의 외부적 발생원인

제주도의 농가들은 '농가부채의 외부적 요인'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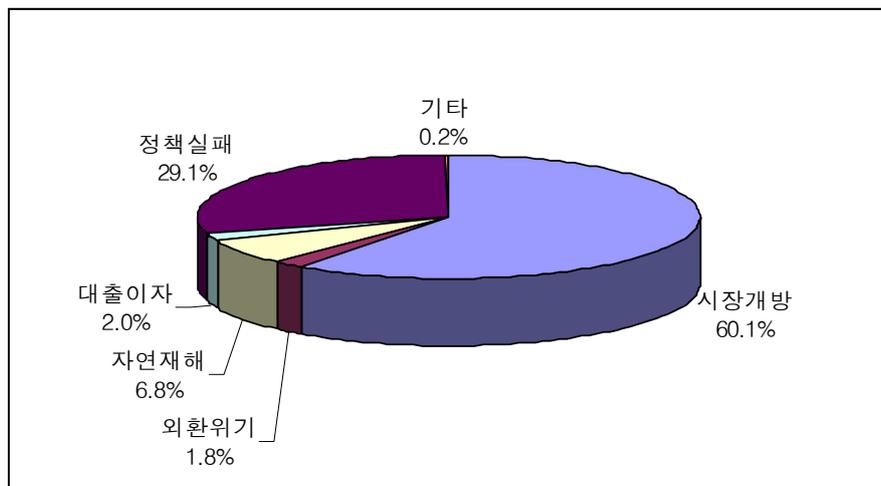
산물 가격 하락(60%)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의 실패'(29.1%)도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부채의 외부적 발생원인

구 분	사례수	시장 개방	외환 위기	자연 재해	대출 이자	정책 실패	기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60.0	1.8	6.8	2.0	29.1	0.2		
⊗ 지역 별 ⊗									
제 주 시	(71)	64.8	2.2	8.0	3.7	21.4			
서 귀 포 시	(72)	66.1	0.9	4.2		28.8			
북 군 서 부	(81)	50.8	4.1	3.1	3.5	38.5			
북 군 동 부	(49)	58.9	1.8	18.8		20.5			
남 군 서 부	(54)	59.0		1.6	1.3	38.1			
남 군 동 부	(73)	61.0	1.2	8.3	2.8	25.9	0.9		
⊗ 영농분야 별 ⊗									
과 수 작 물	(234)	64.5	1.7	4.4	1.5	27.9	.3	χ^2	p
발 작 물	(154)	54.7	2.7	11.1	1.1	30.4		37.89	0.000
기 타	(12)	41.7			22.5	35.8			

지역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가들의 약 65%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 농가부채의 외부적 발생원인



다른 지역과 달리 '북군 동부지역 농가'들은 '농업정책 실패'도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이 지역 농가들은 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호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차질'(18.8%)도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남군 서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정책의 실패'(38.1%)를 좀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과수작물 재배(감귤)농가'들의 64.5%가 '농산물 시장개방의 여파'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밭작물 농가' 경우에는 '농산물 개방'(54.7%), '농업정책 실패'(30.4%),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차질'(11.1%)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귤'보다는 '밭작물'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농가부채의 내부적 발생원인

제주도의 농가들은 '농가부채의 내부적 발생 요인'으로 '생산비용 증가'를 가장 많이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잉생산'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약, 비료 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 그대로 부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는 '생산비 증가'(48.1%)를 중시하면서, '과잉생산'(26.6%)과 '과다한 가계비 지출'(13.5%)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 서귀포시 지역 농가들은 '과잉생산'(43.3%)과 '생산비 증가'(28.9%), '유통정보 부족'(10.3%)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군과 남군 농가들은 '생산비 증가'를 중시하면서 '과잉생산'을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과수작물 재배(감귤)농가'들의 45.8%가 '생산비 증가'를 중시하고 있고, 특히, '밭작물 재배 농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생산비 증가'(66.2%)를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감귤 재배는 하지 않고 '노지감귤만을 재배하는 농가'(이하 노지감귤 재배 농가)들이 '생산비 증가'(46.7%)와 '과잉생산'(24.7%)과 '유통정보 부족'(12.3%)을 중시하는 반면, '시설감귤 재배농가'(시설감귤만을 재배하거나 노지감귤과 시설감귤을 동시에 재배하는 농가)들은 '과잉생산'(38.0%)도 중요한 부채발생 원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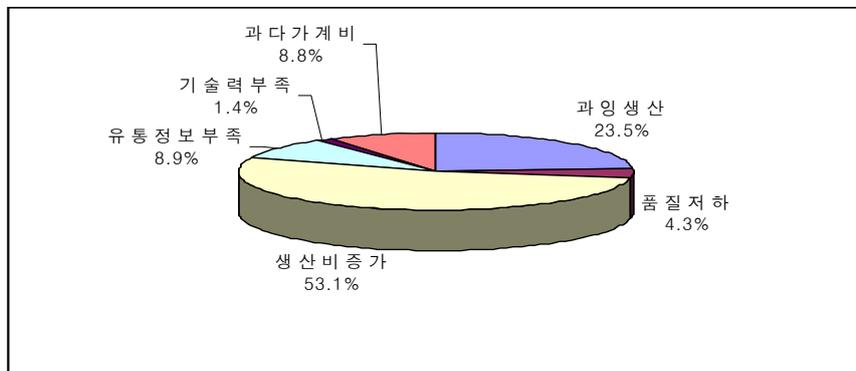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비중별로 보면, 농업소득이 '70% 이상' 농가들이 '생산비 증가'요인(55.2%)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Ⅲ-7> 부채발생의 내부적 원인

구 분	사례수	과잉 생산	품질 저하	생산비 증가	유통정보 부족	기술력 부족	과다 가계비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23.5	4.3	53.1	8.9	1.4	8.8		
⊗ 지역별 ⊗								x ² 57.89	p 0.000
제주시	(71)	26.6	1.7	48.1	8.4	1.8	13.5		
서귀포시	(72)	43.3	8.1	28.9	10.3	1.2	8.2		
북군서부	(81)	18.3	7.9	48.7	12.5	1.1	11.5		
북군동부	(49)	10.6	1.4	79.7	2.4		5.9		
남군서부	(54)	14.5		69.7	8.8		7.0		
남군동부	(73)	22.1	4.0	56.7	8.8	3.4	5.1		
⊗ 영농분야별 ⊗								x ² 40.82	p 0.000
과수작물	(234)	29.9	4.7	45.8	9.8	1.1	8.6		
밭작물	(154)	13.6	3.9	66.2	5.5	1.1	9.7		
기타	(12)	25.4		28.8	35.5	10.4			
⊗ 시설감귤유무 ⊗								x ² 26.66	p 0.002
노지감귤	(191)	24.7	5.5	46.7	12.3	.8	10.0		
시설감귤	(69)	38.0	1.9	46.2	5.9	3.1	5.0		
기타작물	(140)	14.7	3.8	65.4	5.9	1.2	9.0		
⊗ 농업비중별 ⊗								x ² 27.43	p 0.025
30% 이하	(36)	21.3	3.3	50.1	5.3	4.5	15.5		
31 - 50%	(44)	19.9	2.0	47.3	13.5	2.0	15.3		
51 - 70%	(24)	19.7	17.2	43.3		3.6	16.2		
70% 이상	(296)	24.6	3.7	55.2	9.4	0.7	6.4		

<그림 Ⅲ-3> 농가부채 발생 내부적 원인



라. 농가부채특별법 효과

‘2001년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제주도 농가들의 거의 절반인 48.5%가 ‘부채상환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는 이자 지급도 힘들기 때문에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 농가들 중 단지 17.6%만이 특별법을 통해 ‘일시적이거나 부채를 유예시켜줘서 경영회생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응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이후 농가부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Ⅲ-8> 농가부채특별법 이후 변화

구 분	사례수	회생 가능성 생김	잠시 유예 불과, 부채 증가	변화 없음	무응답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17.6	48.5	20.6	13.3		
⊗ 지역 별 ⊗							
제주 시	(71)	18.1	41.8	21.6	18.5		
서귀포 시	(72)	22.3	39.5	23.0	15.1		
북군 서부	(81)	10.2	60.1	17.8	11.9		
북군 동부	(49)	16.0	50.2	19.7	14.2		
남군 서부	(54)	15.5	56.0	16.8	11.7		
남군 동부	(73)	23.2	44.5	23.6	8.7		
⊗ 연령 별 ⊗							
30 대	(37)	4.3	69.6	13.0	13.0	x ² 39.04	p 0.000
40 대	(75)	7.9	66.7	19.0	6.3		
50 대	(99)	18.2	49.4	22.1	10.4		
60 대	(130)	19.3	39.3	24.0	17.3		
70 이상	(59)	33.3	31.0	17.2	18.4		
⊗ 농업비중 별 ⊗							
30% 이하	(36)	13.0	49.2	11.5	26.3	x ² 17.11	p 0.047
31 - 50%	(44)	3.9	62.8	16.8	16.5		
51 - 70%	(24)	26.6	44.6	16.9	11.9		
70% 이상	(296)	19.5	46.6	22.5	11.4		
⊗ 부채 유무별 ⊗							
부 채 있 음	(325)	18.2	50.7	21.0	10.1	x ² 15.37	p 0.001
부 채 없 음	(75)	15.0	39.2	18.7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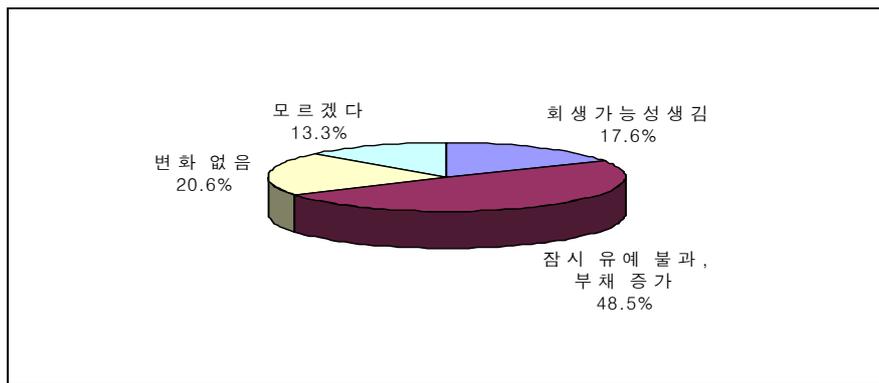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잠시 유예에 불과, 계속적인 부채 증가’에 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북군(56.3%)에서 가장 많았고, ‘회생가능성이 조금 생겼다’는 응답은 ‘서귀포시 지역농가’(22.3%)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농가'들의 69.6%가 '잠시 유예에 불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70세 이상 농가'들의 31%가 '잠시 유예에 불과했다'는 응답을 함으로서 젊을수록 '잠시 유예에 불과했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나이가 많을수록 '경영회생의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부채 유무별로 보면, '부채가 없는 농가'들에 비해 '현재 부채가 있는 농가'들에서 '농가부채특별법'이 '농가부채를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4> 농가부채특별법 이후 변화



마.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농가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제주도 농가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32.4%인데 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43.4%)거나 '그저 그렇다'(24.2%)는 응답이 전체의 67.6%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군서부와 남군서부 농가들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군동부 농가들의 긍정적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시지역 농가보다는 군지역 농가들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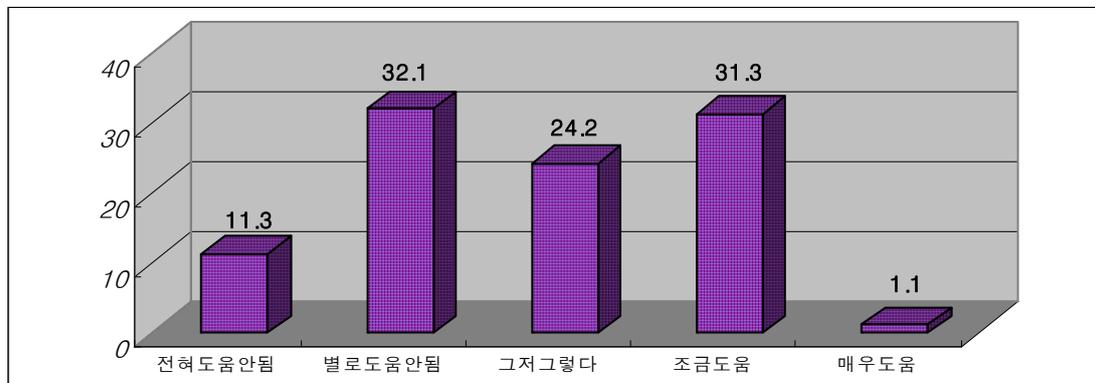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젊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원예작물'과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9>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그저 그렇다	약간 도움	매우 도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11.3	32.1	43.4	31.3	1.1		
⊗ 지역별 ⊗							F 6.04	p 0.000
제주시	(71)	7.0	22.8	30.9	38.0	1.2		
서귀포시	(72)	7.4	29.0	24.0	36.7	3.0		
북군서부	(81)	20.3	39.9	22.2	17.7			
북군동부	(49)	11.4	29.3	25.8	33.4			
남군서부	(54)	21.0	36.4	17.8	24.8			
남군동부	(73)	2.4	34.4	23.7	37.9	1.6		
⊗ 연령별 ⊗							F 3.23	p 0.012
30대	(37)	17.4	52.2	17.4	13.0			
40대	(75)	14.3	31.7	20.6	31.7	1.6		
50대	(99)	13.0	29.9	26.0	29.9	1.3		
60대	(130)	8.7	29.3	27.3	33.3	1.3		
70 이상	(59)	6.9	29.9	23.0	40.2			
⊗ 영농분야별 ⊗							F 9.01	p 0.000
과수작물	(234)	8.2	26.3	28.1	35.6	1.8		
밭작물	(154)	16.2	41.2	17.6	25.0			
기타작물	(12)	9.6	29.5	31.4	29.5			
⊗ 시설감귤유무 ⊗							F 11.10	p 0.000
노지감귤	(191)	8.0	24.3	30.3	36.3	1.1		
시설감귤	(69)	7.9	32.9	22.9	33.2	3.1		
기타작물	(140)	17.6	42.3	16.5	23.6			

<그림 Ⅲ-5>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



바. 농가부채 상환 가능성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만으로 농가부채의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농가들은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되는 농가소득으로 부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농가’(62.9%)는 ‘부채의 일부는 상환이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부채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소 어렵지만 일부는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가는 전체의 2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0> 향후 소득으로 부채 상환 가능성

구 분	사례수	충분히 상환	다소 어려우나 상환 가능	전체 상환은 곤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325)	11.9	25.3	62.9		
⊗ 지역 별 ⊗					x ² 24.54	p 0.006
제 주 시	(60)	19.3	21.2	59.5		
서 귀 포 시	(58)	24.4	28.1	47.6		
북 군 서 부	(65)	2.5	23.8	73.7		
북 군 동 부	(39)	2.2	27.2	70.6		
남 군 서 부 남 군 동 부	(44) (58)	11.3 9.3	20.6 30.4	68.1 60.3		
⊗ 연 령 별 ⊗						
30 대	(27)	5.9	29.4	64.7		
40 대	(63)	9.4	26.4	64.2		
50 대	(95)	13.5	16.2	70.3		
60 대	(103)	14.3	29.4	56.3		
70 이상	(36)	9.4	32.1	58.5		
⊗ 영농분야 별 ⊗					x ² 21.17	p 0.000
과 수 작 물	(187)	16.4	29.9	53.7		
밭 작 물 기 타	(130) (8)	6.1	17.2 48.5	76.8 51.5		
⊗ 시설감귤유무 ⊗					x ² 18.43	p 0.00
노 지 감 귤	(149)	16.1	27.9	56.0		
시 설 감 귤 기 타 작 물	(61) (115)	12.2 6.2	36.0 16.2	51.8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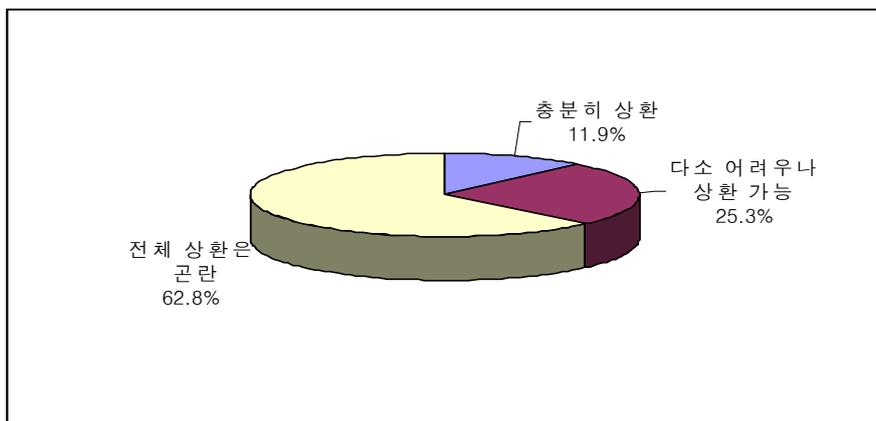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19.3%), 서귀포시 농가(24.4%)들의 일부가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북군의 경우’ 단지 2.4%에 불과했으며, ‘남군 지역 농가’에서는 그보다 조금 많은 10.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북군서부, 북군동부, 남군서부 지역농가들의 약 70%이상이 '전체 상황은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특히,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전체 상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76.8%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과수 농가'들에게서는 '충분히 상환가능'(16.4%)하다는 의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상환 가능성의 주요변수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령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Ⅲ-6> 농가부채 상환 가능성



사. 농가부채 상환곤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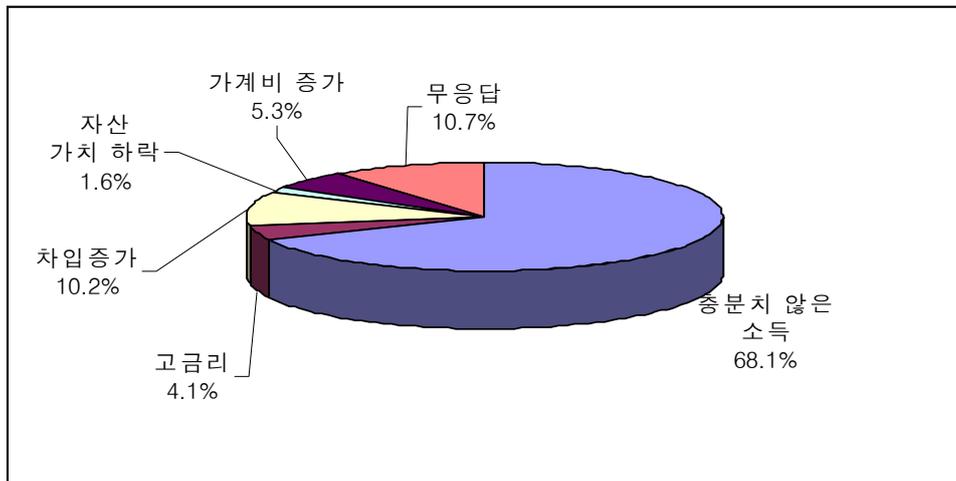
'농가부채 상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 중 대부분의 농가들은 가장 먼저 '부채를 상환할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아 부채 상황이 어렵다'(68.2%)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가부채 상황이 곤란한 이유 두번째로는 '부채상환을 위해 또 다른 부채를 차입'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세번째는 '가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금리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에 부채 상황이 곤란하다'는 의견은 다른 중요한 요인들에 묻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감소하여 농가부채 상황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11> 부채 상황 곤란 이유(1순위)

구 분	사례수	충분치 않은 소득	고금리	차입증가	가치 하락	가계비 증가	무응답
전 체	(325)	68.2	4.1	10.2	1.6	5.3	10.7
⊗ 지역 별 ⊗							
제 주 시	(60)	67.0	2.6	6.9		7.1	16.4
서 귀 포 시	(58)	67.4		9.1		3.5	19.9
북 군 서 부	(65)	60.3	9.6	15.2	1.3	11.1	2.5
북 군 동 부	(39)	85.0		10.7	2.2		2.2
남 군 서 부	(44)	74.9		9.9		5.4	9.8
남 군 동 부	(58)	62.7	9.3	8.7	5.7	2.2	11.5
⊗ 연 령 별 ⊗							
30 대	(27)	47.1	11.8	17.6		17.6	5.9
40 대	(63)	58.5	3.8	11.3	1.9	15.1	9.4
50 대	(95)	71.6	2.7	10.8	1.4	1.4	12.2
60 대	(103)	71.4	4.2	8.4	2.5	0.8	12.6
70대 이상	(36)	83.0	1.9	5.7		1.9	7.5

다음의 '종합 분석'은 1순위 응답을 100점으로 하고, 2순위 응답에는 67점, 3순위 응답에는 33점을 부여하여 재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따르면, 농가들은 '부채상환이 어려운 이유'를 주로 '충분치 않은 소득'과 '차입금 증가' 및 '과다한 가계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분치 않은 소득' 요인 점수가 80.3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요인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림 Ⅲ-7> 농가부채 상황 곤란 이유 1순위



<표 Ⅲ-12> 부채 상황 곤란 이유(종합)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충분치 않은 소득	고금리	차입증가	자산가치 하락	가계비 증가
전 체	(325)	80.3점	14.3점	37.3점	5.5점	30.7점
⊗ 지역 별 ⊗						
제 주 시	(60)	76.7	16.3	24.9	5.1	36.7
서 귀 포 시	(58)	74.0	6.5	39.0	4.2	28.3
북 군 서 부	(65)	82.7	19.3	34.4	6.6	33.7
북 군 동 부	(39)	92.2	14.1	43.4	5.0	38.0
남 군 서 부	(44)	85.1	8.7	48.7	2.9	25.2
남 군 동 부	(58)	76.0	19.0	39.1	8.3	22.9
⊗ 연 령 별 ⊗						
30 대	(27)	70.6	29.5	33.4	-	39.2
40 대	(63)	76.2	11.3	40.3	5.6	41.5
50 대	(95)	81.1	11.3	37.0	5.4	33.8
60 대	(103)	81.6	15.1	37.9	6.7	21.8
70 이상	(36)	89.3	13.8	34.7	6.3	22.6

아. 농가부채 상황 예상 기간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325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 예상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의 농가 171가구(52.5%)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인 ‘3년 안에 농가부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농가는 22.3%(1년 미만 2.9% + 1~3년 미만 19.4%)에 불과했다.

이렇게 장기적(10년 이상)인 시간이 걸려야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농민들이 ‘농가소득 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고, 현재의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얻어 임시변통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과수 작물 재배농가’들 보다는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좀 더 장기간의 상환 기간을 예상하고 있어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농가들의 32.3%와 서귀포시 농가들의 37.6%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군지역 농가들은 그 보다 훨씬 많은

60% 이상의 농가들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좀 더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군동부 지역 농가'들의 약 69.7%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좀 더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응답자'들의 63.5%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장 비관적인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응답자'들은 '비교적 단 기간인 3년 이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관적인 응답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농가부채 상환 기간 예상

구 분	사례수	1년 미만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통계값	유의도
전 체	(325)	2.9	19.4	18.7	6.5	52.5		
☒ 지역 별 ☒							x ² 45.45	p 0.000
제 주 시	(60)	7.3	33.1	14.8	12.5	32.3		
서 귀 포 시	(58)	5.9	28.8	20.4	7.3	37.6		
북 군 서 부	(65)	1.0	12.4	24.6	2.7	59.3		
북 군 동 부	(39)		13.0	17.2		69.7		
남 군 서 부	(44)		17.0	12.6	9.4	61.1		
남 군 동 부	(58)	1.5	10.1	19.8	6.2	62.5		
☒ 연 령 별 ☒							x ² 30.10	p 0.017
30 대	(27)		5.9	29.4		64.7		
40 대	(63)		15.1	20.8	9.4	54.7		
50 대	(95)	4.1	13.5	13.5	5.4	63.5		
60 대	(103)	3.4	26.1	21.8	8.4	40.3		
70대 이상	(36)	5.7	34.0	11.3	3.8	45.3		
☒ 시설감귤유무 ☒							x ² 19.22	p 0.013
노 지 감 귤	(149)	3.4	25.6	15.2	8.3	47.5		
시 설 감 귤	(61)	3.6	12.6	29.6	4.1	50.1		
기 타 작 물	(115)	1.9	15.0	17.4	5.4	60.3		

자. 부채상환을 위한 매년 차입액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상환을 위해 매년 새롭게 차입하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농가들은 매년 최대 2억원, 평균 1,230만원(표준편차 1,829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북군 동부지역 농가들의 '매년 차입액'이 평균 2,295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차입농이 다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군 서부, 남

Ⅲ.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분석

군지역, 서귀포시지역은 1천만원 초반대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시는 771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표 Ⅲ-14> 부채상환을 위한 매년 차입액

구 분		평 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구 분	1,230	0	20,000	1,829
지역별	제 주 시	771	0	10,000	1,341
	서귀포시	1,348	0	8,000	1,859
	북군서부	1,104	0	4,000	1,009
	북군동부	2,295	0	20,000	3,674
	남군서부	1,299	0	5,000	1,304
	남군동부	969	0	5,000	1,099
소지역별	제 주 시	771	0	10,000	1,341
	서귀포시	1,348	0	8,000	1,859
	한 경 면	949	0	3,000	1,037
	한 림 읍	1,472	0	4,000	1,101
	애 월 읍	885	0	2,000	758
	조 천 읍	1,998	0	6,000	1,949
	구 좌 읍	2,636	0	20,000	5,029
	대 정 읍	1,218	0	5,000	1,268
	안 덕 면	1,413	0	5,000	1,382
	남 원 읍	1,039	0	3,000	1,068
	표 선 면	675	0	3,000	815
성 산 읍	1,188	0	5,000	1,353	
농업 소득 비중	30% 이하	672	0	5,000	1,024
	50% 이하	1,010	0	5,000	1,299
	70% 이하	1,019	0	5,000	1,501
	71% 이상	1,334	0	20,000	1,963
연령별	30대 이하	1,112	0	6,000	1,504
	40 대	1,335	0	8,000	1,537
	50 대	1,405	0	20,000	2,500
	60 대	1,213	0	10,000	1,531
	70대 이상	733	0	6,000	1,016
감귤 시설 유무	노지감귤	1,198	0	10,000	1,556
	시설감귤	1,250	0	8,000	1,540
	기타작물	1,263	0	20,000	2,263
영농 분야	감귤	1,206	0	10,000	1,608
	밭작물	1,297	0	20,000	2,157
	기타	730	0	1,000	408

<표 III-15> 부채상환을 위한 매년 차입액 재분석

구분	차입 없음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합계
빈도	83	142	53	25	15	6	324
백분율	25.7	43.7	16.4	7.8	4.7	1.7	100

차. 자산처분 부채상환 의향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를 대상으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농가부채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부채 농가의 104명, 32%가 ‘자산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부채농가의 약 1/3이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 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농가부채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자산을 처분해야 부채 상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6>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 처분 의향

구분	사례수	처분의향이 있다	처분 의향이 없다	생각 안해 봄	통계값	유의도
전체	(325)	32.1	37.9	30.0		
⊗ 지역별 ⊗					x ² 18.96	p 0.040
제주시	(60)	38.0	26.0	36.1		
서귀포시	(58)	29.9	33.9	36.2		
북군서부	(65)	21.0	52.4	26.5		
북군동부	(39)	42.0	25.8	32.2		
남군서부	(44)	27.4	52.6	20.0		
남군동부	(58)	37.5	35.1	27.4		
⊗ 시설감귤유무 ⊗					x ² 16.33	p 0.020
노지 감귤	(149)	39.8	28.8	31.4		
시설 감귤	(61)	26.2	35.8	38.0		
기타 작물	(115)	25.2	50.8	23.9		
⊗ 영농분야별 ⊗					x ² 14.68	p 0.005
과수 작물	(187)	33.4	30.2	36.5		
밭 작물	(130)	29.3	49.2	21.5		
기타	(8)	48.5	36.1	15.4		

지역별로 보면, 다른 지역 농가에 비해 ‘북군동부 지역 농가’들이 ‘자산처분 의

향이 가장 많은 것'(42%)으로 조사되었고, '북군서부 지역 농가'들이 '자산처분 의향'(21.0%)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북군 동부지역 농가들의 부채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노지감귤 재배농가'의 경우, 39.8%가 '자산 처분 의향'을 갖고 있었다.

카. 자산처분 부채상환 이유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 가운데 '자산을 처분해서 농가부채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 104명(전체조사농가 400명의 26%, 부채농가의 32%)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군동부 지역 농가'의 95.9%가 '소득만으로 부채상환이 곤란해서'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이 다른 지역 농가들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7> 농가부채 상환을 위한 자산 처분 이유

구 분	사례수	소득만으로 는 상환이 어려워	전업을 위해	늡거나 힘이 부쳐서	무응답	통계값	유의도
전 체	(105)	89.6	1.2	6.8	2.4		
⊗ 지역 별 ⊗							
제 주 시	(23)	85.7	5.7	8.7			
서 귀 포 시	(17)	92.6			7.4		
북 군 서 부	(14)	83.3		16.7			
북 군 동 부	(17)	95.9		4.1			
남 군 서 부	(12)	90.1			9.9		
남 군 동 부	(22)	90.2		9.8			
⊗ 농업비중 별 ⊗							
30% 이하	(13)	83.8	9.7	6.5		x ² 14.64	p 0.023
31 - 50%	(7)	100.0					
51 - 70%	(5)	66.2		33.8			
70% 이상	(79)	91.0		5.8	3.1		

타. 향후 농가부채 증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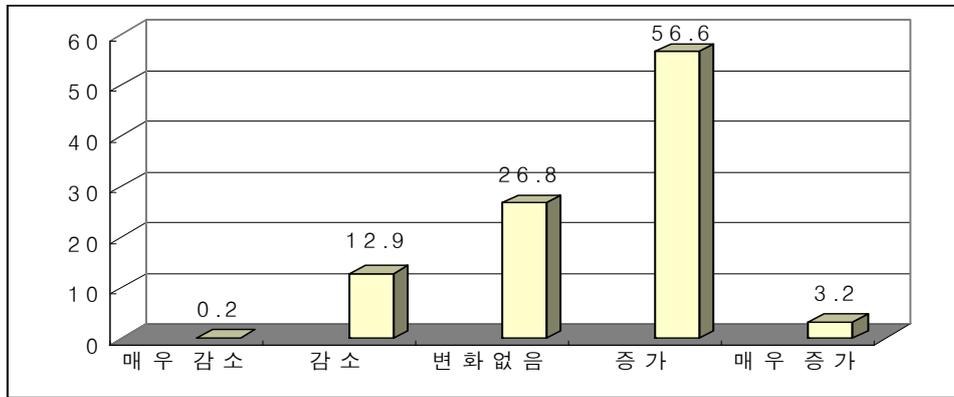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향후 농가부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농가들의 절반 이상인 59.8%가 ‘계속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가부채 관련 정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농가는 전체의 12.9%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 농가에 비해 특히, ‘북군동부 지역 농가’들에서 ‘향후 농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77.1%로서 가장 높았다.

영농분야별로 보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농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68.2%(증가 64.3% + 매우 증가 3.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수 농가’들의 ‘부채 증가 예상 비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55.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18> 농가부채 증감 전망

구 분	사례수	매우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매우 증가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2	12.9	26.8	56.6	3.2		
⊗ 지역 별 ⊗								
제 주 시	(71)		11.0	27.0	62.0		F 2.41	p 0.045
서 귀 포 시	(72)		18.0	31.3	46.6	2.9		
북 군 서 부	(81)	1.1	12.3	35.4	47.8	3.5		
북 군 동 부	(49)		2.4	20.5	75.3	1.8		
남 군 서 부	(54)		16.1	19.3	60.3	4.4		
남 군 동 부	(73)		15.3	22.6	55.5	6.6		
⊗ 연령 별 ⊗								
30 대	(37)		26.1	21.7	43.5	8.7	F 2.89	p 0.021
40 대	(75)		12.7	28.6	49.2	9.5		
50 대	(99)		6.5	19.5	74.0			
60 대	(130)	0.7	10.7	32.0	54.0	2.0		
70대 이상	(59)		20.7	28.7	50.6			
⊗ 영농분야 별 ⊗								
과 수 작 물	(234)		14.6	29.8	52.8	2.4	F 3.98	p 0.019
밭 작 물	(154)	0.6	8.7	22.5	64.3	3.9		
기 타	(12)		32.9	24.6	32.9	9.6		

<그림 Ⅲ-8> 농가부채 증감 전망



파. 농가부채 해결 주요 정책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농가들은 1순위 응답에서 47.4%가 ‘장기저리 정책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계속적인 부채상환 연장’과 ‘10년간 분할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59.2%)와 ‘서귀포시’(56.4%) 및 ‘남군 동부’(51.9%)지역 농가들은 다른 지역 농가에 비해 ‘정책자금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밭작물 농가’들은 주로 ‘장기저리 자금 확대’(36.6%)와 함께 ‘상환 연장’(21.2%)과 ‘10년 분할 상환’(20.7%)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과수농가’와 ‘기타 작물농가’들은 주로 ‘장기저리 자금 확대’(54%대)를 희망하고 있다.

<표 Ⅲ-19> 농가부채 해결 정책(1순위)

구 분	사례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차등 지원	분할 상환	자산 매입	채무 조정	부채 탕감
전 체	(400)	47.4	15.6	7.8	12.9	2.9	7.9	4.6
⊗ 지역 별 ⊗								
제 주 시	(71)	59.2	10.5	4.6	13.0	3.0	7.5	2.2
서 귀 포 시	(72)	56.4	8.0	5.8	5.1	3.4	12.6	6.9
북 군 서 부	(81)	30.7	17.1	11.0	19.1	3.7	11.1	5.4
북 군 동 부	(49)	40.4	25.3	15.4	14.6		4.2	
남 군 서 부	(54)	44.7	26.1	7.0	16.2		2.2	3.8
남 군 동 부	(73)	51.9	12.3	5.0	9.8	5.3	6.9	7.6

☒ 영농분야 별 ☒									
과 수 작 물	(234)	53.9	12.8	5.8	8.47	2.7	9.7	6.0	
밭 작 물	(154)	36.6	21.2	9.7	20.7	3.4	4.3	3.0	
기 타	(12)	57.5		22.5			19.9		
☒ 시설감귤유무 ☒									
노 지 감 귤	(191)	53.8	12.9	4.7	8.1	3.8	9.5	6.2	
시 설 감 귤	(69)	49.5	9.5	11.9	8.1	1.9	13.1	6.0	
기 타 작 물	(140)	37.5	22.4	10.0	21.7	2.2	3.1	1.8	

다음의 '종합' 분석은 '1순위 응답을 100점으로 하고, 2순위 응답에는 67점, 3순위 응답에는 33점을 부여'하여 재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따르면, 농가들 대다수가 '정책자금 확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다음으로 '분할상환', '상환연장', '차등지원', '채무조정'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농가부채 해결 정책(종합)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차등 지원	분할 상환	자산 매입	채무 조정	부채 탕감
전 체	(400)	61.5	35.9	22.6	36.1	7.1	16.9	9.4
☒ 지 역 별 ☒								
제 주 시	(71)	71.5	36.3	20.1	34.9	6.1	13.6	9.2
서 귀 포 시	(72)	69.1	26.3	16.3	29.1	11.4	22.8	11.1
북 군 서 부	(81)	51.0	37.3	27.1	40.7	9.3	18.6	6.8
북 군 동 부	(49)	59.5	48.2	27.3	36.6	1.6	9.8	7.2
남 군 서 부	(54)	54.3	45.5	26.2	43.3	2.6	11.1	9.9
남 군 동 부	(73)	62.5	28.1	20.6	33.3	8.4	21.7	12.0

하. 농업문제 해결 과제

'농업문제 중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제주도 농가들은 주로 '농산물 수입개방 억제 및 축소'(39.9%)와 '농가부채'(28.5%), '대체 소득 작물 개발 보급'(16%) 등의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체 농가의 39.9%가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해 심각하

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남군동부 지역 농가들이 '농업문제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북군의 동부와 서부, 남군서부 지역 농가들은 그 보다는 '부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현 단계 농업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 농업문제 중 시급한 해결과제

구 분	사례수	수입 억제	농가 부채	대체 작물	유통 혁신	직불제	재해 보험 확대	농약, 비료가격 인하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39.9	28.5	16.0	7.7	4.0	3.0	1.0		
⊗지역별⊗									x ² 73.02	p 0.000
제 주 시	(71)	45.1	14.7	17.8	14.4	1.2	6.7	2.7		
서 귀 포 시	(72)	43.0	15.4	22.1	5.9	7.2	3.6			
북 군 서 부	(81)	32.7	41.7	8.1	10.1	5.5	1.9			
북 군 동 부	(49)	41.7	44.8	6.4		2.6	3.1			
남 군 서 부	(54)	23.4	49.2	16.4	3.6	4.6	1.3			
남 군 동 부	(73)	50.5	13.8	22.9	8.3	2.4	1.2		0.9	
⊗영농분야별⊗									x ² 29.90	p 0.002
과 수 작 물	(234)	45.6	19.1	18.0	9.1	3.9	2.7	1.5		
발 작 물 기 타	(154) (12)	31.7 32.1	41.6 42.5	13.6 5.5	5.3 9.6	4.5	2.8	0.4		
⊗부채유무별⊗									x ² 18.78	p 0.004
부 채 있 음	(325)	35.9	32.3	14.9	8.4	4.4	3.0	1.1		
부 채 없 음	(75)	56.9	11.9	20.5	4.5	2.3	3.0	0.9		
⊗시설감귤유무⊗									x ² 34.36	p 0.000
노 지 감 귤	(191)	46.4	21.4	15.4	8.8	4.3	1.9	1.8		
시 설 감 귤 기 타 작 물	(69) (140)	39.2 31.3	16.7 43.9	24.8 12.4	7.6 6.2	6.1 2.6	5.6 3.1	.5		

영농분야별로 보면, 과수 농가는 농업문제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농산물 수입 개방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밭작물 재배농가는 '부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농가부채가 없는 농가들은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는 '부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리하면, 밭작물 중심지역인 북군동부와 서부, 남군서부지역과 부채가 있는 농가는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주시와 감귤중심지역인 서귀포시, 남군 동부지역농가들에 비해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보다 '부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그룹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3. 농가의 소득 및 자산 실태

가. 농가소득

‘제주도 농가의 한해 평균 소득’은 약 2,02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계산한 것이며, 농가소득이 전무한 가구도 있었으나, 최대 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남군지역에서 농가소득이 비교적 높았으며,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고, 시설감귤 재배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2> 농가 소득

구 분		평 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구 분	2,026	300	20,000	1,981
지역별	제 주 시	1,361	300	4,400	819
	서귀포시	2,168	400	7,000	1,421
	북군서부	1,704	400	4,500	882
	북군동부	1,663	300	10,000	1,840
	남군서부	2,532	500	15,000	2,700
	남군동부	2,759	445	20,000	3,032
소지역별	제 주 시	1,361	300	4,400	819
	서귀포시	2,168	400	7,000	1,421
	한 경 면	1,944	500	4,500	1,018
	한 림 읍	1,538	400	3,260	703
	애 월 읍	1,566	500	3,800	828
	조 천 읍	2,150	425	10,000	2,404
	구 좌 읍	1,165	300	4,000	756
	대 정 읍	2,290	500	10,000	1,663
	안 덕 면	2,795	600	15,000	3,520
	남 원 읍	3,454	500	14,000	2,770
	표 선 면	2,821	445	20,000	4,286
	성 산 읍	1,878	500	5,300	1,191

Ⅲ.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분석

농업 소득 비중	30% 이하	1,700	500	5,000	1,132
	50% 이하	2,088	500	7,000	1,422
	70% 이하	1,756	300	3,700	1,098
	71% 이상	2,078	300	20,000	2,178
연령별	30대 이하	2,874	500	15,000	3,205
	40 대	2,876	500	20,000	2,703
	50 대	1,986	500	14,000	1,770
	60 대	1,656	300	5,300	1,019
	70대 이상	1,299	300	10,000	1,214
감귤 시설 유무	노지감귤	1,860	400	14,000	1,687
	시설감귤	3,438	500	20,000	3,260
	기타작물	1,556	300	5,250	959
영농 분야	감귤	2,264	400	20,000	2,177
	밭작물	1,534	300	5,250	922
	기타	3,659	500	15,000	4,687

<표 Ⅲ-23> 농가 소득 재분석

구 분	빈도	백분율
1천만원 미만	67	16.8
1천만원	78	19.5
1천~2천만원 이하	135	33.8
2천~3천만원 이하	69	17.1
3천~4천만원 이하	24	5.9
4천~5천만원 이하	15	3.7
5천~6천만원 이하	0	0
6천~7천만원 이하	6	1.6
7천~8천만원 이하	0	0
8천~9천만원 이하	0	0
9천~1억원 이하	2	0.6
1~1억 5천만 이하	3	0.7
1억 5천만 초과	1	0.3
계	400	100

나. 농업소득 비율

‘제주도 농가들의 농업소득 비율’을 조사한 결과, ‘농업소득 비율이 71%이상’인 경우가 전체 농가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남군 지역의 경우 ‘농업소득 비율이 71%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7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소득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주시(16.0%)에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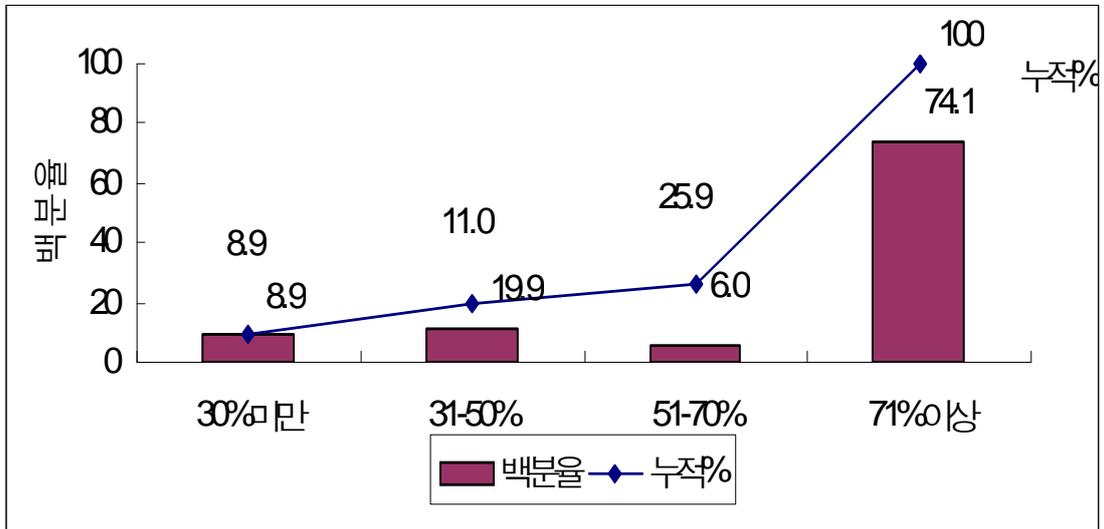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농가소득 비율이 71% 이상인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시설감귤만을 하거나, 노지감귤을 하면서 동시에 시설감귤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85.9%가 ‘농가소득 비율 71%’인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4> 농업소득 비율

구 분	사례수	30% 이하	31-50%	51-70%	71% 이상	통계값	유의도
전 체	(400)	8.9	11.1	6.0	74.1		
⊗ 지역 별 ⊗							
제 주 시	(71)	16.0	12.4	3.9	67.7		
서 귀 포 시	(72)	6.7	12.9	4.8	75.7		
북 군 서 부	(81)	6.3	12.7	7.9	73.1		
북 군 동 부	(49)	8.4	14.4	4.5	72.7		
남 군 서 부	(54)	6.8	11.2	5.8	76.2		
남 군 동 부	(73)	9.0	3.7	8.0	79.2		
⊗ 연 령 별 ⊗							
30 대	(37)	13.0	21.7	13.0	52.2	x ² 27.31	p 0.010
40 대	(75)	15.9	15.9	6.3	61.9		
50 대	(99)	9.1	10.4	5.2	75.3		
60 대	(130)	6.0	8.7	3.3	82.0		
70 이상	(59)	3.4	4.6	8.0	83.9		
⊗ 시설감귤유무 ⊗							
노 지 감 귤	(191)	6.2	11.7	7.4	74.7	x ² 13.89	p 0.030
시 설 감 귤	(69)	4.7	6.1	3.3	85.9		
기 타 작 물	(140)	14.6	12.7	5.3	67.4		

<그림 Ⅲ-9> 농업소득 비율



다. 자산 현황

농가의 자산 규모는 평균 약 2억 4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30억 원대의 토지자산을 보유한 농가도 있었다. '5천만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농가는 전체의 17.6%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 보유 농가'는 3.8%(1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5> 농가의 자산 현황

구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합계
빈도	70	84	93	114	24	15	400
백분율	17.6	20.9	23.2	28.4	6.1	3.8	100

농가의 토지자산은 평균 약 1억 8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30억원대의 토지자산을 보유한 농가도 있었다. '5천만원 이하'의 토지자산을 소유한 농가는 전체의 25.5%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자산 소유 농가'는 1.9%(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6> 농가의 토지자산 현황

구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합계
빈도	138	94	75	74	11	8	400
백분율	34.5	23.4	18.8	18.6	2.8	1.9	100

총자산 기준으로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 농가의 자산규모가 평균 4억 4천만원선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북군서부는 1억 2천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7> 농가 자산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토지자산	기타자산	총자산	토지/총자산
전체		17,651	6,572	24,223	72.9
대지역별	제주시	32,333	12,064	44,397	72.8
	서귀포시	22,259	4,875	27,134	82.0
	북군서부	7,601	4,857	12,458	61.0
	북군동부	11,796	7,132	18,928	62.3
	남군서부	12,089	5,067	17,156	70.5
	남군동부	18,015	5,546	23,561	76.5
소지역별	제주시	32,333	12,064	44,397	72.8
	서귀포시	22,259	4,875	27,134	82.0
	한경면	4,856	4,561	9,417	51.6
	한림읍	7,754	5,017	12,771	60.7
	애월읍	11,229	5,079	16,308	68.9
	조천읍	15,053	9,019	24,072	62.5
	구좌읍	8,465	5,202	13,667	61.9
	대정읍	12,229	5,726	17,955	68.1
	안덕면	11,936	4,348	16,284	73.3
	남원읍	15,773	5,028	20,801	75.8
	표선면	19,781	5,114	24,895	79.5
성산읍	18,927	6,581	25,508	74.2	

그리고 총자산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73%로 나타났다. 이를 대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귀포시가 82%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

Ⅲ.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분석

로 남군동부 76%, 제주시 73%의 수준으로 높은 반면에 북군 동부와 서부는 60% 초반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지역을 읍면별로 세분해 보면, 한경면이 51%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한림읍, 구좌읍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반면에 표선면, 남원읍, 성산읍 등은 70% 중반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제주시 지역의 73% 수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전체자산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50%이하가 32%로 가장 높고, 80%이하가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농가전체자산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50% 이하	127	31.6	31.6
50~60% 이하	25	6.3	37.9
60~70% 이하	46	11.6	49.5
70~80% 이하	73	18.2	67.7
80~90% 이하	68	17.0	84.7
90% 초과	61	15.3	100.0
합계	400	100.0	

한편 농가토지의 평당 가액을 보면, 3만원 이하가 42.3%, 5만원 이하는 전체의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를 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시 지불해야 되는 평당 대체농지조성비인 34,050원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농지를 농업 용도 이외의 자산가치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9> 농가 토지의 평당가액(토지자산/자가토지평수)

구 분	빈도	비율	누적비율
3만원 이하	145	42.3	42.3
3~5만원 이하	73	21.1	63.4
5~7만원 이하	34	9.9	73.3
7~10만원 이하	52	15.1	88.4
10~15만원 이하	16	4.7	93.1
15~20만원 이하	9	2.5	95.6
20만원 초과	15	4.4	100.0
합 계	344	100.0	
평균 평당가액		71,215원	

* 무응답 56농가(14.0%) 제외.

<표 III-30> 부채유무에 따른 농가의 총자산 규모

(단위 : 만원)

구 분		전체평균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구 분	24,223	23,397	0	310,000	31,172
지역별	제 주 시	44,397	41,366	0	310,000	57,302
	서귀포시	27,134	26,718	0	110,000	23,092
	북군서부	12,458	11,455	0	60,000	11,182
	북군동부	18,928	18,414	0	58,000	14,150
	남군서부	17,156	16,936	2,000	130,000	19,270
	남군동부	23,561	23,243	0	140,000	21,886
소지역별	제 주 시	44,397	41,366	0	310,000	57,302
	서귀포시	27,134	26,718	0	110,000	23,092
	한 경 면	9,417	8,148	0	30,000	7,453
	한 립 읍	12,771	12,526	0	40,000	9,681
	애 월 읍	16,308	14,781	1,750	60,000	15,672
	조 천 읍	24,072	24,077	0	58,000	16,928
	구 좌 읍	13,667	12,209	3,000	23,000	6,213
	대 정 읍	17,955	17,629	2,000	130,000	22,721
	안 덕 면	16,284	15,918	2,000	54,000	13,210
	남 원 읍	20,801	22,661	0	50,000	13,982
	표 선 면	24,895	24,820	300	140,000	33,166
	성 산 읍	25,508	22,311	2,000	60,000	15,126
농업소득비중	30% 이하	18,072	15,751	2,000	58,000	14,608
	50% 이하	25,234	21,896	0	100,500	23,324
	70% 이하	13,041	12,741	300	60,000	13,876
	71% 이상	25,709	25,218	0	310,000	33,967
연령별	30대이하	10,170	10,522	0	55,400	12,172
	40 대	23,417	21,359	0	140,000	27,943
	50 대	20,896	19,960	0	70,000	14,152
	60 대	30,931	29,010	0	220,000	39,908
	70대이상	24,866	29,763	0	310,000	44,748
시설감괄유무	노지감괄	30,019	30,104	0	220,000	35,439
	시설감괄	26,463	24,595	0	140,000	23,252
	기타작물	15,225	14,106	0	310,000	26,454
영농분야	감괄	30,401	29,746	0	220,000	33,712
	밭작물	15,416	14,807	0	310,000	25,531
	기타	17,156	14,197	0	35,000	13,989

연령별 총자산 규모를 보면, 30대가 1억원 수준으로 가장 적고, 60대가 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노지감귤농가가 3억원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기타작물은 절반수준인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농가의 총자산 평균은 2억 3천만원 수준으로 부채없는 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 평균보다 약 1천만원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부채유무에 따른 자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를 소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산읍, 애월읍, 남원읍인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농업소득 비중 50% 이하에서는 약 4천만원 정도의 격차, 연령이 높은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4천만원 정도로, 부채가 있는 경우가 부채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영농 규모

농가의 영농규모는 평균 약 5,600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 면적'은 평균 약 3,000평이며, '임차 면적'은 평균 약 5,000평 정도로 조사되었다. 임차면적 평균은 임차 농지가 있는 200농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총 영농규모로 볼 때, '북군 동부지역 농가'의 영농규모가 가장 넓은 약 7,300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지역이 가장 적은 약 3,900여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가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군 동부 지역'으로서 약 4,2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시 농가들의 '자가 재배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은 약 2,200평 수준으로서 '남군 동부지역'에 비해 약 1/2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31> 농가 영농 규모 현황

(단위 : 평)

구 분		자가 재배면적 (400농가)	임차 재배면적 (200농가)	총재배면적 (400농가)	자가/총재배면 적 비율
전 체		3,039	5,106	5,592	54.3%
대 지 역 별	제 주 시	2,192	5,405	4,832	45.4%
	서귀포시	2,844	3,903	3,889	73.1%
	북군서부	2,499	3,663	5,096	49.0%
	북군동부	3,143	6,757	7,305	43.0%
	남군서부	3,561	4,798	6,340	56.2%
	남군동부	4,190	7,114	6,843	61.2%
소 지 역 별	제 주 시	2,192	5,405	4,832	45.4%
	서귀포시	2,844	3,903	3,889	73.1%
	한 경 면	2,047	4,006	5,332	38.4%
	한 립 읍	2,514	3,324	4,937	50.9%
	애 월 읍	3,108	3,481	4,957	62.7%
	조 천 읍	3,479	5,041	5,817	59.8%
	구 좌 읍	2,800	7,813	8,827	31.7%
	대 정 읍	3,128	4,567	6,222	50.3%
	안 덕 면	4,033	5,158	6,469	62.3%
	남 원 읍	3,552	3,305	4,245	83.7%
	표 선 면	4,566	7,517	7,617	59.9%
	성 산 읍	4,575	8,581	9,149	50.0%

4. 농가부채의 심층분석

농가부채의 심층분석은 첫째, 지역별, 연령별, 영농형태별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부채가 있는 농가와 전체농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추정해 비교하였다. 둘째, 소득규모, 부채규모, 장기상환능력의 3가지 지표로 소득규모에 따른 2차원 및 3차원 입체 교차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농가의 부채상환가능성과 지급불능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채규모와 장기상환능력의 교차표를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 농가부채를 분석하였다.

가. 지역별 · 연령별 · 영농형태별 부채의 장기상환능력 분석

부채의 장기상환 능력은 총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 또는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 지표인 부채/총자산(간단히 부채비율 이라고도 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미국의 분류기준에 따라 10%이하(안정적 농가), 10~40%이하(양호한 농가), 40~70%이하(위험한 농가), 70~100% 이하(지급불능 위험한 농가), 100% 초과(파산상태 농가)의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¹⁾. 또한 부채비율 40%를 기준으로 40% 이하는 정상 농가, 40% 이상은 부실 농가의 2분류도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전체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채유무에 관계없이 전체농가의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은 17.3%, 부채있는 농가의 그것은 22.1%로 평균적으로 보면 양호한 범주에 속해 표면적으로는 부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역별, 소지역별, 연령별, 영농분야, 시설감귤유무별, 영농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장기상환능력을 추정해 보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군지역의 부채의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은 부채

1) 미국의 농가재무표준위원회(Farm Financial Standards Council, FFSC)는 부채의 장기상환능력과 관련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이하이면 안정적, 10~40%이면 양호, 40~70%이면 위험, 70~100%이면 지급불능 위험, 100%~ 이면 파산상태로 분류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했음. 그렇지만 소농위주인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준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박성재외 2인,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2.pp.9-10에서 인용.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군서부지역은 이미 위험한 수준인 40%를 상회해 44.7%를 보여주고 있고, 여타 군지역도 30%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위험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읍면지역별로 세분하면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부채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경면(49.5%), 구좌읍(47.6%), 한림읍(43.2%), 애월읍(42.4%)은 이미 위험한 농가수준인 40%를 넘어섰고, 여타지역도 표선면(20.5%), 조천읍(25.6%)를 제외한 성산읍(38.8%), 안덕면(35.3%), 대정읍(33.7%), 남원읍(33.6%)지역도 위험한 부채비율 수준인 40%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부채비율이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이미 52.8%를 보이고 있어 위험한 농가수준인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부채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수치는 69%로 증가해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의 부채비율 수준인 70%에 근접할 정도로 농가부채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교적 젊은 40~50대의 부채있는 농가의 부채/자산의 비율(부채비율)도 30%에 근접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감귤작목 중심인 경우를 제외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가의 부채비율도 이미 30%를 상회하고 있어 부채문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표 Ⅲ-32> 참조)

나. 소득규모별 부채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분석

농가부채의 심층분석을 위해 농가소득과 부채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소득계층은 평균과 소득분포를 감안해서 크게 저소득(1천만원 미만), 중저소득(1,000만원~2,000만원 미만), 중상소득(2,000만원~3,000만원미만), 고소득자(3,000만원 이상)의 네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부채규모는 부채없음, 1천만원 이하, 1~3천만원 이하, 3~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인 6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소득규모별 부채규모를 파악하면, 부채가 없는 경우는 전체조사농가 400호 중에 75호인데 중저소득 이하(중저+저)가 49호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규모가 1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중저소득이하 77%, 3천만원이하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채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중상소득 이상(중상+고소득)

의 비중은 60%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부채가 커지면 소득도 늘어나는 정(+)의 상관관을 보여주고 있다(<표 Ⅲ-33> 참조).

<표 Ⅲ-32> 지역별·연령별·영농형태별 부채의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

구 분		자산규모		부채규모		부채장기상환능력 (부채/자산)	
		전체 농가평균	부채있는 농가평균	전체 농가평균	부채있는 농가평균	전체 농가평균	부채있는 농가평균
전체	구 분	24,223	23,397	4,200	5,175	17.3	22.1
지역별	제 주 시	44,397	41,366	3,036	3,602	6.8	8.7
	서귀포시	27,134	26,718	3,108	3,856	11.5	14.4
	북군서부	12,458	11,455	4,129	5,115	33.1	44.7
	북군동부	18,928	18,414	4,806	5,993	25.4	32.5
	남군서부	17,156	16,936	4,725	5,815	27.5	34.3
	남군동부	23,561	23,243	5,688	7,130	24.1	30.7
소지역별	제 주 시	44,397	41,366	3,036	3,602	6.8	8.7
	서귀포시	27,134	26,718	3,108	3,856	11.5	14.4
	한 경 면	9,417	8,148	3,263	4,030	34.7	49.5
	한 립 읍	12,771	12,526	4,345	5,417	34.0	43.2
	애 월 읍	16,308	14,781	5,074	6,265	31.1	42.4
	조 천 읍	24,072	24,077	5,111	6,163	21.2	25.6
	구 좌 읍	13,667	12,209	4,494	5,806	32.9	47.6
	대 정 읍	17,955	17,629	5,514	5,948	30.7	33.7
	안 덕 면	16,284	15,918	3,864	5,620	23.7	35.3
	남 원 읍	20,801	22,661	5,948	7,608	28.6	33.6
	표 선 면	24,895	24,820	4,186	5,086	16.8	20.5
성 산 읍	25,508	22,311	6,855	8,659	26.9	38.8	
농업 소득 비중	30% 이하	18,072	15,751	3,310	4,486	18.3	28.5
	50% 이하	25,234	21,896	2,926	3,997	11.6	18.3
	70% 이하	13,041	12,741	2,710	3,421	20.8	26.9
	71% 이상	25,709	25,218	4,617	5,537	18.0	22.0
연령별	30대이하	10,170	10,522	5,367	7,262	52.8	69.0
	40 대	23,417	21,359	5,262	6,255	22.5	29.3
	50 대	20,896	19,960	5,472	5,694	26.2	28.5
	60 대	30,931	29,010	3,321	4,187	10.7	14.4
	70대이상	24,866	29,763	1,924	3,158	7.7	10.6

구 분		자산규모		부채규모		부채장기상환능력 (부채/자산)	
		전체 농가평균	부채있는 농가평균	전체 농가평균	부채있는 농가평균	전체 농가평균	부채있는 농가평균
시설 감괄 유무	노지감괄	30,019	30,104	3,946	5,058	13.1	16.8
	시설감괄	26,463	24,595	5,341	6,096	20.2	24.8
	기타작물	15,225	14,106	3,984	4,842	26.2	34.3
영농 분야	감괄	30,401	29,746	4,043	5,052	13.3	17.0
	밭작물	15,416	14,807	4,222	5,002	27.4	33.8
	기타	17,156	14,197	6,897	11,050	40.2	77.8

<표 Ⅲ-33> 소득규모별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부채규모	저소득	중저소득	중상소득	고소득	전체
없 음	18	31	10	16	75
1천만원 이하	22	39	7	11	79
1~3천만원 이하	14	47	13	14	88
3~5천만원 이하	6	25	13	21	65
5천만원~1억원 이하	4	20	16	23	63
1억원 초과	3	8	8	11	30
합 계	67	170	67	96	400
	비 율				
없 음	26.9	18.2	14.9	16.7	18.8
1천만원 이하	32.8	22.9	10.4	11.5	19.8
1~3천만원 이하	20.9	27.6	19.4	14.6	22.0
3~5천만원 이하	9.0	14.7	19.4	21.9	16.3
5천만원~1억원 이하	6.0	11.8	23.9	24.0	15.8
1억원 초과	4.5	4.7	11.9	11.5	7.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장기상환능력(부채/자산), 즉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10% 이하인 농가는 전체농가의 44.8%, 양호한 농가(10~40%)는 전체의 24.5%, 위험한 농가(40~70%)는 14.5%,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70~100%) 3.8%, 파산상태 농가(100%초과) 12.5%를 각각 점하고 있다. 이것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농가부채가 문제시 되지 않는 농가(안정적+양호한 농가), 즉 정상적인 농가는 전체농가의 69.3%

이고, 농가부채가 심각한 농가(위험한 농가+지급불능 위험한 농가+파산상태) 즉 부실한 농가는 30.7%로 구분된다.

그런데 부채·자산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위험한 농가 이상의 비율이 전체조사 농가의 30%이상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농가금융위기를 겪었던 1985년 당시의 19%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현재의 농가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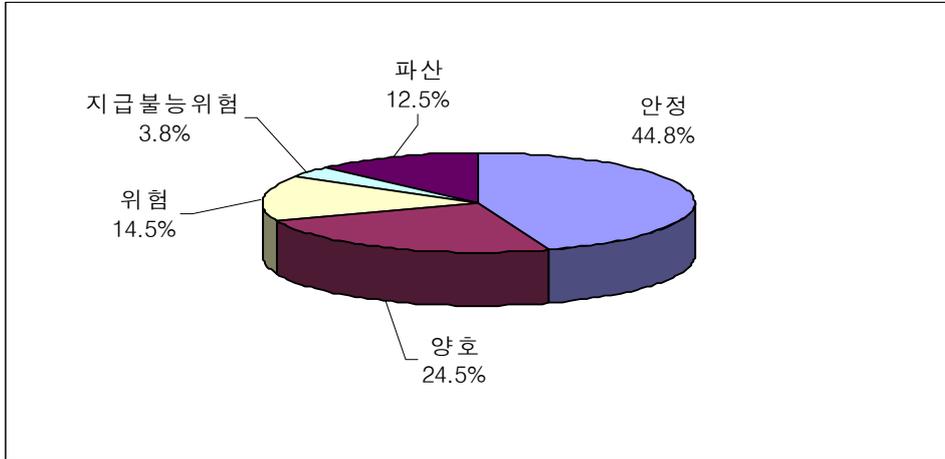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수치는 조사과정에서 농가자산은 줄이고 농가부채는 부풀려서 말하는 농가들의 조사 태도로 인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평균적인 관점에서 부채의 장기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 즉 부채비율이 10% 대(통계청 13%, 본보고서 17%)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채의 문제는 평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농가적인 접근, 최소한 성격이 비슷한 그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근거로 판단된다.

<표 Ⅲ-34> 소득규모별 부채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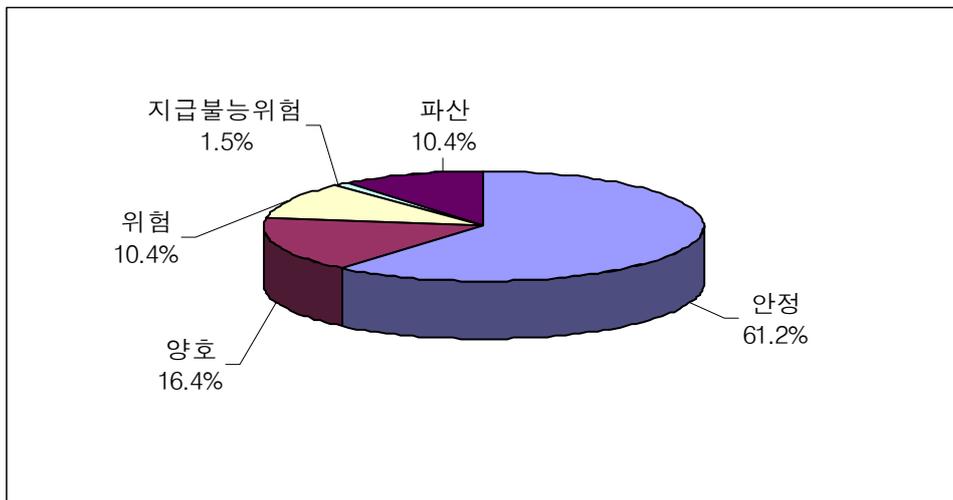
부채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 그룹구분	소득분류				
	저소득	중저소득	중상소득	고소득	전체
안정적 농가(10% 이하)	41	81	22	35	179
양호한 농가(10~40% 이하)	11	40	23	24	98
위험한 농가(40~70% 이하)	7	28	10	13	58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70~100% 이하)	1	4	1	9	15
파산상태 농가(100% 초과)	7	17	11	15	50
합 계	67	170	67	96	400
	비 율				
안정적 농가(10% 이하)	61.2	47.6	32.8	36.5	44.8
양호한 농가(10~40% 이하)	16.4	23.5	34.3	25.0	24.5
위험한 농가(40~70% 이하)	10.4	16.5	14.9	13.5	14.5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70~100% 이하)	1.5	2.4	1.5	9.4	3.8
파산상태 농가(100% 초과)	10.4	10.0	16.4	15.6	1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Ⅲ-10> 전체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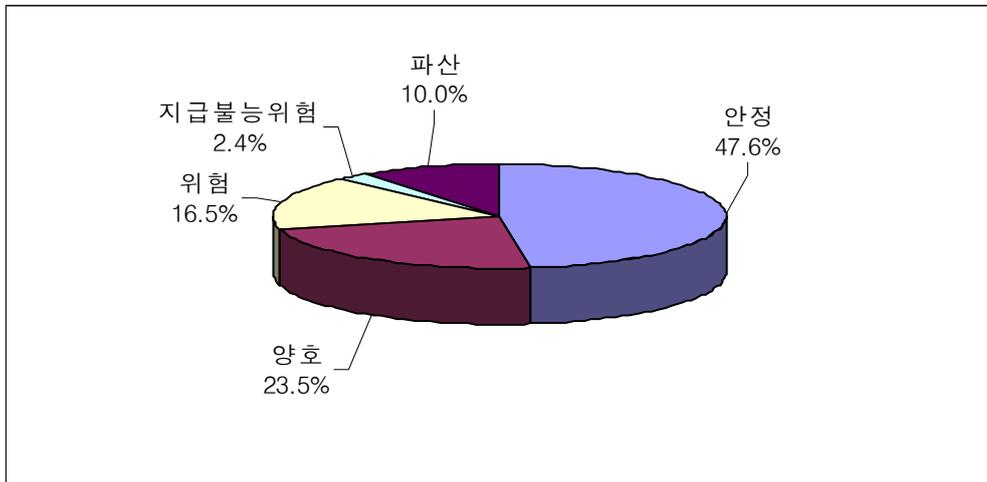
저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인 농가는 전체의 61.1%를 차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호가 16.4%, 위험은 10.4%, 지급불능위험이상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실농가의 비율은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저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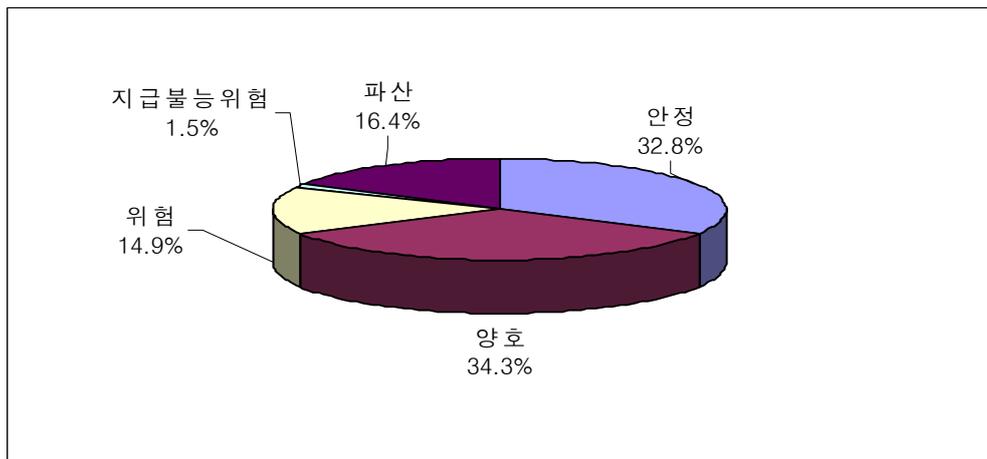
중저소득농가의 부채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 농가의 비율은 47.6%로 저소득농가의 61.1%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양호는 23.5%:16.4%, 위험농가는 16.5%:10.4%로 증가되었다. 즉 부실농가의 비율은 28.9%로 저소득농가의 22.3%보다 증가되었다.

<그림 Ⅲ-12> 중저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중상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 농가의 비율은 32.8%로 저소득농가 61.1%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양호는 32.8%, 지급불능위험이상은 17.9%로 저소득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부실농가의 비율은 32.8%로 저소득농가 22.3%, 중저소득농가 28.9%에 비해 높아, 소득증대에 따라 부실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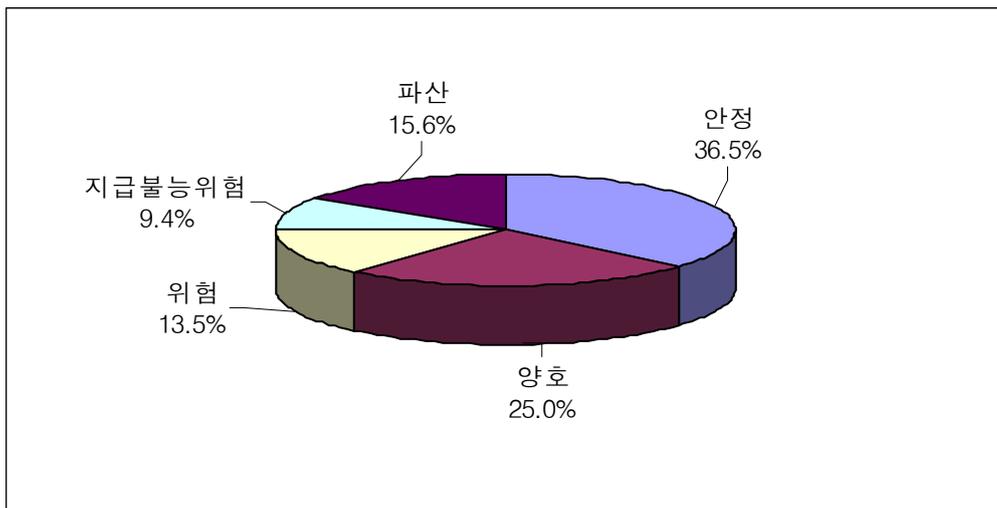
<그림 Ⅲ-13> 중상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고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보면, 안정적인 농가는 전체의 36.5%, 양호는 24.5%, 위험은 13.5%, 지급불능위험 9.4%, 파산 19.5%로 나타났다. 즉 부실농

가의 비율은 38.5%로 중상소득의 32.8%, 중저소득농가 28.9%, 저소득농가 22.3%에 비해 높다. 즉, 농가소득이 증대하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해 자산의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져 경영상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14> 고소득농가의 부채 장기상환능력 정도별 구분



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규모 · 장기상환능력의 입체분석

전체소득 기준으로 부채규모에 따른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그리고 1천만원~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이 40% 이상, 즉 부실한 농가(=위험한 농가+지급불능 위험한 농가+파산 상태 농가)의 비율은 각각 0%, 5.1%, 17.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가 3천만원~5천만원 규모에서의 부실농가의 비율은 55.4%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5천만원~1억원의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64.1%로 증가하였고, 부채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의 부실농가의 비율은 92.5%로 매우 높다. 즉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부채 · 자산의 비율(부채비율)은 커지고, 이에 따라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35> 부채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전체소득)

장기상환 능력(부채비율)	부채규모						전체
	없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이하	75	65	30	7	3	0	180
10~30% 이하	0	10	35	19	14	2	80
30~40% 이하	0	0	8	3	6	0	17
40~70%이하	0	1	10	21	13	12	57
70% 초과	0	3	6	15	28	13	65
합 계	75	79	89	65	64	27	399
비 율							
10% 이하	100.0	82.3	33.7	10.8	4.7	0.0	45.1
10~30% 이하	0.0	12.7	39.3	29.2	21.9	7.4	20.1
30~40% 이하	0.0	0.0	9.0	4.6	9.4	0.0	4.3
40~70% 이하	0.0	1.3	11.2	32.3	20.3	44.4	14.3
70% 초과	0.0	3.8	6.7	23.1	43.8	48.1	1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저소득기준으로 부채규모에 따른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와 1천만원 이하의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이 40% 이상, 즉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각각 0%, 9.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규모가 1천만원을 상회하면서 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해, 부채가 1천만원~3천만원인 경우,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40.0%, 부채가 3천만원~5천만원이하의 경우 42.9%로 증가한다. 그리고 5천만원~1억원이하의 부채비율은 7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부채가 1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표 III-36>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저소득: 1,000만원 미만)

장기상환 능력(부채비율)	부채규모						전체
	없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이하	18	19	4	0	0	0	41
10~30% 이하	0	1	3	3	0	0	7
30~40% 이하	0	0	2	1	1	0	4
40~70%이하	0	1	3	2	1	1	8
70% 초과	0	1	3	1	2	2	9
합 계	18	22	15	7	4	3	69
비 율							
10% 이하	100.0	86.4	26.7	0.0	0.0	0.0	59.4
10~30% 이하	0.0	4.5	20.0	42.9	0.0	0.0	10.1
30~40% 이하	0.0	0.0	13.3	14.3	25.0	0.0	5.8
40~70% 이하	0.0	4.5	20.0	28.6	25.0	33.3	11.6
70% 초과	0.0	4.5	20.0	14.3	50.0	66.7	13.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저소득기준으로 부채규모에 따른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와 1천만원 이하의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이 40% 이상, 즉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각각 0%, 2.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규모가 1천만원~3천만원인 경우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20.8%로 증가했고,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실농가의 비율은 7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천만원~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 각각 그 비율은 72% 수준이며, 1억원초과인 경우는 85.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중저소득: 1,000~2,000만원 미만)

장기상환 능력(부채비율)	부채규모						전체
	없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이하	31	33	14	3	2	0	83
10~30% 이하	0	6	18	2	3	1	30
30~40% 이하	0	0	6	2	1	0	9
40~70%이하	0	0	6	12	5	3	26
70% 초과	0	1	4	6	10	3	24
합 계	31	40	48	25	21	7	172
비 율							
10% 이하	100.0	82.5	29.2	12.0	9.5	0.0	48.3
10~30% 이하	0.0	15.0	37.5	8.0	14.3	14.3	17.4
30~40% 이하	0.0	0.0	12.5	8.0	4.8	0.0	5.2
40~70% 이하	0.0	0.0	12.5	48.0	23.8	42.9	15.1
70% 초과	0.0	2.5	8.3	24.0	47.6	42.9	1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상소득기준으로 부채규모에 따른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3천만원 이하의 부채규모하에서의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이 40% 이상인 부실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그룹은 35.7%, 5천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는 50%로 증가하더니, 1억원 초과인 경우는 모든 농가가 부실한 농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중상소득: 2,000~3,000만원 미만)

장기상환 능력(부채비율)	부채규모						전체
	없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이하	10	5	6	2	1	0	24
10~30% 이하	0	2	6	7	5	0	20
30~40% 이하	0	0	0	0	3	0	3
40~70%이하	0	0	0	4	4	3	11
70% 초과	0	0	0	1	5	5	11
전 체	10	7	12	14	18	8	69
비 율							
10% 이하	100.0	71.4	50.0	14.3	5.6	0.0	34.8
10~30% 이하	0.0	28.6	50.0	50.0	27.8	0.0	29.0
30~40% 이하	0.0	0.0	0.0	0.0	16.7	0.0	4.3
40~70% 이하	0.0	0.0	0.0	28.6	22.2	37.5	15.9
70% 초과	0.0	0.0	0.0	7.1	27.8	62.5	15.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소득기준으로 부채규모에 따른 부채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1천만원 이하의 그룹의 부채비율(장기상환능력)이 40% 이상인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10%,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그룹은 14.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 규모가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부실한 농가의 비율은 50%, 5천만원~1억원 이하는 63.6%, 1억원초과인 경우는 90%로 나타났다.

<표 III-39>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 교차표(고소득: 3,000만원 이상)

장기상환 능력(부채비율)	부채규모						전체
	없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이하	16	8	7	3	0	0	34
10~30% 이하	0	1	5	7	7	1	21
30~40% 이하	0	0	0	0	1	0	1
40~70%이하	0	0	2	3	2	5	12
70% 초과	0	1	0	7	12	4	24
전 체	16	10	14	20	22	10	92
비 율							
10% 이하	100.0	80.0	50.0	15.0	0.0	0.0	37.0
10~30% 이하	0.0	10.0	35.7	35.0	31.8	10.0	22.8
30~40% 이하	0.0	0.0	0.0	0.0	4.5	0.0	1.1
40~70% 이하	0.0	0.0	14.3	15.0	9.1	50.0	13.0
70% 초과	0.0	10.0	0.0	35.0	54.5	40.0	26.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규모에 따른 소득수준별 부실농가(부채비율 40%이상)의 비율에 나타난 특징은 1천만원~3천만원 이하와 5천만원~1억원 이하의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농가의 비율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부실농가의 비율은 85%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인 사항은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실농가의 비율은 50% 수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40> 부채규모에 따른 소득수준별 부실농가(부채비율 40%이상) 비율

소득구분	부채규모						전체
	없음	1천만원 이하	1천만원~3천만원 이하	3천만원~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저소득	0	9.0	40.0	42.9	75.0	100.0	24.6
중저소득	0	2.5	20.8	72.0	71.4	85.8	29.1
중상소득	0	0	0	35.7	50.0	100.0	31.8
고소득	0	10.0	14.3	50.0	63.6	90.0	39.1
평균	0	5.1	17.9	55.4	64.1	92.5	30.6

라. 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규모 · 장기상환능력의 범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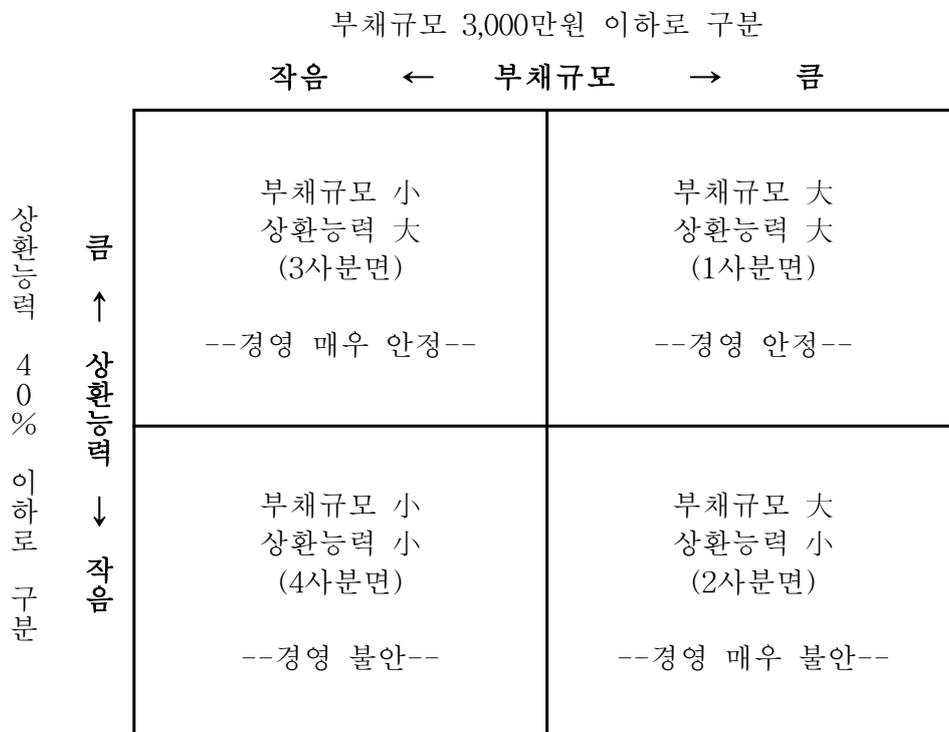
부채규모와 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2개로 각각 구분해, 이것의 4가지 조합을 4가지의 범주로 구분했다. 이러한 4개의 범주를 소득수준과 결부시켜 3차원의 범주 분석을 시도했다. 이때 부채규모의 대소의 기준은 장기상환능력*부채규모의 교차 분석에서 의미있는 기준으로 나타났던 3,000만원과 전국의 평균부채 수준인 2,700만원대를 감안해 3,000만원으로 정했다. 부채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채규모가 큼(大)으로,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작음(小)의 두가지로 구분했다. 부채의 장기상환능력, 즉 부채비율은 위험한 농가 수준인 40%를 기준으로 40%이하의 경우는 상환능력이 큼(大)으로, 40% 이상은 상환능력이 작음(小)의 두가지로 구분했다.

수학의 4사분면의 개념을 활용해 위의 범주를 설명하면, 1사분면은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이 모두 큰 경우로서 부채규모大·상환능력大, 2사분면은 부채규모는 크지만 상환능력은 떨어지는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3사분면은 부채규모는 작지만 상환능력은 큰 경우로서 부채규모小·상환능력大,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이 전부 작은 경우로서 부채규모小·상환능력小로 나타났다.

이를 농가 경영안정여부와 결부시켜 구분해 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특히 3사분면은 매우 안정적인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불안정적이고, 특히 4사분면은 매우 불안정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림 III-15> 소득규모별 부채규모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에 따른 구분 개념도



전체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그룹은 부채규모小·상환능력大의 범주(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55.9%, 부채규모大·상환능력大의 범주 13.5%를 차지해 평균적인 의미에서 전체농가의 약 70%의 농가는 경영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상 매우 불안정한 범주인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그룹은 전체농가의 1/4인 25.6%, 부채규모小·상환능력小 그룹의 비율은 5%로 나타나, 전체농가의 30% 가량이 경영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인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그룹(102명) 중에서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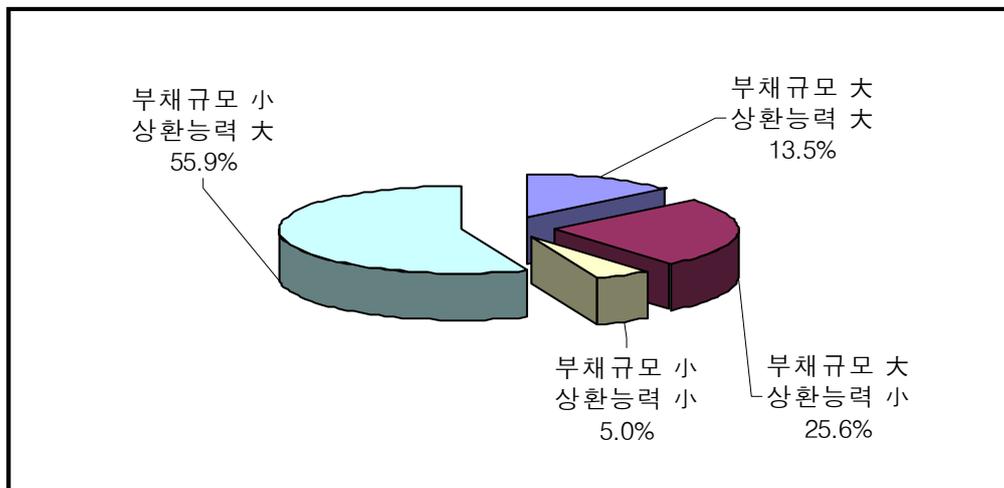
Ⅲ.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분석

창출 능력이 있는 33명(고소득자)을 제외한 중상소득계층 이하인 69명(=저소득자 9명+중저소득자 39명+중상소득자 22명)인 전체조사자 400명의 17.2%는 경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안정한 계층으로 판단된다.

<표 Ⅲ-41> 소득규모별 부채규모 및 장기상환능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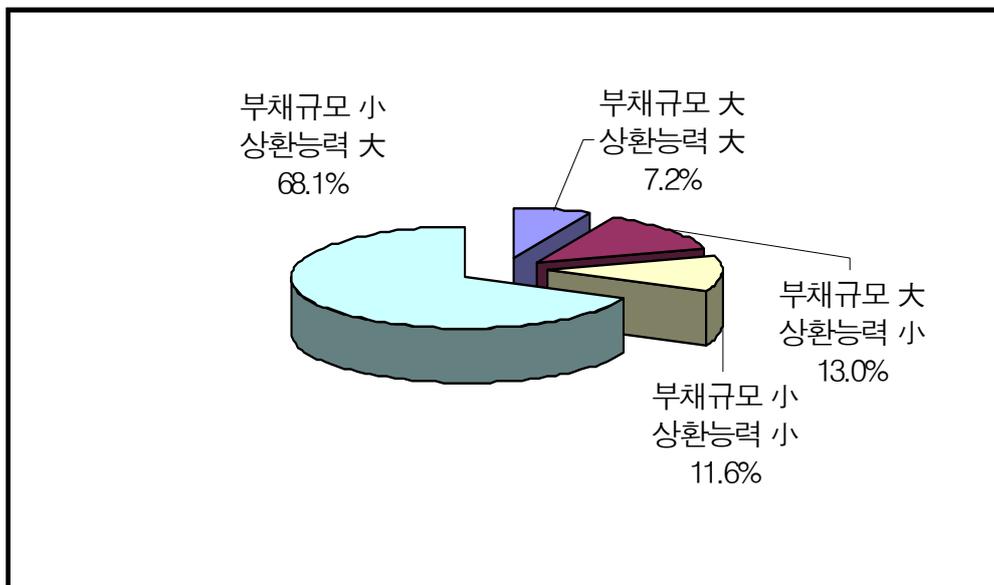
범주 구분	소득 분류				전체
	저소득자	중저소득자	중상소득자	고소득자	
부채규모 소, 상환능력 대	47	108	29	37	223
부채규모 대, 상환능력 대	5	14	18	19	54
부채규모 소, 상환능력 소	8	11	0	3	20
부채규모 대, 상환능력 소	9	39	22	33	102
	비 율				
부채규모 소, 상환능력 대	68.1	62.8	42.0	40.2	55.9
부채규모 대, 상환능력 대	7.2	8.1	26.1	20.7	13.5
부채규모 소, 상환능력 소	11.6	6.4	0.0	3.3	5.0
부채규모 대, 상환능력 소	13.0	22.7	31.9	35.9	25.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Ⅲ-16> 전체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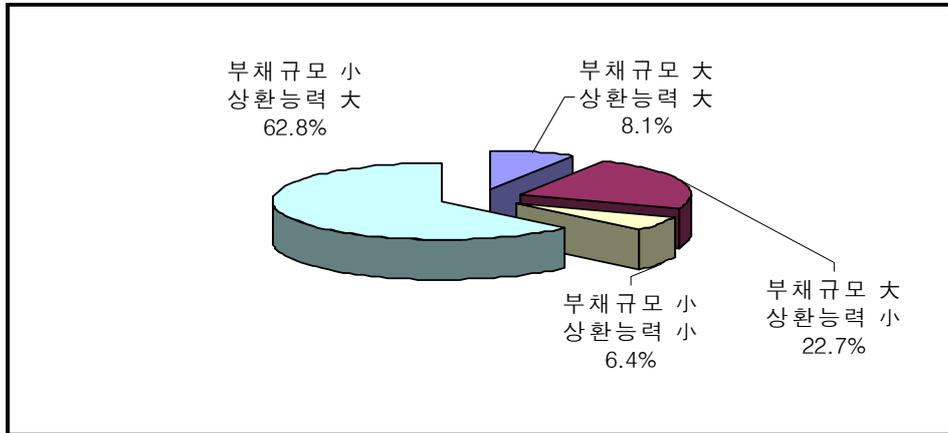
저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그룹인 부채규모 小·상환능력大의 범주(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68.1%로 전체소득 기준의 55.9%에 비해 높고, 부채규모大·상환능력大의 범주는 7.2%로서 전체의 13.5%에 비해 작다. 이 두 그룹의 합인 저소득계층의 75%의 농가는 경영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상 불안정한 범주인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그룹은 13.0%, 부채규모小·상환능력小 그룹은 11.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소득계층의 1/4이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Ⅲ-17> 저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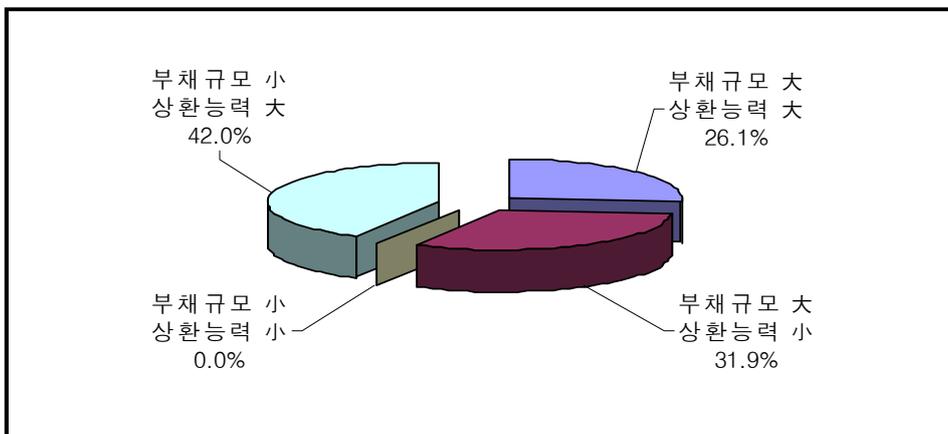
중저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그룹인 부채규모 小·상환능력大의 범주(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62.8%로 전체소득 기준의 55.9%에 비해 높고, 부채규모大·상환능력大의 범주는 8.1%로서 전체의 13.5%에 비해 작다. 이 두 그룹의 합인 중저소득계층의 70%의 농가는 경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상 불안정한 범주인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그룹은 22.7%로 저소득계층의 13%에 비해 거의 두배 수준이고, 부채규모小·상환능력小 그룹은 6.4%로 저소득계층의 11.6%의 거의 절반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중저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에 비해 경영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8> 중저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중상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그룹은 부채규모小·상환능력大의 범주(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42%로 중저소득계층의 62.8%에 비해 작고, 부채규모大·상환능력大의 범주는 26.1%로서, 중저소득계층의 8.1%의 3배 이상, 전체의 13.5%의 2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그룹의 합인 중상소득계층의 66% 농가는 경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상 불안정한 범주인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그룹은 31.9%로 중저소득계층의 22.7%보다 높고, 저소득계층의 13%에 비해서는 2.5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상소득계층은 중저소득계층에 비해 경영안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극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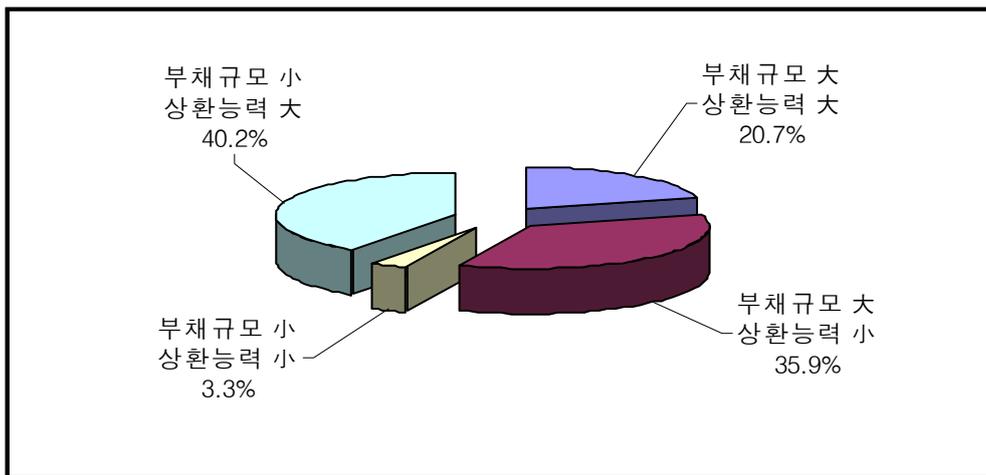
<그림 Ⅲ-19> 중상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고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이를 분류해 보면,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그룹인 부채규모 小·상환능력大의 범주(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40.2%로 중저소득계층의 62.8%에 비해 작고, 부채규모大·상환능력大의 범주는 20.7%로서, 중저소득계층의 8.1%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그룹의 합인 고소득계층의 60.9% 농가는 경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상 가장 불안정한 범주인 부채규모大·상환능력小 그룹은 35.9%로 소득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상소득계층이상(중상소득+고소득)의 그룹은 소득이 낮은 여타 그룹(저소득+중저소득)에 비해 경영의 불안정성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0> 고소득계층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의 분포



IV.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과 외국의 사례분석

1. 정부의 농가부채대책 추진 현황

가. 1980년대 부채대책²⁾

1987년 3월 16일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경감을 위해 사채를 대체할 1조원의 자금과 함께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 등을 담은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부가 정책1호로 채택한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 이후 두 번째 부채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1987년의 부채대책 이후 지금까지 유사한 부채대책이 되풀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농가경제의 어려움과 동시에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짐작케 해 준다.

1980년대 들어 급속히 진행된 농업기계화와 상업화로 농가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채도 같이 늘어났다. 특히 복합영농정책의 실패, 소값 파동, 물가안정을 위한 수매가 인상의 억제, 정책자금 금리인상 등의 부담요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가경제는 크게 침체되고 부채부담이 가중되자 농어촌경제사회가 불안정해졌다(서종혁 외 1988).

<표 IV-1> 1980년대의 농어가경제 부담경감대책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종합대책(1986. 3. 5) : 주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2. 농어가부채경감대책(1987. 3. 16) : 사채대체자금 지원, 상환기간연장, 금리인하 3. 농어촌경제활성화종합대책(1987. 12. 9) :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4. 선진화합경제대책(1988. 10. 14) : 농어촌 의료보험 보험료 국고보조 확대 5. 농어민조세부담경감(1988. 12. 31)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면세조치 확대 6.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4. 28) : 농조조합비 보조확대, 금리인하 7.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1989. 12. 30) :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

2) 박성재 외2인,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정책연구보고 P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12. pp.12-13 인용.

불안해진 농어촌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1986년 종합대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1989년까지 거의 매년 시행하였다.

나. 국민의 정부 부채대책(1998~2000)³⁾

1980년대 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시작으로 농업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에 대응한 농업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융자계획이 발표되었다. 또 198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가자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농산물 가격조건이 유리해지면서 농가의 소득도 많이 개선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는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투자확대와 부채증가가 나타났지만 이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단기적인 유동성부족으로 사료와 기름을 공급하지 못해 추운 겨울에 가축과 농작물이 죽고 농가들이 도산하면서 부채문제는 다시 제기되었다. 특히 1998년은 그동안 지원되었던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농가의 자금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환란으로 얼어붙은 수요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반면에 투입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해졌고 부채대책도 그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1998년의 부채대책은 중장기정책자금의 상환원리금을 2년 연기하고 유동성 압박을 받는 농가에 대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의 인하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하도록 종용하였다. 이 대책으로 정책자금의 상환압박은 일단 덜 수 있게 되었으나 높은 상호금융의 금리와 도산농가에 대한 연대보증 피해의 속출 등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1999년에는 전년도 대책에서 지원하기로 한 특별경영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부실경영체 인수 및 정리자금 지원,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의 외환위기 전으로 환원, 농신보 무입보한도 상향조정, 2차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농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금리부담 완화, 농신보

3) 전게서, pp.13-15 인용.

보증의 확대 등을 통한 신용제한 또는 신용경색을 완화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2000년에는 농업인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호금융부채를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고, 1998년 대책으로 상환을 미루었던 증장기정책자금의 상환 도래분을 다시 1년 연기하였다. 아직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농가경제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또 특별경영자금을 농업경영개선자금으로 개칭하고 1조 8천억원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맞보증으로 얽힌 농촌의 연대보증 피해의 확산을 일단 저지하는 길이 트인 셈이다.

다. 2001년 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⁴⁾

연이은 부채대책의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졌고 부채는 여전히 증가하였다. 농업인단체 등은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부채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는 한 농가경제의 안정이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2000년 말 국회는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저리자금 대체, 연대보증피해자금 공급 등 총 17조 5,500억원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율 인하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표 IV-2>. 이 법은 2001년 1월초에 발효되었다. 이 대책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된 금액은 2002년 말까지 13조 9,254억원으로 보고되었다.

1980년대의 부채대책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영세소농의 부채를 가볍게 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1990년대 말의 부채대책은 부채가 많은 중대농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농가부채대책에서 지원된 자금은 과거와 같은 호당 한도액의 개념을 없었다. 이 중 농업경영 개선자금은 농가심사를 거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자금 수요가 많았다. 농가가 신청한 금액은 3조 2천억원이었으나 심사에 의해 4천억원을 제외하고 2차에 걸쳐 총 2조 8천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이 자금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003년 상환분 5,700억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회는 부채경감법을 개정하여(2003. 5. 27) 3년

4) 전게서, pp.15-17 인용.

거치 7년 상환으로 연기해주었다.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은 1999년말 기준으로 상호금융부채 잔액의 70%에 해당하는 9조 6,300억원을 연리 6.5%로 5년 상환으로 지원하였다.

연대보증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대신 상환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4,962억원) 하였다. 1998~2001년간에 30만건 3조 5천억 원의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했고, 부채대책추진 과정에서 해당대출금이 연대보증일 경우에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한 것이 8조 2천억원이었다. 이 같은 지원확대에 힘입어 농가의 연대보증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은 1999년 39.8%에서 2002년 19.5%로, 정책자금은 25.3%에서 11.6%로 연대보증의 비중이 줄었다.

<표 IV-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의 내용

대 책	대상 및 조건	지원규모
1. 정책자금 상환연기	01~03 상환도래분, 2년 거치 5년 상환	3.9조원
2. 상호금융 대체	농어업용 상호금융 부채, 연리 6.5%로 5년간	10조원
3.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리 6.5%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1조원
4. 연대보증 피해 특별자금 지원	연대보증 피해 농어가,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상환	5,500억원
5.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 자금 지원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	
6. 정상상환 인센티브 제공	정책금융 정상상환 농가 이자의 20% 환급	

자료: 농림부 협동조합과.

<표 IV-3> 2002년 말 현재 대출잔액

	금 액	비 고
중장기 정책자금	14조 6,533억원	2년 미만 2.7조, 2~20년 9.6조, 20년 이상 2.3조
농업경영개선자금	2조 2,882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6.5%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7조 4,679억원	5년 후 일시상환(06년)
연대보증피해자금	4,769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3%
계	24조 8,863억원	

자료: 농림부 협동조합과.

2002년도에도 농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리인하와 인센티브 환급률을 인상하였다.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는 연 4~5%에서 3%로, 연대보증 피해자금은 연 5%에서 3%로 인하하고, 부채대책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1년 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이자액의 20%를 환급해주던 것을 30%로 인상하였다.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농가부채대책이 주요 공약사항이 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안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3년도에도 상환이 도래한 농업경영 개선자금 5,700억원을 제대로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으로 연장하였다(2003. 5. 27).

라. 2004 농가부채 경감대책 내용

1) 중장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3.12.31이전에 지원된 중장기정책자금중 '04. 1.1이후 상환하는 자금
- 금리 및 상환기간 :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기존대책

- 대상자금 : '01~'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
- 상환기간 및 금리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2)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 대상자금 : '01년 대책시 6.5%로 저리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시행일 현재 잔액
- 금리 : 6.5%→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 기존대책

- 대상자금 : '01.1.8일 현재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 잔액
- 상환기간 및 금리 :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내, 6.5%

3)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

- 대상자금 : '00년 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

'03.12.31일 현재 대출잔액

- 금리 및 상환기간 : 5%, 5년 (단,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 상환시에만 5% 적용)

4)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 대상자금 : '00~'01년간 6.5%로 저리 지원한 경영개선자금중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
- 금리 : 6.5% → 3% (상환기간은 변동없음)

※ 기존대책

- 지원액 : 2조 8천억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거치 7년 상환, 6.5%

5)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 대상자금 : 연대보증 농업인의 연대보증피해액에 대한 지원자금
- 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상환 → 3년 거치 17년 (금리 변동없음)

※ 기존대책

- '01년중에 5,000억원 지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 거치 7년 상환, 3%

6)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가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 상환기간 및 금리 : 3년 거치 7년, 3%(2004년 운용규모 : 2천억원)

※ 기존대책

- '03년에 500억원 지원 계획(시범사업), 3년 거치 5년, 4%

7)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 정상상환 : 정책자금을 상환기간 연장없이 상환하는 경우

- 환급액 : 상환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40% 환급
- 조기상환 : 중장기 정책자금(분할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01년, '04년 지원분), 경영개선자금, 경영회생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을 약정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 환급액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 ※ 기존대책
- 정상상환
 - 대상 : '01~'03년 기간중 상환할 정책자금 중 연장없이 상환
 - 환급 : 상환액에 대한 납부한 이자액의 20%
- 조기상환
 - 대상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상호금융대체자금, 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 환급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

마. 제주도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내용

전국의 2004년 부채대책(2004년말 기준)에 의한 지원규모를 보면, 459,295건에 8조 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의 대부분은 정책자금 장기대환 3조 8,209억원, 상호금융저리대체 3조 7,515억원이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1,603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시적인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감소정책에 초점을 둔 정책은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단순히 연기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농가의 2004년 부채대책(2004년말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은 18,894건에 총 4,07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건수별로 전국의 4.1%, 지원규모는 5.1%로 건수별 지원규모가 전국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정책자금 장기대환이 2,1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1,731억원, 연대보증피해연장 103억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43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전국 대비 제주도 점유율은 건수기준 2.4%, 금액기준 2.7%로 여타 지원부문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요인이다.

<표 IV-4> 2004년 부채대책(2004년말 기준)

구 분	제 주 도		전 국		제주도/전국(%)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
정책자금 장기대환	8,472	2,199	214,198	38,209	4.0	5.8
연대보증피해연장	532	103	17,111	2,734	3.1	3.8
상호금융저리대체	9,767	1,731	222,885	37,515	4.4	4.6
농업경영회생자금	123	43	5,101	1,603	2.4	2.7
계	18,894	4,076	459,295	80,061	4.1	5.1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내부자료.

2. 미국의 농가파산법⁵⁾

가. 파산법의 연혁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미국에서 파산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산입법권한은 19세기에는 잠자고 있었으며, 20세기에 와서야 깨어났다. 19세기에 의회는 시장경제의 성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산입법권한을 산발적으로 행사하였다. 연방파산법 제정은 경제불황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임시적인 비상조치로 간주되었다. 즉 평상시에 채무자의 연체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규정한 주법(州法)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한시적인 성격의 연방파산법이 1800~03년, 1841~43년, 1867~78년에 각기 시행되었다.

1) 1898년 연방파산법

1898년 연방파산법(National Bankruptcy Act of 1898)은 최초의 현대적인 파산

5) 이 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미국 농무성(USDA) 경제조사국(ERS)에서 2004년 3월 발간한 “Farmer Bankruptcies and Farm Exits in the United States, 1899-2002”를 번역하여 농협조사월보(2004년9월-11호)에 ‘미국의 농가파산법과 농업’으로 게재한 것을 인용·요약·정리한 것임.

원문 출처 :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aib788/aib788.pdf>, 저자 : Jerome M. Stam(USDA ERS) 및 Bruce L. Dixon(Arkansas 대학교).

법으로 기록되며, 영구적인 연방파산법의 시대를 열었다. 이 법의 일반원칙은 만기가 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는 재산 및 채무 목록을 작성하여 연방법원에 자신의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나타나 있다. 만약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과 채무를 검증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조치할 것을 결정한다면, 채권자에 대하여 재산을 배당하고 법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시행하며 특정한 의무를 제외한 모든 의무에서 채무자를 해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법은 1893년의 극심한 불황을 겪은 후 시행되었는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80년 동안 연방법원의 파산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농민들은 '1898년 파산법'의 제정 이후 파산법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이러한 특별대우는 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등락과 빈번한 자연재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농업거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농가들에 대한 주요 혜택은 비자발적으로 강제된 파산을 막아주는 것이었다. 파산적격이 있는 일반인들이 채권자단에 의한 파산에 비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반면, 농민들은 강제파산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거의 언제나 적용 제외를 받아왔다. 농민을 강제파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에 대하여 1898년 법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성패는 농가가 어찌할 수 없는 원인,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에 따른 것으로 한정 한다'고 그 근거를 명시하였다. 만약 농가가 채권자에 의해 강제파산을 당한다면, 영농자산의 청산으로 발생한 1년 농사의 실패에 관해서도 즉시 청산을 해야 할 것이다. 강제파산의 방지는 농가들이 영농에 계속 종사하도록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법은 농가에게 파산구제의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강제파산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근대적인 농업금융이 출현하기 이전에 농가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지녔다. 오늘날 금융압박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농민들은 저당(lien)이나 선취특권(security interest)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과 동산의 상당부분을 담보로 설정한다. Homestead Act⁶⁾에 의한 압류의 면제나 강제파산의 면제로는 담보나 선취특권의 실행 foreclosure)에 의한 강제청산으로부터 농

6) HOMESTEAD ACT란 가산(家産) 압류 면제법으로 옮길 수 있으며, 택지나 주택과 같은 homestead를 강제 매각이나 압류에서 보호하는 법을 말함-역자註.

가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압박을 받는 대부분의 농가를 강제파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제한적 혜택을 줄 뿐이며,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줄어들었다.

2) 1978년 연방개정파산법

1978년 1898년 파산법을 대체하는 대폭적인 파산법의 개정이 있었다. 의회는 "1978년 개정파산법(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이전 위원회의 활동과 대공황을 비롯한 경제적 경험을 고려하였다. 1978년 개정파산법은 지금은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으로 불리는 파산관련 실체법이다. 연방파산법전은 1979년 10월 1일 이후 제기된 모든 파산사건에 적용된다. 현행 파산법도 농민과 가족농을 강제파산절차로부터 보호한다고 규정한 1898년 파산법을 따르고 있다. 제303조 (a)항(Section 303(a))은 제7장이나 제11장에 따른 강제파산사건의 신청을 규율하는데, 농민과 가족농을 강제파산에서 배제한다.

파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파산법에 의한 보호를 요청하며, 연방파산법에 따라 연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무상태가 연방파산법에서 정한 수준 이하로 악화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방파산법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상환 채무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규정한다. 파산법 논쟁의 핵심은 적어도 두 가지 난제가 있다. 먼저 파산채무자와 채권자 양자에 이득이 되도록 파산법의 적용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불충분한 재산을 경합하는 여러 채권 사이에서 배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채무초과상태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다.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파산은 한편으로 희망을 잃고 궁지에 빠진 채무자에게는 곤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파산논쟁에서 '갱생(fresh start)' 개념을 흔히 언급하는데, 이 개념은 현대 미국파산법에서 절대적인 핵심개념이다.

나. 농업인 채무자가 활용가능한 파산방식

청산방식이나 구조조정방식을 통한 파산의 기능은 (1)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2)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협력을 강제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적 채무조정방식이다. 미국에서 파산법은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닌, 독특하면서 복잡한 성격의 법이라 할 것이다. 연방파산법전에는 파산법원에 접수되는 파산신청사건을 기준으로 5개의 장(Chapter)(제7장, 제9장, 제11장, 제12장, 제13장)에 따른 파산방법이 있다. 파산법전 각 5개의 장은 각각 다른 유형의 채무자 구제사건을 규정한 것이며, 각 장의 규정은 그 장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파산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제9장을 제외하면, 농민들은 다른 4개의 장(Chapter)에 따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4개의 장이란 제 7장(청산방식)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재산관계에 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1장, 제12장, 제13장 등을 말한다.

1) 제7장 파산방식 : 청산(Liquidation)

제7장은 청산, 즉 즉각적인 파산방식이다. 제7장은 청산절차라는 형식으로 즉각적인 파산을 규정한 것이며, 법원이 선임하거나 승인한 파산관재인(trustee, 법정관리인)에 의하여 파산법전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파산재단을 수집하고 배당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채무의 조정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제7장은 개인을 비롯하여 조합(partnership), 철도·보험·은행 등을 제외한 회사(corporation)가 이용할 수 있다. 제7장은 대다수의 모든 파산사건에 적용되는데, 실제 대부분의 제7장 파산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신청하였다.

농업인에게 제7장은 영농을 그만두려고 할 때 또는 면제자산(exempt assets)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만약 농가가 영농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구조조정방식의 파산(제11장, 제12장, 제13장)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 장들은 농

7)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채무자의 재산-역자 註.

가에게 중요자산-특히 농지 - 을 보유한 채 영농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제7장 파산을 신청할 경우, 농가는 면책범위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특히 영농을 재개하기 위하여 면책자산을 보유할 의사가 있는 농가에게 중요하다. 면책규정은 주(州)에 의해 설정되는데 주(州)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2) 제11장 파산방식 : 기업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

제11장에 따른 파산방식은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계획을 제출하는 동안 채무자가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하는 동안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을 계속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변제계획을 제출하여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채무변제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속하고, 채무자는 채무변제계획과 부합하는 한, 사전에 신청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 제11장 파산은 제7장 파산을 신청할 자격을 갖춘 자는 거의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은 개인파산이나 기업파산을 모두 포함하지만, 실제 대부분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제11장에 따른 채무조정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채무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한 주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채권 종류에 따라 몇 개의 조(committee structure)로 나누어지며, 실제 구조조정절차에 참여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경영체가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제11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제11장은 대기업이나 주식회사에 가장 적당할 것이다. 1986년에 제12장이 발효되면서, 제11장은 일반적으로 부채규모나 소득성격 때문에 제12장이나 제13장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농가들만이 선택하는 방식이 되었다.

3) 제13장 파산방식 : 정기소득자 부채조정(Adjustment of the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소비자 구조조정(consumer reorganization)

제13장 방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법정기준을 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개

인이 장래 소득으로써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 기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3장에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에게 상환된 원리금을 배당한다. 제13장에 따른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동안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록 제13장에 따른 파산방식은 소기업의 경영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장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소비자 채무자 (consumer debtor)”가 전형적이다. 대부분의 개인은 보통 제7장이나 제13장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다.

제13장은 다른 장의 파산방식보다 채무자에게 더 넓은 면책범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제13장은 “소비자 구조조정(consumer reorganiz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13장은 임금과 같은 정기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조정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화된 것이다. 따라서 제12장에만 특유한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부동산채무의 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허락된 것은 많지 않다.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제13장에 따른 방식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제13장에 따른 파산구제에 적합하기 위하여 정기소득을 가진 개인은 무담보채무가 290,525달러 이하, 담보채무가 871,550달러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가가 제13장에 따른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몇몇 법원에서 농업경영에 따른 농가소득을 “정기적(regular)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년을 넘어서 채무변제 계획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제12장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나 제13장에 따른 자격을 갖춘 농업인채무자는 대안으로 제13장을 고려할 수 있겠다.

4) 제12장 파산방식 : 정기소득이 있는 가족농의 부채조정(Adjustment of the Debts of a Family Farmer with Regular Annual Income

제12장은 1898년 이래 제정된 파산법 가운데 특별히 가족농을 고려하여 최근에 입법화된 것이다. 제12장은 농업위기대책으로 만든 임시법으로 일정 연수가 지나면 소멸되도록 예정되었다. 제12장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상환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즉 안정적인 연간소득을 가진 가족농의 채무조정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파

산조정방법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조합(partnership), 회사(corporation)가 대상이며, 가족농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담보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거나 무담보채무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제12장에 따른 채무이행계획은 담보채권을 당해 담보물의 가치까지 감액시키고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무담보채권에 관하여는 농가가 파산관재인에게 3~5년 동안 농가의 초과가처분소득(excess disposable income) 으로부터 상환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이행계획을 승인한다면, 이 계획은 농업인 채무자와 채권자를 구속하고, 채무자는 이행계획에서 설정된 대로 3~5년간의 이행계획을 실천하면 면책된다.

“1986년 가족농파산법(Family Farmer Bankruptcy Act 1986)”인 제12장은 1980년대 농업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10월 27일에 제정되었고 1986년 11월 26일 발효되었다. 정기소득이 있는 가족농의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하며 기존 13장의 구조조정절차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12장에 따른 파산방식은 기업파산으로 분류된다. 제12장은 제11장 파산절차를 수정하여 농가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 채권자의 의견(review)을 묻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채권자들은 제12장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는 기존 대출에 대하여 채무액의 삭감이나 상환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고, 이율도 현 시장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도 낮출 수 있다. 담보채무에 대한 감액은 해당 토지나 기타 자산의 시장가치로 제한되었지만, 이는 원래 대출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일 수도 있다.

제12장의 입법취지는 파산에 직면한 가족농에게 채무를 조정하고 농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제13장을 본받아, 제12장은 제도의 남용을 막고 채권자가 공정하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제12장은 “농가의 채무가 제13장의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13장의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농만을 위한 제13장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제12장은 제11장과 제13장에 따라 파산을 선고받은 가족농이 겪었던 여러 가지 장벽을 많이 없앴다. 한편으로 파산에 직면한 대부분의 가족농은 1986년에 제13장에서 규정한 채무한도-무담보채무 100,000달러 이상, 담보채무 350,000달러 이상-를 초과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농은 제13장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제11장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대부분의 농가파산에 관하여 적용되지도 않았다. 제11장은 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통과한 상환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상환계획의 제출과 검토는 파산가족농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기에 제11장은 농민들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제12장의 이점은 특별히 가족농을 위해 잘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제12장은 제11장보다 더 많은 양보를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등 금융압박에 놓인 가족농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장에 따르면, 제12장이 시행되기 전에는 농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거부하고 청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2장의 유용성은 농가가 제12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들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의 조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다른 파산방법과 비교할 때 제12장에는 청산보다는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혹은 영농의 지속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두 가지 특별규정이 있다. 첫 번째는 제13장과 비슷한 '순위절대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의 완화이다. 순위절대의 원칙은 연방파산법전에서 개별 채권자가 상환 받는 순서 및 수령할 금액을 결정한 규정을 말한다.⁸⁾ 제11장에 따르면 각 조(class)의 채권자들은 자기 조의 채권자들이 채권 전액을 수령할 수 없고 후순위 채권자 조가 상환을 받거나 재산을 보유한다면, 구조조정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제12장에 따르면 개별 채권자가 최소한 제7장 청산 방식만큼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은 이행계획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고도 반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채무자에게는 농업자산을 소유하도록 해주는 반면, 담보채권을 담보의 현 시장가격으로 감액시킨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기타 모든 무담보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두 번째는 담보채권자의 적절한 보호(adequate protection)⁹⁾에 관한 정의(定義)를 완화시킨 규정이다. 가족농의 보존을 도와주기 위하여 만든 제12장의 규정은

8) 즉 선순위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후순위의 권리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함-역자 주.

9) 적절한 보호(adequate protection)란 담보물을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안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감소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일정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현금의 지급, 대체담보의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음-역자 주.

청산을 피함으로써 생기는 혜택과 함께, 농업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파산제도를 통합 관리한다. 청산을 지양함으로써 농기업의 구조조정정책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파산법전 하에서 농가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12장이 제정된 것이다. 적절한 보호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적절한 보호조항은 일반적으로 제12장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다. 제12장은 부동산담보물에 대하여 차입을 시장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상환하게 하여 적절한 보호가 주어진다. 농업자산에 대한 차입은 농업자산 가액에 관한 원금과 이자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12장의 규정들은 기존 방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파산법전의 세 가지 장-제11장, 제12장, 제13장-의 규정들 가운데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를 요약하면 <표 IV-5>과 같다.

<표 IV-5> 미국파산법 제11장, 제12장, 제13장의 비교

구분	제11장	제12장	제13장
유형	일반 경영체의 구조조정	농가의 구조조정	개인의 구조조정
자격			
1) 대상	특별한 제한 규정 없음	개인인 가족농, 영농법인체(단, 자산의 80% 이상이 가족소유이며 그 자산의 50%이상을 영농에 사용해야 함)	개인
2) 소득	-	전년도 소득의 50% 이상이 영농소득이어야 함	정기소득이 있어야 함
3) 부채	-	총채무가 150만 달러 미만, 그 중 영농부채가 80%이상일 것	· 담보채무:871,550달러 미만 · 무담보채무: 290,525달러 미만일 것

IV.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과 외국의 사례분석

구분	제11장	제12장	제13장
계획승인 전 적절한 보호	감가상각을 상쇄하는 현금의 지급, 대체담보의 제공	-	-
계획 동의 절차	어떤 종류의 채권자들이 채무전액을 상환받을 수 없고 후순위 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그 종류의 채권자들은 구조조정 계획을 반대할 수 있음(단, 채무이행계획을 해당 종류 채권자들 전체가 받아들일 때는 다른 방식의 배당이 있음)	· 담보채권자 : 1)저당물의 순현재가치에서 상환받거나 저당물을 보유 2)저당물의 양수 3)채무이행계획에 동의 · 무담보채권자 : 1)제7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환 받음 2)허용된 채권액을 상환받음	· 담보채권자 : 1)저당물의 순현재가치에서 상환받거나 저당물을 보유 2)저당물의 양수 3)채무이행계획에 동의 · 무담보채권자 : 1)제7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환받음 2)허용된 채권액을 상환 받음

구분	제11장	제12장	제13장
구조조정 계획			
1)신청자 및 신청기한	채무자가 120일 이내 혹은 법원이 인정한 추가 기간 이내, 그 후에는 채권자도 청산을 포함하여 신청가능	채무자, 채무이행계획 신청은 90일 이내(단, 정당한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장 가능)	채무자, 채무이행계획 신청은 15일 이내(단, 명백한 사유를 입증하면 기간연장 가능)
2)계획승인	계획승인에 대한 기간 제한 없음	이행계획 신청 후 45일 이내	기간 제한 없음(단, 이행계획 신청 후 30일 이내 상환이 시작되어야 함)
3)자동적 중지	이행계획의 승인 시점까지	이행계획기간(소비자 채무에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자동적 중지 가능)	이행계획기간(소비자 채무에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자동적 중지 가능)

■ 농가부채 증가원인 분석 및 경감방안 ■

구분	제11장	제12장	제13장
4)채무이행 기간	제한없음	3년(법원 승인 하 에 5년까지 가능) * 담보채무는 계 획기간 보다 장기 에 걸쳐 상환가능	3년(법원의 승인 하에 5 년까지 가능) * 담보 및 무담보채무는 계획기간보다 장기에 걸 쳐 상환 가능
5)우선순위 조세채권 상환 의 기간제한	이자 포함하여 세금부과 일로부터 6년	제13장과 동일	원칙적으로 3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5년까지 (이자 제외)
6)재산관련 조항	채무이행계획에는 신청 전 재산 및 신청후 재산, 과산재산의 과실이 포함됨	제13장과 동일	이행계획에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까지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 ("가처분소득"포함)
7)담보채권자의 권리 수정 조항	담보가치는 채권자가 정상가격"으로 감액할 수 있음	권리수정은 가능하 고 채무상환은 상 당한 기간 또는 계 약기간으로 할 수 있음	권리수정은 가능하지만, 이행계획기간이나 계약이 적용 (사적인 거주 제외)
8)장래소득에 관 한 조항	사업의 지속을 위한 계 획에서 기본적인 사항임	제13장과 동일	모든 가처분 소득은 무 담보채권자에 대한 이 행계획에 따른 상환에 사용
9)동의기준	채권자에게 최선의 이익 제공, 신의칙에 부합, 순 위절대의 원칙이나 채권 자들의 동의	제13장과 동일	채권자에게 최선의 이익 제공, 신의칙에 부합. (단, 순위절대의 원칙은 완화됨)

IV.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과 외국의 사례분석

구분	제11장	제12장	제13장
비 용			
1)소송비용	500달러	200달러	90달러
2)파산관재인 수수료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을 두지 않으며(단, 채무자가 기만, 부정직, 무능력, 중과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이 정한 수수료는 최초 1,000달러까지 15%, 1,000달러 초과 3,000달러까지 6%, 그 이상은 3%	파산관재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파산관재인 수수료는 법령 및 미국 파산관재인협회에서 정함. 450,000달러까지 10%, 그 이상은 3%	파산관재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파산관재인 수수료는 법령 및 미국 파산관재인협회에서 정함. 최대 10%
3)전문가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에 의해 고용됨. 비용은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전문가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농장관리역 등이 포함됨)	채무자에 의해 고용된다는 점 외에는 제11장과 동일	채무자에 의해 고용된다는 점 외에는 제11장과 동일
진술공개 의무	있음	없음	없음

구분	제11장	제12장	제13장
면책조항	이행계획에 명시한 경우 계획 승인 시점까지 면책 부여(단, 불법 면책조항은 없음)	제13장과 동일	불법이 없는 경우, 이행계획의 완성시점에 조기면책 부여(단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면책일부가 검증됨에 따라 처분소득조건을 수정할 수 있음)
전 환			
1)제12장으로 전환	파산법원의 재량	-	파산법원의 재량
2)제7장 청산으로 전환	전환가능(채권자나 채무자는 이행계획에 산 요구 가능)	전환가능(채무자만이 청산으로 전환가능, 다만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을 경우 전환 가능)	전환가능(채무자만이 청산으로 전환 가능)

다. 농가파산법(제12장)의 파산율을 낮춘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제12장에 따른 파산율은 1987년 이후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된 요인은 복합적인데, 농업부문의 경제상황의 호전뿐만 아니라 법제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1) 농업부문의 경제상황의 호전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의 경제상황은 1982~86년 농업금융위기 이후에 호전되었다. 농가소득은 늘어났고, 농가부채는 줄어들었고, 농지가격은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1998년말 농산물가격이 떨어질 때 연방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늘렸다.

가) 농가소득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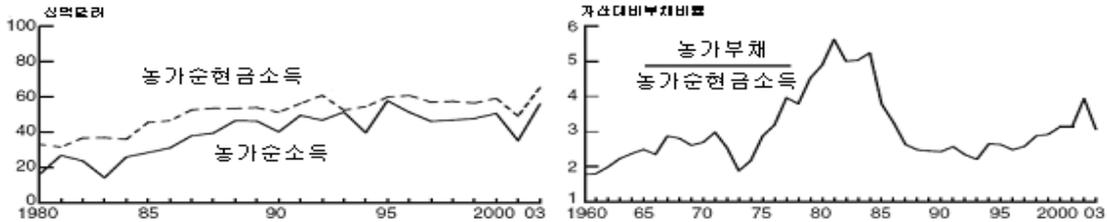
농가순소득(net farm income)과 농가순현금소득(net cash farm income) 모두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금융위기로부터 농업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그림 IV-1). 농가순현금소득은 농가가 자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기타 비용의 충당 등에 쓰이는 자금의 조달원이다. 농가순소득은 채고부분을 비롯한 연간 순생산액을 평가한 것이다. 농가소득의 증가는, 다른 변수가 동등한 경우, 농가파산수요를 줄이는 요인이었다.

나) 농가부채의 감소

전체 농업부문의 부채는 농업금융위기 기간인 1984년에 1,880억 달러로 정점에 달하였다. 그 후 농가가 부채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1989년에 1,310억 달러로 30.6% 감소하였다. 1985~89년 기간, 농업대출금의 원금상환은-시중은행, Farm Credit System(FCS; 농협계통금융조직), Farm Service Agency(FSA; 농장지원국)를 포함하여-총 137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말 1,933억 달러를 기록한 농가부채수준은 최저인 1989년보다 47.6%나 증가한 것이다. 농가부채부담은 농가순현금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농가순현금소득 대비 농가부채비율은 1981년 5.62로 최고였다(그림 IV-2). 소득과 연계된 농가부채의 감소는 1993년 2.21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1990년대엔 2.92보다 올라가지 않았다. 제12장 파

산수요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였다.

〈그림 IV-1〉 농가순소득과 농가순현금소득의 추이 〈그림 IV-2〉 농가순현금소득 대비 농가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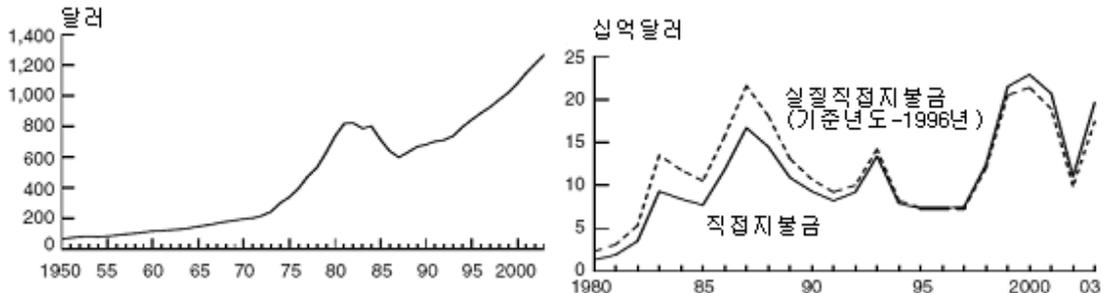


다) 농지가격의 상승

제12장 파산수요를 변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1990년대의 농지가격이다. 제12장은 위축된 농지시장에서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회복이 예상된다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최근 농지가격은 계속 상승국면이다(그림 IV-3). 예를 들면, 농지가격의 급락은 80년대 농업금융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였다. 보통 농지는 농가 총자산의 75~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당시 농가가 제12장을 이용한 것은 3~5년의 워크아웃 계획을 활용한다면 농지가격이 다시 올라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 농가가 더 많은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의 농지가격은 1987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까지 에이커당 2배 남짓 올랐다(그림 IV-3). 90년대 농지가격의 꾸준한 상승은 80년대 중반을 특징짓는 위축된 농지시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지만, 90년대 금융압박을 받은 농가들은 그들의 문제를 농지담보가치의 위축 탓이라고 돌릴 수 없었다. 3~5년간의 워크아웃 기간이 지나면 농지가격이 회복되리라는 기대에서 제12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농지가격은 이미 상승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IV-3〉 에이커(약1,226평)당 평균농지가격 추이 〈그림 IV-4〉 연방정부의 직접지불금 추이



라) 농가소득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 정부의 직접지불제

정부지원은 농가소득을 안정화시켜 파산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농업법부터 다양한 문제들-날씨, 재난, 기타-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시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행해져 왔다. 1980년대 농업금융위기의 결과,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불금은 1987년 167억 달러로 최고에 달하였다(그림 IV-4). 1990~98년 동안 농가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농가재무상태의 건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을 감소시켰다. 연방정부의 지출은 농가소득 적자를 2000년 명목가격을 229억 달러까지 보상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농가가 2000년에 214억 달러를 받은 직접지불금은 최고수준을 보인 1987년 216억 달러에 비하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그림 IV-4).

2) 농가에 도움을 준 법제도의 변화

지난 20년간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법제도들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파산에 직면한 농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중요하였다. 먼저 두 가지는 '농가부채의 조정'과 '채무자의 권리'인데, 1982~86년 농업금융위기 이후 개발된 개념이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의 제고'로써 오래전부터 주목받았지만, 1990년대에야 연방정책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가) 농가채무조정 프로그램(Farm Loan Mediation)

일반적으로 농가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목적은 금융압박을 받은 농가들과 그 채권자들에게 차압(foreclosure)과 파산보다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숙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정자의 존재는 합의를 촉진시키고, 개별주체의 좌절을 막아주고, 신의칙(good faith)에 따르지 않는 개별주체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농가들이 가능한 채무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토론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농가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모든 파산관련 법률에서 농가파산건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미 농무성의 농가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980년대 농업금융위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Farmers Home Administration(FmHA; 농가갱생처)¹⁰의 농가융자는 1985년에

245억 달러로 최고치였고, 모든 농가부채의 13.8%에 달하였다. 농가부채에서 FmH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6.3%로 최고였다. 1988년 1월말에 FmHA로부터 용자받은 약 85,000 농가들은 연체상태였고, 또 다른 33,000 농가들은 파산이나 차압 등 "비활동(inactive)" 상태에 놓였다. 연체 채무자의 차입금규모는 총 114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 중 약 96억 달러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을 넘긴 상태였다.

농가신용위기는 농가채무조정이라는 발을 개량할 수 있는 기름진 흙을 제공해주었다. 1985년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주정부는 농가와 대출기관이 파산이나 차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농가-대출기관 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86년 가을에는 또 다른 10개 주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채무조정이 주단위에서 시작된 반면, FmHA는 주정부가 채무조정에 연방조정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고, 카운티의 FmHA 관리들도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어떠한 채무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FmHA의 결정은 제8순회 항소법원이 Coleman vs. Block 재판에서 내린 역사적인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FmHA는 그 용자에 관한 차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연방차원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방의회는 1987년 농업신용법(Agricultural Credit Act of 1987)상의 주정부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포함한 몇몇 조항의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주정부의 채무조정 개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농가-대출기관 채무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 법의 제502조는 농무성이 인증한 주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에 있어서 주정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농무성의 농장지원국(FSA)이 관리를 맡았다. 또한 이 법은 주정부의 프로그램 비용의 50% 미만 혹은 50만 달러 미만에 한정하여, 750만 달러를 1988~91 회계연도 중 매년 예산을 확충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 예산은 이보다는 작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운영·관리에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농무성 장관이 적격한 주라고 인증한 주에게만 주어졌다.

10)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창설되어 1994년 농장지원국(FSA)의 신설로 폐쇄된 연방정부의 농업금융지원조직으로서, 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대출을 담당했음. 이하 FmHA(농가갱생처)-역자 주.

이 프로그램은 미 농무성이 1988년 8월 이래 32개 주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인증하면서 계속 효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1988년 8월 이래 미 농무성이 인증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총 3,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인데, 현재 29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은 200~400만 달러에 달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총 농가는 5,081호이며, 해결된 건수는 2002 회계연도에 3,782건이다.¹¹⁾ 따라서 2002 회계연도에 모든 조정신청의 74%가 협의를 통해 해결되거나 종결되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농업인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나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농가채무조정관련 법은 3번에 걸쳐 연장되었다.

채무조정과 제12장 농가파산 사이에는 복잡한 연관성이 있다. 채무조정은 농가 파산율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12장의 중요한 영향은 파산법정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채무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많은 채무자들은 제12장보다 채무조정을 선호한다. 금융압박에 놓인 농가는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혹은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법정 밖의 워크아웃은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채무의 타협이나 연장에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면 거의 항상 채무자와 채권자 양자에게 더 선호될 만하다. 물론 이는 종종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 파산신청이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나) 채무자의 권리

1980년대 연방의 입법은 농가갱생처(FmHA)와 농협계통금융조직(FCS)을 상대로 한 농가채무자의 계약상 권리를 발전시켰다. 이는 파산에 들어가기 전에 농가에게 또 다른 선택권을 주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한 변화의 결과, 특히 제12장 파산을 비롯한 농가의 파산수요는 낮아졌다. 먼저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은 FmHA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 법은 FmHA가 용자를 승인 혹은 거부하거나 용자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제한하였으며, 용자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불리한 용자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의제기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용자신청정보에 대한 채무자의 접근을 허용하였다. 또한 FmHA에 의해 농가자산이 인수된 이후 FmHA의 채무자에 의한

11) 이에 비해 2002년에 제12장 파산 신청 건수는 총 482건이었다.

그 농가자산(Homestead)의 회복을 지원하는 '농가자산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채무자들에게는 그들의 농가자산을 최장 5년까지 임대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에 언제라도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1985년 개정농장신용법(Farm Credit Amendment Act of 1985)은 FCS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즉 FCS가 채무자에게 대출이율과 기간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 FCS 대출문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의제기절차를 통하여 FCS 신용심사위원회에 농가감독인(farmer-director)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1985년 법 이전에, FCS 대출약관에서 '법적 권리행사의 보류(forbearance)'는 채무자가 협동조합원이고, 성실히 노력하며, 부채부담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채무불이행 사례에서만 인정되었다. 법적 권리행사의 보류는 농가채무자를 회생시키고 파산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1985년 법은 FCS 전 조직이 법적 권리행사의 보류에 관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FCS 각 지부는 채무조정이 고려되는 상황을 열거하고, 기준을 설정하며 내부 심사를 부여하는 정책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에는 원금과 이자의 연기나 조율, 용자의 갱신이나 연장, 이율의 인하, 원금의 감면, 기타 채무자의 신용회복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987년 농업신용법(Agricultural Credit Act of 1987)은 FmHA와 FCS의 각 채무자에게 주어졌던 기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이 법은 대출행위와 법적 권리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엄격히 하고, 용자정보에 대한 접근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FmHA와 FCS 양자의 강제적인 채무조정정책이 시행되어 차압으로 인해 농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능력을 증가시켜준 것이다. FCS에 대하여는, 각 지부가 차압절차 개시 전 연체채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채무조정정책의 채택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이 법은 FmHA에 대하여는, 이와 비슷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채무조정규정을 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종합적인 용자제공정책의 일부로서 정부가 최저비용으로 농가의 영농을 유지하면서, FmHA의 농가용자의 연체를 감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 새로운 정책은 연체중인 농가채무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재조정과 분할상환, 이자율 경감, 상환연기 등을 고려해 주었다. 만약 이러한 수단들이 채무자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면, FmHA는 채무자가

차압보다 회복효과가 더 클 수 있는 기간만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상각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농가 구제에 충분치 않다면, FmHA는 채무자에게 전 채무를 저당물의 순회복 가치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용자결정은 엄격한 마감시한이 요구되며, 이의제기 권리도 강화되어 부여된다.

만약 채무조정으로 차압을 피할 수 없었다면, FCS와 FmHA 양자는 농가채무자에게 차압으로 획득한 농가의 자산을 스스로 임차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전의 FCS 채무자들에게는 공정시장가격으로 상실된 농장을 환매할 권리가 주어졌고, 획득된 농장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임대되기 전에(다른 사람에 의한 청약에 대하여) 먼저 거부할 권리도 주어졌다. 농장자산이 FmHA의 소유로 된다면, 이전 채무자는 더 큰 권리를 향유했다. 그들은 매입조건으로 상실된 자산을 임차하거나, 그 자산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 농가자산보호권(homestead protection right)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 상실된 자산은 현 시장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이러한 재임차(leaseback)와 환매(buyback)의 권리는 직계가 족까지 확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리스크관리의 제고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것은, 농가들이 역경에 처할 가능성을 줄여주고, 파산이나 차압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20년간 특히 1980년대 초중반 농업금융위기의 결과, 농업부문에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농가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수단을 강구하였다. 농가의 활용이 점증하였던 농작물수확보험과 농작물소득보험은 연방정부의 지원 대책 중 핵심이다. 연방의회는 1980, 90, 94, 96, 98, 99년 그리고 2000년 농작물보험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비록 농업인들은 민간보험사와 그 대리점을 통하여 정부는 농작물보험의 제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5~98년에 연방농작물보험공사(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CIC)의 관리를 맡고 있는, 미 농무성 리스크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이하 RMA)은 보험료 지원이나 관리·운영 지원, 손실의 인수에 매년 평균 12억 달러를 사용하였다. 보험료 지원은 2001~02년에 17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약 16개의 민간보험사들이 14,000개의 농작물 보험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작물보험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농작물수확보험은 실제 수확이 생산자가 보험에 든 수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범위는 민간우박보험(혹은 다른 단일재해보험) 혹은 연방에서 보조하는 다중재해 농작물 수확보험(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이하 MPCCI)과 같을 것이다. MPCCI는 1930년대 대부분의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농작물 손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MPCCI는 보험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이 확대되고 재난작물프로그램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보험료 보조가 늘어나기 시작한 80년대 초반, 제한된 기준에 입각하여 실시되었다. 1994년 개정 농작물보험법(Crop Insurance Reform Act)에 의해 MPCCI는 확대되었다. 2002년 FCIC는 농작물과 축산물 양자를 포괄하는 100개 품목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MPCCI 부담액은 1998년 280억 달러에서, 2002년 37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보험대상면적은 1998년 1억 8,200만 에이커에서 2002년 2억 1,500만 에이커로 늘어났다.

농작물소득보험은 수확이나 가격 부족분 대신에 소득 부족분에 기초하여 농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산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농작물소득보험 상품들은 RMA에 의해 보조를 받고 있으며, RMA가 재보험자이다. MCPI의 자매 상품인 소득보험은 1994년 이후 도입되었고, 1996년 농업법(FAIR Act)의 일부로서 활용되었다. 시범사업(pilot program)은 1996년 농업법(FAIR Act)에서 명문화되었다. 농작물소득보험은 가장 보편적인 보험상품이 되었고, 이제 모든 보험대상면적의 40%에 달한다. 소득보험상품은 생산자가 선택한 소득 보장 아래로 소득에서 수확과 가격이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지급된다.

보험료 보조는 1980년대 초반 이래 농작물보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데, 1999년 농업예산법(Agricultural Appropriation Act)에서 보험료 할인이 기존 보험료 보조에 추가되면서 증가되었다. 2000년 의회는 2000년 농업리스크보호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이하 ARP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1~05년간 보조비율과 정부의 보험료 보조 기금을 늘려 수확보험과 소득보험에서 보조비율을 같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험에 대한 시범사업(pilot program)을 명문화하였다. ARPA가 발효되면서, 보험료 보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평균 17~18억 달러에 달했다.

3. 일본¹²⁾

가. 부채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채 관련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이차보전 등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한다. 이러한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계획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부채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의 이와테현(岩手縣) 사례인데, 이곳에서는 농가의 자가진단과 농협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상태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행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 모델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 인정농업자육성추진자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경영 개선계획을 인정받은 농업인에 대해 농업근대화자금 지원해준다.

○ 농가부담경감지원특별자금 : 농협 등의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준다.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차보상해 주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 지원한다. 농업경영 개선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기간 포함 10년 이내 상환(특별한 경우 15년 이내)

○ 농가부담경감지원특별대책에 의한 자작농유지자금(재건정비자금, 상환원활화자금) : 지원 대상은 상황이 곤란한 농가로 3년 거치 기간 포함 20년이고, 도도부현이 이차보상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보조한다.

○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슈퍼 L 자금) : 부채상환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 25년 이내

○ 2001년에는 경영체육성자금, 농업경영유지안정자금, 농업경영부담경감자금 등을 새로 조성하였다.

12) 박성재 외 2인,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pp. 37-41 요약, 정리, 인용.

○ 축산특별자금 :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방책으로 진작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이른바 '축특자금'이 있다. 1973년 축산경영특별자금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축산부채정리자금을 가리킨다. 처음에는 축산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자금을 공급하는데 그쳤지만 서서히 차입자의 지도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특히 1981년에 시행된 낙농경영부채정리자금은 중앙 및 광역지자체에 낙농경영개선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광역지자체 협의회는 지도팀을 만들어 차입자의 경영 개선계획 작성과 그 실천을 지도하였다. 융자기간을 복수 연도로 하되 매년 경영 개선상황을 검토하여 다음해 소요자금을 융자하는 롤링(Roll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장기저리의 부채정리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농가에 대한 엄격한 지도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롤링 방식은 경영실적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해의 부족자금을 안이하게 다시 빌리게 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부채대책 사례

1) 홋카이도 사례

홋카이도는 낙농경영부채정리자금의 처리를 위해 도(道), 시청, 기초지자체 등 3단계로 추진협의회와 지도팀을 설치하였다. 도(道)의 추진협의회는 부채대책의 기본 방침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도의 지도팀은 시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방침홍보와 지도를 담당하였다.

기초지자체 협의회는 농협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농업개량보급소, 농업공제조합, 농업위원회, 농협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차입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매우 앞선 제도로, 이에 대한 일본농업신문 연재기사 □□ 눈물의 주자-농가부채극복의 궤적□□(1985년)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 이와테현 사례

이와테현에서는 1983년부터□□농가경제강생대책□□을 실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농가 스스로 경영을 자기진단하여, 경영 개선대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농협은 경

영자기진단과 경영 개선계획 책정을 지원하고, 고정부채농가에 대한 개별지원을 실시한다. 현(縣) 연합회는 농가경제갱생자금을 창설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농협지도를 담당한다.

추진체제로는 농협단계·지방단계·현단계로 관계기관을 결집한 추진조직을 설치한다. 또한 기초지자체단위로 □□특별관리지도반□□을 설치하였다. 이는 농협, 농업개량보급소, 가축보건위생소, 현진홍국 등으로 구성되어 농가지도를 담당한다. 또한 현(縣) 단계에 □□특별상담원□□을 최고 28명까지 설치하여,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실시한다.

이처럼 이와테현의 노력은 농협과 지자체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 농가분류에 대한 인식

이러한 부채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를 경영상황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이는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그 전에는 농협이 농가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조합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실시할 수 없는 예가 적지 않았지만, 농가분류의 사고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

<표 IV-6> 경영상황에 따른 농가분류

경영상황	등급
$0 \leq \text{가처분소득} - \text{가계비} - \text{상환이자} - \text{상환원금}$	A
$0 \leq \text{가처분소득} - \text{가계비} - \text{상환이자} < \text{상환원금}$	B
$0 \leq \text{가처분소득} - \text{가계비} < \text{상환이자}$	C
$\text{가처분소득} - \text{가계비} < 0$	D

4. 전라북도 장수군의 농가부채 회생대책

가. 목적

농업을 건실하게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부채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회생시키고자 한다.

나. 시책 추진방향

회생가능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 읍, 면단위에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군단위에는 “전문컨설팅평가단”를 구성하여 신청적격자에 대한 사전 실사로 회생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심의결과 유형에 따라 ‘회생가능’인 경우에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인 경우는 기존 농업시설 인도(처분) 및 군정 시책사업장 취업을 유도한다.

다. 근거규정

- 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4. 3. 2공포)
- 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2004.5.15공포)

라. 연도별 지원자금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대상	200농가	-	41농가	40농가	60농가	60농가
조성규모	10,000	-	2,000 (집행중)	2,000 (본예산)	3,000	3,000

* 2003~2007까지는 1단계 100억원 조성지원 후 2008년부터는 경영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

마. 농업경영심의위원회 운영

1) 군농업경영심의위원회 구성 : 20명

- 당연직 : 9명
 - 위 원 장 : 부군수
 - 부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 위 원 : 농업소득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장수축협장, 장수농협장, 장계농협장
- 위촉직 : 11명(추천을 받아 군수 위촉)
 - 장수읍 2명, 산서면 2명, 변암면 1명, 장계면 2명, 천천면 2명, 계남면 1명, 계북면 1명

2) 읍,면단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0인이내(조례 제7조제4항)

- 위 원 장 : 읍면장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 원 : 군단위 심의위원회의 위촉기준에 적합한자를 위촉
 - 농업관련기관·단체의 장 또는 농업관련 실무책임자
 -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독농가) 또는 대표자
 -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교사, 교수, 농업관련기관·단체 등 농업여건에 적합한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회 참석 가능한 자)
 - 기타 전문생산자 조직(작목반, 회 등)대표 등
- 군 의 원 : “자문위원” 자격으로 위촉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읍면단위 위원회 재정비
 - 재정비 사유 : 금번 의견 청취결과 일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매년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재정비함으로서 사전 청탁 회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 읍면단위 실정에 따라 기존 구성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 또는 일부 위원 교체(위촉) 활용

- 읍면별 기존 심의위원회 구성 : 66명(장수읍 9명, 산서면 8명, 변암면 10명, 장계면 9명, 천천면 10명, 계남면 10명, 계북면 10명)

3) 위원의 자격 및 회의 대리참석

-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지원을 신청할 농업인 또는 법인은 심의위원 추천 또는 구성원 자격이 없음
- 단체 등의 대표를 구성하는 경우 실질적 심의를 위하여 임직원이 대리 참여할 수 있음

4)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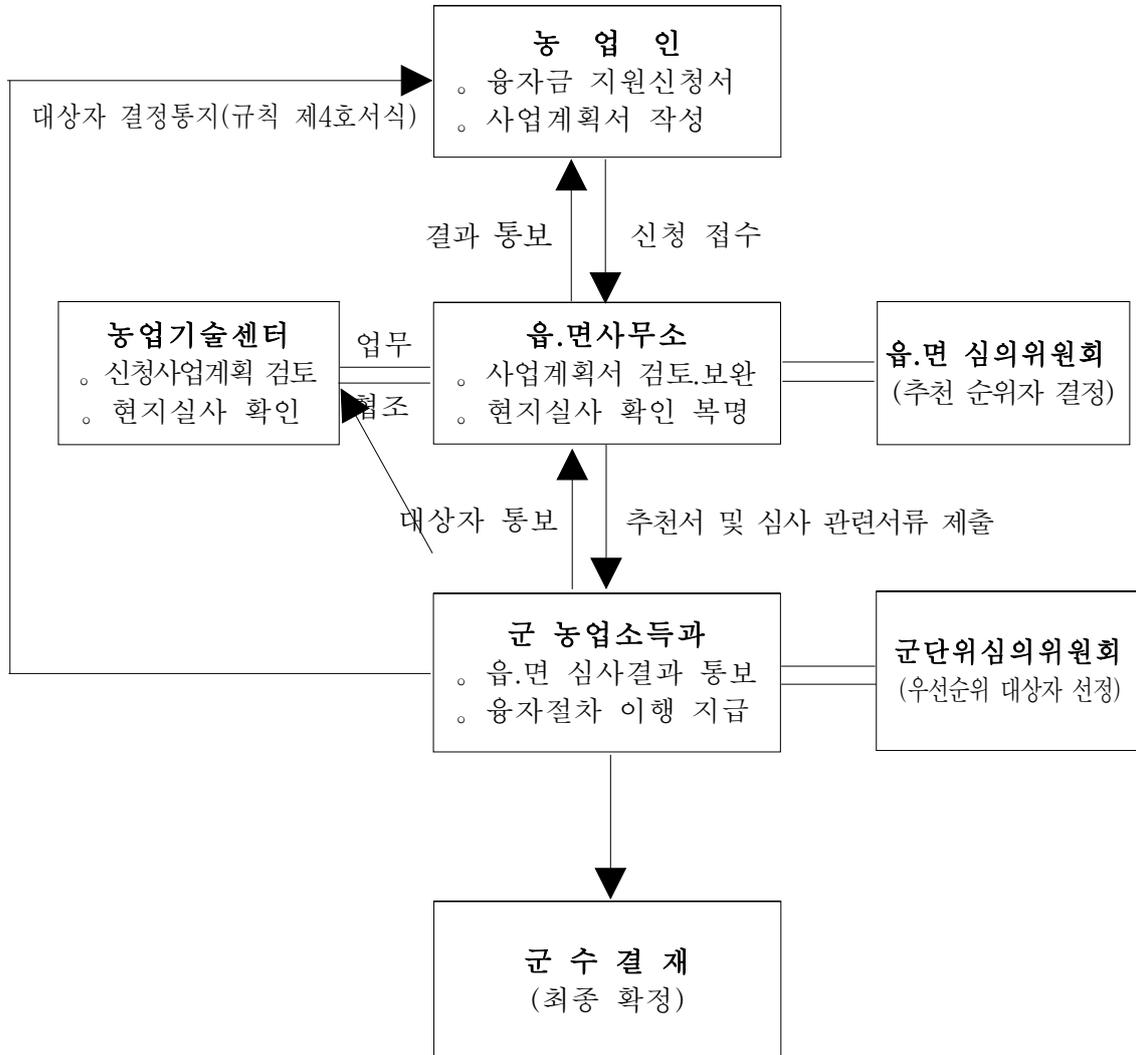
- 농가부채로 경영회생사업기금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사항
- 기금관리, 결산, 운용에 관한사항
-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5) 회의 운영

- 위원장이 심의회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 의사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바. 지원 체계도

지원체계의 순서를 살펴보면, 농업인신청·접수(읍면산업담당)→ 읍면담당자 현지실사→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심사→ 읍면장 추천서 및 관련서류 제출→ 군 농업소득과 검토→ 군단위 심의위원회심사→ 우선순위 대상자선정→ 군수결재(최종확정)→ 대상자 결정 통보(농업기술센터, 읍면 통보)→ 지원절차(융자금지급)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사. 전문컨설팅평가 실사단 구성·운영

1) 목적

2004년도 읍, 면단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읍면담당직원 및 기술센터 전담 지도사 실사 과정을 거친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한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읍면단위 심의결과 추천자에 대하여 군단위 전문컨설팅평가단이 전수 농가 방문을 통한 현지 실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엄선하기 위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2) 장수군전문컨설평가단 구성 : 6명 이내

○ 당연직 : 3명

- 단장 : 농업소득과장
- 단원 : 행정 1명, 기술센터 1명

○ 위촉직 : 3명 이내(군수 위촉)

- 농업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교사, 교수, 농업관련기관·단체 등 농업 여건에 적합한 지식을 가지고 현지 실사가 가능한 자 등)

3) 컨설평가단 활동사항

- 농가부채로 경영회생사업기금 지원을 신청한 대상농가에 대하여 읍, 면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 추천된 자를 전수 확인평가 실시
- 평가는 객관성과 주관적인 판단을 병행하되 부채비율(자산/부채)에 따른 회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평가 방식으로 작성
- 전문평가표(안)을 작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되 평가결과를 군단위심의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농가부채의 심각성과 농민의 향후 전망 및 인식

가. 농가부채의 규모의 심각성과 장기상환능력의 열위

제주도의 농가호당 부채(2004년 경상가격기준)는 4,523만원으로 전국평균의 2,689만원에 비해 68.2%가 많고, 가장 적은 지역인 충청남도 2,157만원의 2.1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당 농가부채에 농가호수를 곱해 지역별 부채총액을 추정했는데, 제주도의 총농가부채는 1조 6,449억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주요 비교대상인 광역자치단체의 부채총액 합인 5.1%로 농가수의 점유비 3.1%보다 높아, 1호당 농가부채가 타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지역별 총농가부채를 지역내총생산(GRDP)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지역내총생산액 7조 495억원의 23.3%로, 여타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라남도의 14.9%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이상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의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생산은 9,382억원으로 제주도총부채의 1.75배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 40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농가 평균 부채액은 4,200만원이며, 최대 3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도 3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없는 농가인 75농가(전체 조사농가의 18.8%)를 제외한 부채 있는 농가의 평균부채액은 5,175만원으로 전체부채평균에 비해 약 1천만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채의 장기상환능력 분석에 따르면, 장기상환능력(부채/자산), 즉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10% 이하인 농가는 전체농가의 44.8%, 양호한 농가(10~40%)는 전체의 24.5%, 위험한 농가(40~70%)는 14.5%,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70~100%) 3.8%, 파산상태 농가(100%초과) 12.5%를 각각 점하고 있다. 이것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농가부채가 문제시 되지 않는 농가(안정적+양

호한 농가), 즉 정상적인 농가는 전체농가의 69.3%이고, 농가부채가 심각한 농가(위험한 농가+지급불능 위험한 농가+파산상태) 즉 부실한 농가는 30.7%로 구분된다.

그런데 부채·자산비율이 40%를 초과하는 위험한 농가 이상의 비율이 전체조사농가의 30%이상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농가금융위기를 겪었던 1985년 당시의 19%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현재의 농가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읍·면지역별로 세분하면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부채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경면(49.5%), 구좌읍(47.6%), 한림읍(43.2%), 애월읍(42.4%)은 이미 위험한 농가수준인 40%를 넘어섰고, 여타지역도 표선면(20.5%), 조천읍(25.6%)를 제외한 성산읍(38.8%), 안덕면(35.3%), 대정읍(33.7%), 남원읍(33.6%)지역도 위험한 부채비율 수준인 40%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부채비율이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이미 52.8%를 보이고 있어 위험한 농가수준인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부채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수치는 69%로 증가해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의 부채비율 수준인 70%에 근접할 정도로 농가부채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교적 젊은 40~50대의 부채있는 농가의 부채/자산의 비율(부채비율)도 30%에 근접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감귤작목 중심인 경우를 제외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가의 부채비율도 이미 30%를 상회하고 있어 부채문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조사과정에서 농가자산은 줄이고 농가부채는 부풀려서 말하는 농가들의 조사 태도로 인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나. 농가부채에 대한 향후전망과 농민의 의식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가부채경감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농가부채경감 대책'이 어느 정도 '농가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제주도 농가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부채 상환 가능성에 대해 농가들은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되는 농가소득으로 부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부채 상환곤란 이유에 대해 농가들은 ‘부채상환이 어려운 이유’를 주로 ‘충분치 않은 소득’과 ‘차입금 증가’ 및 ‘과다한 가계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를 대상으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농가부채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부채 농가의 104명, 32%가 ‘자산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부채농가의 약 1/3이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 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농가부채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자산을 처분해야 부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왜 자산을 처분해서 농가부채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부채 증감 전망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절반 이상인 59.8%가 ‘계속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가부채 관련 정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농가는 전체의 12.9%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보는 농가부채 해결 주요 정책으로는 ‘정책자금 확대’, ‘분할상환’, ‘상환연장’ 등 기존의 이자율감면과 원금상환연기 정책을 원하고 있고, ‘차등지원’이나 ‘채무조정’등은 순위상으로 매우 쳐져 있다.

2. 부채대책의 기본방향

첫째, 부채대책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짊어지고 있는 농가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이 1987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발

표된 이래 10번에 걸쳐 부채대책이 추진되었고, 이에 소요된 예산만도 수십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차보상 등 매년 5~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자율 감면과 원금 상환연기를 골자로 하는 부채대책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잠시 잠복했다가 상환연기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채의 전체적인 규모가 점점 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둘째, 부채대책은 원금상환이 촉진되면서 부채규모의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고부채-고자산의 농가재무구조를 저부채-저자산으로 만들어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의 장기상환능력 또는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부채대책은 지금까지의 막연히 부채문제가 있던 농가든 그렇지 않은 농가든 부채만 있으면 정책대상과 수혜(?) 대상이 되는 평균적·대중정책으로 곤란하고, 부채있는 농가의 정밀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개별농가, 최소한 동일 그룹에 대한 맞춤형 부채대책이 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한 철저한 경영진단을 거쳐 회생가능한 농가인가 아니면 회생불가능한 농가인가를 판단하고 회생여부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부채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가조사결과 부채규모는 전국평균에 비해서 절대적인 규모도 크지만, 개별농가별·지역별·연령별·시설영농유무형태별·전겸업형태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부채대책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농협, 농민의 서로의 유기적인 역할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 또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부채대책을 수립하였다. 부채문제는 농어촌 현장에서 차입자와 대출자간의 관계에서 부터 시작되지만 이들의 의견이나 자료제시 등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한 부채대책임에도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이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방관자이고 중앙정부만이 나서는 모양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 부채대책은 현장 중심적이기보다는 중앙의 지침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책으로 전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못

해 부채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던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의 검토

가. 개인회생제도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개인회생제도는 신탁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한다. 또 전체채무도 3억원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해준다.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이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채무범위내에서 총채무액의 3분의 1로 제한되는 반면,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워크아웃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소멸되지만 회생제도는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청절차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5년 동안 빚을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

다.

반면 빚이 수억원에 달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변제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이후 금융기관 대출 등 경제활동에 더 큰 제약이 주어진다.

나. 개인워크아웃 [個人, individual workout]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역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무국이 서류를 검토한 뒤 개인별로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자신이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빚도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3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가운데서도 대출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한다. 또 정기적이고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도나 휴업 등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이다.

협약 가입 금융회사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외에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 기존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의 비교

<표 V-1> 신용불량자를 위한 다른 구제대책과의 비교

구 분	금융감독기구재형			법원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 3. 중	2004. 5. 20 부터 한시적	2002. 10. 1	2004. 9. 23	1962. 1.20
대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채무범위	소액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 3. 10 현재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채무조정 수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원금감면은 ×	변제기간 8년 이내 원금감면은 ×	변제기간 8년 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청산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조정	사적조정	사적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 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신용불량 해제여부	--	대부승인결정시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 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범위가 넓고, 사채 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 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 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 이자감면이 주요 대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 정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파산의 경우“파산선고” 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히 남는 제도인 반면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회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제도나 5000만원 미만인 배드뱅크 보다 채무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 새마을금고 대여금 등에 진 빚은 경감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이 판결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한다.

원리금의 경감액수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체 빚의 3분의 1인 1억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경감액의 뚜렷한 한도가 없다. 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이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면책시까지 변제금액이 파산 배당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을 수정하기 불가능한 경우 남은 빚은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만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는 공무원·의사·변리사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하고 신청 후 14일내 재원조달과 채무변제(8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산 강제집행, 가압류, 상환독촉 등 일련의 채권추심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한 뒤 1개월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통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재산목록과 채무현황을 법원에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재산과 채무입증서류도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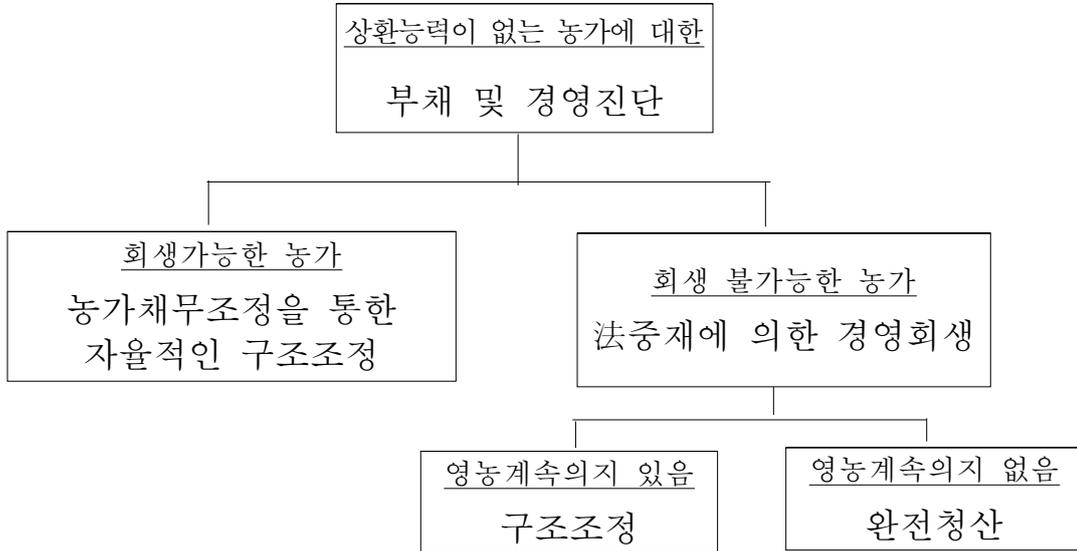
채무재조정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개인워크아웃보다 길고, 초기 신청비용도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는 개인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는 점도 부담스럽다.

4. 농업경영체 경영회생 프로그램

가. 경영회생 프로그램의 체계도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 프로그램의 상황별 적용기준(순서)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농가에 대한 정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다양한 평가지표의 기준에 따라 회생가능한 농가인지 회생불가능한 농가인지를 분리한다. 2단계는 만약 경영진단을 실시한 농가가 경영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1단계)는 농가와 대출기관간의 채무조정프로그램(loan mediation program)을 통해 자산매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이자와 원금의 탕감과 아울러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매각에 대한 농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이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매각 방식은 2006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은행을 통한 환매조건부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이다.

그리고 경영진단을 실시한 농가가 경영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2단계)는 법률 중재에 의한 회생제도를 실시한다. 만약 그 농가가 영농에 대한 계속 의지가 있으면(2-2-1단계) 구조조정 형태의 경영회생제도를 적용한다. 그렇지 않고, 그 농가가 영농에 대한 계속 의지가 없으면(2-2-2단계) 최종 단계인 완전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청산절차를 밟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직을 위한 신규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차원의 소득보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V-1> 경영희생 프로그램의 체계도

나. 경영희생 프로그램 관련 제도의 개선·도입방향

부실한 농업경영체가 있는 경우 현재의 제도하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희생을 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개인워크아웃제의 한계를 보면, 일선 단위농협이 개인워크아웃협약에 들어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상이 아니며, 부채금액이 3억원은 농가의 경영규모에 비해 부족해서 부채대책의 주요대상이 될 농가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기업의 워크아웃방식의 농업경영체에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워크아웃제의 대상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농무성의 인증하에 32개주에서 도입되어 활용되는 농가와 대출기관간의 대출조정프로그램(USDA Certified State Agricultural Mediation Programs) 형태의 농가형 개인워크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파산법 적용에 앞서 농림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32개주의 민간차원의 조정위원회가 농가채무자와 금융채권자간의 농가부채 문제를 법정밖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농가채무조정 프

로그래(Farm Loan Mediation)의 목적은 금융압박을 받은 농가들과 그 채권자들에게 차압(foreclosure)과 파산보다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숙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정자의 존재는 합의를 촉진시키고, 개별주체의 좌절을 막아주고, 신의칙에 따르지 않는 개별주체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농가들이 가능한 채무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토론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농가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모든 파산관련 법률에서 농가파산건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연방의회는 1987년 농업신용법(Agricultural Credit Act of 1987)상의 주정부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포함한 몇몇 조항의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주정부의 채무조정 개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농가-대출기관 채무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 법의 제502조는 농무성이 인증한 주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에 있어서 주정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농무성의 농장지원국(FSA)이 관리를 맡았다. 또한 이 법은 주정부의 프로그램 비용의 50% 미만 혹은 50만 달러 미만에 한정하여, 750만 달러를 1988~91 회계연도 중 매년 예산을 확충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 예산은 이보다는 작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운영·관리에만 사용될 수 있었으며 농무성 장관이 적격한 주라고 인증한 주에게만 주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미 농무성이 1988년 8월 이래 32개 주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인증하면서 계속 효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1988년 8월 이래 미 농무성이 인증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총 3,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인데, 현재 29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은 200~400만 달러에 달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총 농가는 5,081호이며, 해결된 건수는 2002 회계연도에 3,782건이다.¹³⁾ 따라서 2002 회계연도에 모든 조정신청의 74%가 협의를 통해 해결되거나 종결되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농업인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나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농가채무조정관련 법은 3번에 걸쳐 연장되었다.

채무조정과 제12장 농가파산 사이에는 복잡한 연관성이 있다. 채무조정은 농가 파산율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12장의 중요한 영향은 파산법정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채무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많은

13) 이에 비해 2002년에 제12장 파산 신청 건수는 총 482건이었다.

채무자들은 제12장보다 채무조정을 선호한다. 금융압박에 놓인 농가는 파산을 신청할 것인가 혹은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법정 밖의 워크아웃은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채무의 타협이나 연장에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면 거의 항상 채무자와 채권자 양자에게 더 선호될 만하다.

둘째, 개인회생제도는 정규적인 소득대상자 또는 농가인 경우는 자작농이 아니라 임대농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주요한 자산과 생산수단으로 소유하면서 영농자금 차입시 주요한 담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작농 위주의 농업경영방식인 우리나라의 농가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면, 대부분 생산수단인 '토지나 농기계, 하우스 시설 등 구조물 등은 채권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회생의 신청에서 개시까지는 일시적으로 '임의경매'가 제한되나 개인회생프로그램의 개시에 맞추어 채권자인 농협 등이 '임의경매'를 실시하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권리가 없다. 즉 이럴 경우 생산수단인 토지나 농기계 또는 구조물은 경매처분의 실시로 소득획득의 경제적 수단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개인회생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미국의 파산법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법률인 일명 통합파산법으로 불리우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어떠한 측면이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미국의 연방 파산법 중에서 농업관련 파산절차와 관련된 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apter 7, 11, 12, 13이다. 먼저 △7장(Chapter 7) : 완전한 청산(Liquidation)을 규정하고 있고, △11장(Chapter 11) : 구조조정(Reorganization) : 특히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 △12장(Chapter 12) : 정기소득이 있는 가족농의 부채조정(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with Regular Annual income), △13장(Chapter 13) : 정기소득자 부채 조정(Adjustment of the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소액의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파산법체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인다고 법률의 제정 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두 나라의 법률체계의 구조적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경영회생과 관련된 법률은 기존의 회사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구조조정(미국파산법의 11장에 해당), 개인회생제도(미국파산법의 13장에 해당), 마지막 단계인 청산(미국파산법의 7장에 해당)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 없는 조항은 미국의 파산법 12장(Chapter 12)인 정기소득이 있는 가족농의 부채조정(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with Regular Annual income)의 항목이 없다. 12장은 1980년대의 농업금융위기에 가족농의 원활한 구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생산수단인 토지나 구조물의 임의경매 처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되 채무자인 ‘농가’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담보의 가치를 부채액만큼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는 담보부 부채를 부담보부 부채로 전환해주는 대신에 담보의 가치를 그 부채액만큼 감하므로써 생산수단은 소유하게 하되 그것을 재산의 형태로 향후 팔아서 수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만약 채무조정으로 차압을 피할 수가 없다면 농가채무자에게 차압으로 획득한 농가의 자산을 재임차(leaseback)하거나 상실된 자신은 현 시장가치로 환매(buyback)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인 토지를 유지하면서 가족농의 농가의 금융위기를 넘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합파산법에도 농업경영체의 특수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형태의 법률조항이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미국의 연방파산법 12조의 체계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개인회생제도 중에 농업경영체 대해서는 ‘토지나 농기계, 하우스 시설 등 구조물 등은 채권자에게 전부 혹은 일

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경매를 금지하거나 만약 처분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농가에게 장기임대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환매권을 주는 형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정책인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는 자연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2/3 이상, 복합영농일 경우 판매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농업용부채 5천만원 이상 농업인(단,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 지원)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신청 농업인이 '회생가능'한 경우에는 경영회생자금 지원하고, '회생불능'일 경우에는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가부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적절한 전업농가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회생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지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 농가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부 탕감을 포함한 강력한 지원대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부채증가,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농가 부채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상당수 농가의 융자원금 상환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보면, ①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 상환등 활용, ② 농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 및 거래가격 동향 등을 기준으로 농지은행이 평가한 가격을 적용, ③ 농지은행은 매입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임대(5년간 임대하고, 필요시 3년간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④ 임대기간 중에 해당농업인이 처분한 농지를 되사고 싶을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환매권 보장)하고, ④ 대상으로 선정된 농민은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에는 부채에 대해 정상·연체이자를 지불했으나, 농지은행에 농지 매각후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 납부함으로써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의 12조와 같은 법적인 경영회생제도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에 통합파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내에 농업경영체 관련 경영회생법률조문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가부채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파산율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1980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율이 1987년 이후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원인을 앞의 미국파산법과 관련된 장에서 크게 첫째, 농업부문의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농가소득의 증가, 농가부채의 감소, 농지가격의 상승, 직접지불제 도입 및 확대 등 둘째, 농가에 도움을 준 법제도의 변화로는 농가채무조정 프로그램, 파산법 12조의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보호제도의하의 경영회생, 농업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시사점은 역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의 필요성과 논농업 뿐만 아니라 밭농업 경영이 양직불제를 포함한 직불제의 확충, 그리고 자연환경에 처해있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농작물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농가의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것은 과수 조수입이 -0.913으로 가장 높고, 농업소득과 농업소득율이 -0.8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은 농업조수입이 0.895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소득 0.866, 농업소득율 0.773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율이 0.96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조수입과 과수조수입이 0.92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문은 첫째, 과수조수입증대, 다음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율 제고, 그리고 농업경영비의 절감 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도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감귤산업의 회생, 그리고 채소류 조수입의 적정가격 수취, 신품종 화훼와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도 병행되어 농업소득의 증대야 말로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의 제1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

이 요구된다. 즉, 1·3차 산업의 연계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로 겸업소득의 향상과 국제자유도시의 진전에 따른 고용기회의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 사업이외소득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 김두년·이연두, 「미국의 농가 파산법」, CEO FOCUS(제49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림부,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5.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내부자료.
- 농협조사월보, 「미국의 농가파산법과 농업」, 2004년 9월-11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 박성재외 2인,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2.
- 박성재, “농가부채 문제와 지역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3.
- 박성재·황의식, 「농가부채무제 진단과 증장기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월 정책토론회 자료, 2003.7.
- 신기엽, 「미국의 농업불황과 긴급 농가지원대책」, CEO FOCUS(제38호), 농협중앙회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05 농가부채 회생대책 시행지침”, 2005.
- 제주도 A_지역농협 내부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각년도.
- 통계청 homepage.
- 한국금융연구원, 「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2004. 9
- Jerome M. Stam, Bruce L. Dixon, “Farmer Bankruptcies and Farm Exits in the United States, 1899-2002”, USDA, 2004.3
- USDA Farm Service Agency, “Agricultural Mediation Program”, 2002. 4.

부

록

〈부록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록 2〉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록 3〉 장수군 농업경영 희생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부록 4〉 설문지

〈부록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3.04.11 농림부2령 제1437호

일부개정 2003.05.27 법률 제6884호

일부개정 2004.03.05 법률 제7180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3. "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4.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차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5.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6. "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 ① 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4.3.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 한다. <신설 2002.12.26, 개정 2004.3.5>

제 4 조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4.3.5>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4.3.5>
- ④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 4조의2 조 (상호금융자금에대한추가지원)

- ①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4.3.5]

제 5 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 ①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 ③ <삭제 2004.3.5>

제 5조의2 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① 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본조신설 2004.3.5]

제 6 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 ① 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

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3.5>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제 7 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 ③ 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당해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중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각각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4.3.5>
- ④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제 9 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 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재원 및 이차보전)

- ①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 ② 정부는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개정 2004.3.5>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 ② 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

급한다.<개정 2004.3.5>

- ③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개정 2003.5.27, 2004.3.5>

부칙 <제6345호,2001.1.8>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2000년도 예산에 의하여 지원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 본다.
- ③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제4172호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6573호,2001.12.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818호,2002.12.26>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4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책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정책자금중 그 이율이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③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로 본다.

〈부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현재시행법령확인]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4조 (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85조 (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 (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7조 (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90조 (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 (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 (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

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 (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

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같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한다.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
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
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
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

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여·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617조 (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4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6조 (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록 3〉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1)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2004.03.02 조례제16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의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2.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및 생산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용자금을 지원한다.

1. 농업경영 회생을 위한 소득증대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입식비, 영농자재등의 구입비
2. 용자금 지원사업, 생산 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포장재 박스 구입 및 기타 영

농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년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읍·면·자치지원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군과 읍·면에 설치한다.

②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합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소득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 장수축협장, 장수·장계농협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읍·면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 읍·면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용자대상) 용자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농지법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제12조(용자한도 및 이율) ①용자한도액은 농업인과 법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연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3조(용자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자신청시에는 읍·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농업인의 경우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③용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보증서 발급)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양도)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는 위탁협약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때에 한한다.

④제3항의 양도담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모든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담보권자(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⑤제4항의 양도담보계약은 공증인가법무법인 법률사무소로부터 양도담보부금 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 목적물 이용(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임차(위탁관리·사육·재배권 등)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용자대상자 선정 등) ①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용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용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용자결정사실과 용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조건) 군수는 용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용자의 대출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이내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때에는 연장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장수군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4.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다음 각호 1의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였을 때

2. 용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사업실패의 불가피성)으로 용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용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소득과장
2. 기금출납원 : 실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용자업무 대행) ①기금에 의한 용자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시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년도 제1차 정례회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2004.05.15 규칙 제088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조치)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용자에 필요한 전출금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용자신청) ①용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사업개시 전년도 12월31일까지 용자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용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각호와 같다.

1. 장수군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거래확인서 및 신용정보내역서

③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읍·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자결정) ①군수는 읍·면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군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용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3. 부채정도 및 회생가능 여건
4.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5. 영농경력정도 및 정착 의지력
6. 용자금의 상환능력
7. 물적 담보의 가능성
8. 장수군농가부채회생사업기금 자금사정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용자대상자 결정은 년 1회를 원칙으로 상반기에 확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신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용자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용자방법) ①용자금은 1회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도담보로 보증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관과장이 용자신청 사업의 추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용자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용자금 교부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조서(용자액의 150%이상 자산평가 가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용자금을 대부받았거나 대부받기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용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의 상환은 년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을 납기로 한다.

②연체이자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경우 매 1월은 12분의1로 하고, 1월 미만의 경우 일수는 일할 계산을 한다.

③원리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부터 우선 회수한 후 원금을 회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상환금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금의 관리) 용자받은 자의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집행에 관한 증빙서류
2. 현금 출납부
3. 용자금 징수부
4.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서류

제10조(용자금등의 상환)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등의 상환 독촉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완료보고) ①용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사업완료보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관련업무 담당자와 용자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전담 및 책임) ①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군·읍·면 농업기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사업주관과장 : 기금관리, 사업대상자확정, 생산농산물 출하승인, 용자금지급, 용자대상자 사후관리
2. 농업기술센터소장 : 읍면별·사업별 기술지도 전담 책임공무원 지정운영관리(농민상담소장 적극 활용), 필요시 대상농가별·작목별 전문업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작목별 운영프로그램 처방관리(비배관리, 병충해관리, 사료급여, 증체율개선, 성장단계별 사양관리 등), 대상농가별 소득평가·분석을 통한 생산농산물 출하시기 판단(군수 승인절차 이행), 매년 말 기준 농가별 경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읍·면장 : 사업내용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보완, 사업장점검

②군수는 천재지변, 소비시장 여건변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호의 책임 소홀로 인하여 금융사고, 사업장 이탈, 사업실패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3조(사업관리) ①군수가 용자대상자에게 용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용자사업지도관리카드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에 별도로 비치하게 하고, 월 1회 이상 기술지도 및 관리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용자금의 대출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2.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회수원장(별지 제12호 서식)

제14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 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산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세부과징수규칙 및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설문지
농가부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표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 농가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제주지역 농가부채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만든 조사표입니다. 본 설문응답에는 정답이 없으며, 읽고 느끼시는 대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올림

연락처: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영근연구원 (☎064-751-2166)

응답자	성 명	
	연락처	
면 접 원		
면 접 일 시		2005년 월 일
검 증 원		

11.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골라 우선 순위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1위_____ 2위_____ 3위_____

- ① 장기저리 정책자금 확대
- ② 계속 상환 연장
- ③ 농가의 부채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 ④ 10년간 분할상환
- ⑤ 개인이 원한다면, 자산을 국가가 매입하고 농민에게는 이용권 부여
- ⑥ 엄격한 심사하에 회생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조정
- ⑦ (영농포기 및 자산처분을 전제로 한) 농가부채 탕감
- ⑧ 기타()

12. 귀하의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토지자산 ()만원 + 기타 ()만원

합계 ()만원

13. 귀하의 지난 3년간 평균 한해 농가 소득(농업외 소득 포함)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원

14. 귀하의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이하 ② 31-50% ③ 51-70% ④ 71%이상

5. 귀하의 농작물 영농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면적	자가재배	임차재배	노지감귤 재배면적	시설감귤 재배면적
평	평	평	평	평

5-1. 귀하의 농가소득은 각 항목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수	시설 원예작물	밭작물	축산	농업외 소득	계
%	%	%	%	%	100%

6. 귀하의 영농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이상

7.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1. 제주시

21. 서귀포시

31. 한경면 32. 한림읍 33. 애월읍 34. 조천읍 35. 구좌읍

41. 대정읍 42. 안덕면 43. 남원읍 44. 표선면 45. 성산읍

8.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떤 것들이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 구 진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고 성 보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임 소 진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제주감귤분재소재의 자원화 방안

인쇄일/ 2005.12.

발행일/ 2005.12.

발행인/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제주발전연구원

690-732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1-2166 Fax : 064-751-2168

홈페이지 : <http://www.jdi.re.kr>

E-mail : jdi507@provin.jeju.kr

인쇄처/ 온누리디앤피

ISBN 89-88021-92-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